

연구보고서 2016-42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이태진 · 김태완 · 정의철 · 최은영
임덕영 · 윤여선 · 최준영 · 우선희

【책임연구자】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2014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의철 건국대학교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임덕영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여선 버밍엄대학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42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발 행 일 2016년 12월 31일
저 자 이 태 진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주)법신사
가 격 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978-89-6827-403-9 93330

발간사 <<

한국 사회에서 세계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현재의 청년 세대는 학업과 취업과 결혼으로의 생애 과정에서 학자금, 실업, 결혼을 위한 주거 마련 등에 있어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최근 일자리 중심의 청년 정책에서 주거, 가족 형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층을 위한 사회 보장 정책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 위기 이후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 구조의 변화는 청년층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집단으로 전락시켰다. 청년층의 고용 악화 현상은 초기 청년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년층의 높은 등록금, 낮은 취업률과 함께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젊은 세대의 미래를 억누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과 소형의 저렴한 주택 부족,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등은 청년층의 거주 불안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의 과중한 주거비 부담은 만혼 혹은 비혼의 요인이 되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며, 이러한 주거비 과부담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지리적 이동이 제약될 수 있어 미래의 소득 불평등 심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의 정부의 주택 정책은 대개 기혼자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구이거나 노인층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1인가구이거나 미혼가구가 많은 청년 세대는 주택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물론 신혼부부, 대학생 주거 문제를 위하여 전세 임대 등의 정책들이 시작되었지만, 이는 청년층 일부만으로 한정된 정책이다. 청년층 전반을 포괄하여 가구 구성, 경제활동, 소득, 주거 실태 등을 고려한 정책 수립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세대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가구 형성 지연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층의 빈곤 규모 및 양상을 살펴보고 주거 문제와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여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청년층의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모색한 본 연구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만하다. 청년 빈곤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빈곤한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어떠한지를 청년의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세부유형별로 분석하고 있어, 이러한 연구 결과가 오늘날의 청년들이 당면한 빈곤 및 주거 문제의 대응 방안 마련에 정책적으로 유용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하여 향후 탄탄한 인구 재생산 구조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이태진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 연구진으로 김태완 연구위원, 우선희 전문연구원, 최준영 연구원, 원외에서 건국대학교 정의철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박사, LH토지주택연구원 임덕영 박사, 버밍엄 대학교 윤여선 박사가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원내 여유진 연구위원, 그리고 원외 한남대 강인호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선행 연구 및 한국의 청년 지원 제도	 27
제1절 청년층의 빈곤 문제	29
제2절 청년층의 주거 문제	35
제3절 한국의 청년 지원 제도	48
 제3장 외국의 청년 주거 문제 및 지원 정책	 67
제1절 일본의 청년 주거 문제 및 지원 정책	69
제2절 영국의 청년 주거 문제 및 지원 정책	104
 제4장 청년층 빈곤 및 주거 실태, 그리고 그 영향	 125
제1절 청년층의 빈곤 실태	127
제2절 청년층의 주거 실태	143
제3절 청년층 빈곤 및 주거 문제의 영향: 결혼 및 출산	160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99

 제1절 요약 201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과제 203

참고문헌 213

부 록 227

표 목차

〈표 2-1-1〉 전체 및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31
〈표 2-1-2〉 연도별 주요 국가 청년층(15~24세) 실업률 추이	32
〈표 2-1-3〉 청년층 가구의 연령대별 가구원 수 분포 및 평균 가구원 수	33
〈표 2-2-1〉 세대별 주거 빈곤 현황	37
〈표 2-2-2〉 점유 형태	38
〈표 2-2-3〉 서울 전체 가구와 서울 청년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변화	39
〈표 2-2-4〉 연령대별 가구의 점유 형태(1990~2010년, 서울시)	40
〈표 2-2-5〉 연령대별 주거준비 여부(서울시)	41
〈표 2-2-6〉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임차료 부담 주체(서울시)	43
〈표 2-2-7〉 부모와 동거하는 이유	47
〈표 2-3-1〉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임차급여)	50
〈표 2-3-2〉 소득 지원 제도	51
〈표 2-3-3〉 청년 고용 지원 제도	56
〈표 2-3-4〉 청년 주거 지원 제도	59
〈표 2-3-5〉 청년 자산 지원 제도	61
〈표 2-3-6〉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제도	64
〈표 3-1-1〉 저소득층 청년 주거 관련 특징	78
〈표 3-1-2〉 넷 카페 난민 실태	79
〈표 3-1-3〉 홈리스 연령대별 비율	80
〈표 3-1-4〉 주생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82
〈표 3-1-5〉 2016년 주생활기본계획 중 청년 세대 관련 기본적 시책	83
〈표 3-1-6〉 UR 입주 자격	86
〈표 3-1-7〉 UR 하우스 세세어링 입주 관련 내용	87
〈표 3-1-8〉 지역우량임대주택 입주 조건	89
〈표 3-1-9〉 주거확보금부금의 주요 내용	95
〈표 3-1-10〉 일본의 주거 세세어 유형	97

〈표 3-1-11〉 일본 세셰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 연맹의 가이드라인	99
〈표 3-2-1〉 영국의 연령대별 주택 급여 수급 상황 (2015년)	116
〈표 4-1-1〉 청년 빈곤을 추이(중위소득 50% 미만)	130
〈표 4-1-2〉 청년가구 형태별 청년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미만)	132
〈표 4-1-3〉 지출 기준 청년 빈곤율 추이(중위 50% 미만)	134
〈표 4-1-4〉 지출 기준 청년가구 형태별 청년 빈곤율 추이(중위 50% 미만)	135
〈표 4-1-5〉 청년층 자산 및 부채 추이	136
〈표 4-1-6〉 청년 빈곤층 자산 및 부채 추이	136
〈표 4-1-7〉 청년가구 유형별 자산 및 부채 추이	137
〈표 4-1-8〉 경제활동 참여 상태별 청년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미만)	139
〈표 4-1-9〉 청년 빈곤율 동태 변화(연령별)	140
〈표 4-1-10〉 청년 빈곤율 동태 변화(성별, 우울 경험별)	141
〈표 4-1-11〉 청년 경제활동 참여 상태 빈곤율 동태 변화	142
〈표 4-2-1〉 가구 유형 분류	143
〈표 4-2-2〉 청년가구 유형별 분포 (가구 단위)	144
〈표 4-2-3〉 가구 유형별 가구주 평균 연령	145
〈표 4-2-4〉 가구 유형별 가구주 교육 수준	146
〈표 4-2-5〉 가구 유형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	146
〈표 4-2-6〉 가구 유형별 주거 점유 형태	147
〈표 4-2-7〉 가구 유형별 주택 형태	148
〈표 4-2-8〉 가처분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150
〈표 4-2-9〉 빈곤 여부에 따른 가처분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151
〈표 4-2-10〉 임대료 과부담 가구의 비율(가구 단위)	153
〈표 4-2-11〉 빈곤 여부에 따른 임대료 과부담 가구의 비율(가구 단위)	153
〈표 4-2-1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가구 단위)	155
〈표 4-2-13〉 빈곤 여부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가구단위)	155
〈표 4-2-14〉 주거빈곤가구 비율(가구 단위)	157
〈표 4-2-15〉 빈곤 여부에 따른 주거빈곤가구 비율(가구 단위)	157

〈표 4-2-16〉 주거 박탈 실태(가구 단위)	158
〈표 4-2-17〉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 박탈 실태(가구 단위)	159
〈표 4-2-18〉 빈곤 여부에 따른 주거 박탈 실태(가구 단위)	159
〈표 4-3-1〉 청년가구의 결혼 위험률과 생존율	183
〈표 4-3-2〉 기초 통계량(결혼 결정 요인)	184
〈표 4-3-3〉 기초 통계량(출산 결정 요인)	186
〈표 4-3-4〉 결혼 결정 요인 위험률 모형 추정 결과	187
〈표 4-3-5〉 설명변수 변화에 따른 결혼 위험률 한계효과	190
〈표 4-3-6〉 출산 결정 요인 추정 결과 1	191
〈표 4-3-7〉 출산 결정 요인 추정 결과 2	194
〈표 4-3-8〉 설명 변수 변화에 따른 출산 확률 한계효과	195
〈표 4-3-9〉 출산 결정 요인 추정 결과(기존 자녀 수가 1명 이상인 가구 표본)	196

그림 목차

[그림 1-1-1] 주요 연구 내용의 구성	25
[그림 2-1-1] 한국 전체 및 청년실업률	31
[그림 2-2-1] 연령대별 주택 거주 기간 비중	39
[그림 2-2-2] 연령별 빈곤율(2006~2008)	48
[그림 3-1-1] 일본의 세대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자의 연령별 주거 소유 형태	72
[그림 3-1-2] 공영주택의 생계 책임자의 연령대별 분포	84
[그림 3-1-3] UR 주택의 생계 책임자 연령 분포	87
[그림 3-1-4] 생활보호의 재검토 및 생활곤궁자 대책의 위상	94
[그림 3-1-5] 일본의 단신자 주거 유형	96
[그림 3-2-1] 영국의 연령별 빈곤율	106
[그림 3-2-2] 영국의 주택 가격 인덱스 (1980~2015)	108
[그림 3-2-3] 연령에 따른 잉글랜드 자가 주택 소유율(1981~2014)	108
[그림 4-1-1] 청년층 혼인 상태별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미만)	131
[그림 4-1-2] 청년층 성별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미만)	138

Abstract <<

A study of housing support policy for youth poverty alleviation

Nowadays, poverty is lasting by becoming worse of an employment situation for youth. Condition of housing market also makes instability of residence of the youth. This study intended to seek customized policy direction for youth from social policy aspect by examining seriousness and residence problem of youth in poverty from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analysis and verifying the problems how to influence their marriage and childbirth.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youth poverty rate is lower than the old, but a lot of youth still experience poverty. Especially, the rate of 19~24 year olds people started social life in poverty is higher consequently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m is needed.

Second, the proportion of youth heads of household in monthly rent is high. Above all, the proportion of youth single person heads of household in monthly rent and monthly rent with security deposit is high(monthly rent with security deposit 58.2%, monthly rent 3.97%).

Third, The higher individual earned income is, the higher

2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marriage risk rate is, and the effect influence men than women. The higher actual housing costs estimated by the charge of switch rental housing and housing transaction price is, the lower marriage risk rate is. Meanwhile, It's estimated the higher all members of household' real income is, the lower childbirth rate. Actual housing costs and housing transaction price negatively effected childbirth rate. The lower income is, the more this negative effect.

The main political subject are suggested as follows:

We don't have any universal allowance system now, but need family allowance or house allowance as countermeasures of political for youth's income and residence support. In addition, we should institute policy package program connecting income support(rental charge), a labor policy and housing policy for maximization of youth support policy effectualness.

The family who receive public housing support and participate housing voucher program should be provided case management, rental charge support, pension financial assistance package. the case participating vocational training or education or other program should be had incentive.

1. 서론

본 연구는 최근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 고용 상황 악화에 따른 빈곤이 지속화되고, 주택 시장 여건으로 빈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청년 세대의 빈곤이 주거비 지불능력 저하와 맞물리면서 청소년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기 주요 과업인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빈곤 규모의 추이와 양상을 살펴보고 청년가구의 유형별로 주거 문제 실태를 진단하였으며, 이러한 빈곤과 주거 문제가 미치는 영향을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년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인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의 주요 내용은 한국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을 소득, 자산, 지출 기준의 빈곤율 추이 및 청년층의 빈곤 특성으로 살펴보고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과 주거 문제의 심각성 및 이들의 개연성, 그리고 성인으로의 이행의 어려움 등을 실증 분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가용한 원자료와 분석 방법이 활용되었다. 빈곤 분석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실태조사(패널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추이와 동태적 변화를 보았다. 또한 주거 분석에서는 가구와 개인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1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빈곤과 주거의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10년간의 가구 형성 변화 추적이 가능한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KB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부수적으로 활용하였다.

2. 일본 및 영국의 청년 주거 문제 및 지원 정책

본 장에서는 일본과 영국의 청년층의 주거 실태 및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년 주거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우선,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자.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청년 문제는 가족 내 청년층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생충 싱글족’, ‘NEET’, ‘히키코 모리’와 같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 내 청년층의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일본의 청년층의 문제는 그들의 주거 문제보다는 심리학적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독립한 청년가구주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최근 청년층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거 소유는 생애 주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데,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도 주거사다리(임대 주택에서 자가 주택으로 이동)에 올라타지 못하는 청년층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세대 유형별 주거 실태를 살펴보면, ‘세대 내 단신자’, ‘단신자’ ‘가족 형성 세대’는 주거 및 경제 사회적 조건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대 내 단신자는 부모의 주거 조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문제를 겪고 있지 않지만 소득 등 개인의 경제적 조건이 열악하여 독립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신자의 주거 환경은 열악하나 경제적 조건은 세대 내 단신자에 비해 좋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거리 생활자를 의미하는 홀리스의 경우, 청년층의 비율은 매우 낮지만, ‘넷 카페’ 등에 거주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청년층 주거 정책에서 단신 청년을 독립적으로 대상화한 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공영 주택 개혁과 더불어 가족 동거 조건이 폐지되고, 공영 주택이나 UR, 지역 우량 임대 주택 거주자의 기준 자격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단신 청년 세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며, 민간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셰어 하우스가 청년층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 주택의 경우, 입주 대기자의 증대가 우려되는 시각도 존재하며, 청년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입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도시가 아닌 과소화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셰어 하우스도 법적 규제를 둘러싸고 아직까지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등의 규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청년 주거 실태와 정책이 우리나라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마련에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년 주거의 중층성 및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신 세대뿐 아니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문제를 주거 정책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둘째, 청년과 다른 사회 취약계층 간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셋째, 지방과 중앙의 지침 간의 균형을 어떻게 모색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 넷째, 정책의 미진함을 보충하는 셰어 하우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국의 청년 주거 실태 및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영국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노동시

장 지위로 인하여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패턴은 한국 청년 세대의 주거 빈곤 문제와 많은 면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공공 주택의 쇠퇴와 함께 부담 가능한 주택의 부족 현상 심화라는 구조적 상황과 함께 경기 불황으로 증가된 청년층의 실업률과 맞물리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층의 자가 소유율은 1991년 36%에서 2013/14년 9%로 낮아졌고, 임대 주택 의존율이 점점 높아져 2001/02년 43%에서 2012/13년 67.7%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중된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 공간을 같이 쓰는 형태인 셰어 하우스가 보편적인 주거 독립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의 사회생활과 삶(life)의 의욕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은 독립성을 저하시키고 독자적인 가구 형성을 연기시키고 있다.

영국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을 여러 각도에서 펼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빈곤을 막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첫째, 주거 빈곤에 처한 청년들, 특히 16~17세 사이의 청년들에게는 주거 제공 우선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둘째,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층이 실업 등의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 가족이 있는 청년 세대와 싱글인 청년 세대를 나누어 다르게 지급한다. 35세 이하의 싱글인 청년층은 싱글룸 렌트 정책이, 가족이 있는 청년층은 가족원의 수와 구성에 따라 주택 급여를 달리 제공한다. 셋째, 청년층의 주택 자가 소유율을 높이고 주택 시장으로의 안정된 진입을 돕기 위하여 주택 마련 저가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또한 민간 자치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를 보다 다각도로 접근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청년층 주거 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거 빈곤 문제가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심화되는 경향이 있기에 개인에게만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함께 나서서 청년 빈곤과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 청년층 빈곤 및 주거 실태, 그리고 그 영향

청년층 빈곤 및 주거 문제, 그리고 그 영향에서는 여러 통계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및 복지욕구조사)를 활용하여 현대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 및 주거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실태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보면,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 및 주거 빈곤 현상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 청년 빈곤율(상대 빈곤율 2006년 7.3%→2015년 5.8%)의 경우 노인 빈곤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층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19~24세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 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빈곤의 특성을 좀 더 세분하여 보면 미혼이면서 남성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았으며, 노동시장 조건에서도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았다. 특히 실업에 놓인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았으며, 가구 형태로는 혼자 사는 청년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1인가구(상용직 56.76%, 자영자 12.56%)의 경우 다른 청년가구 유형에 비해 상용직의 비율은 낮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빈곤화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 볼 수 있다. 빈곤 지속성에서도 한 번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장기 빈곤을 경험하는 비중이 18.0%로 높았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가 청년층에서

도 동일하게 발생하여 부채 규모(2006년 3천여만 원, 2014년에는 5,500여만 원)가 증가하고 있었다.

청년층의 주거 상황과 주거 빈곤을 보면 청년가구주가가 월세 비중이 높았다. 무엇보다 청년1인가구(보증부 월세 58.32%, 월세 3.97%)의 보증부 월세 및 월세 비율이 높게 분석되었는데, 청년층에게는 월세 즉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분석에서도 빈곤한 청년가구주가와 빈곤하지 않은 청년가구주가의 임대료 비율이 약 2배정도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빈곤한 청년가구주가의 RIR 20% 이상은 73.33%, RIR 30% 이상은 60.22%로 청년가구주가의 주거비 과부담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더불어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주택에 생활하면서 임대료도 가처분소득 20%를 넘는 주거빈곤가구의 비중은 청년1인가구와 청년부부+자녀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과 주거 비용에 초점을 두어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7차 연도(2004년)에서 17차 연도(2014년) 개인 및 가구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주거 비용 측정을 위해 KB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부수적으로 활용하였다.

개인의 결혼 결정 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결혼 위험률은 약 31세까지 높아지다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이른 시점에 결혼할 가능성이 높았다. 개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결혼 위험률이 높으며, 그 효과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결혼 대상자 이외의 기타 가구원의 실질 소득이 많을수록 결혼 위험률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대상자의 소득뿐 아니라 결혼 대상자의 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위험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환 임

대료로 측정한 실질 주거 비용과 실질 주택 매매 가격이 높을수록 결혼 위험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는 남성 배우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 확률이 감소하며, 여성 배우자 연령이 약 29세까지는 출산확률이 높아지다가 그 이후 연령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 배우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출산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가구 전체의 실질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결과에는 자녀의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여성 배우자의 시간 비용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여성 배우자의 잠재근로소득과 기타 가구소득으로 구분한 추정 결과에서 소득 변수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질 주거 비용과 실질 주택 매매 가격은 출산 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크게 측정되어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주거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둘째 아이 이상의 출산 확률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그동안 사회에서 깊이 살펴보지 못했던 청년층이 빈곤과 주거 문제에 깊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청년가구 유형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들어 국내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구호적 측면에 불과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타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청년은 사회 복지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정책에서조차 가장 소외되어 있던 집단이다. 청년에 표적화된 복지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층의 주거 문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거 복지 정책이 재설계가 되어야 한다.

빈곤 경험 청년층에 실업, 임시·일용, 자영업 등 불안정 노동시장 참여자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 노동시장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확보,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업 간 연계 등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층은 공공부조 제도를 통한 긴급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지원 시 과도한 선정 및 급여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는 새로운 주거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청년들과 저소득 청년1인가구가 우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현행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의 제도는 대학생 및 신혼부부 일부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일을 하는 직장 혹은 공단 등과 인접한 지역에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 주택 등을 건설하도록 하고 입주 조건을 완화하여 빈곤 및 취약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 빈곤 문제에 대응한 청년가구 세부 유형별의 주거복지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현행 지원 정책의 부분적 제도 보완 및 개선으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과 중장기적으로 청년

주거 안정화를 위한 법 개편 또는 새로운 도입을 검토해야하는 과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금 및 현물 지원의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 수단들이 모색,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초기 청년층, 청년1인가구의 소득 및 주거 문제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현 주거 지원 제도들은 대부분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을 받기 용이하고 지원 수준도 높게 설계되어 있다.

먼저 현금 지원 방식으로 청년, 주거 빈곤 청년이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정 기간 적어도 4~6년간 한시적 임대료 보조 지원을 하도록 한다. 주거급여 지급과 함께 일자리, 취업 지원 등 고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소득 증가분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액을 일정 기간 지급하여 자산 형성(예, 가족 자립금) 축진을 통한 사전적 빈곤 정책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과도기 과정을 지나 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확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보편적 수당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청년 소득 및 주거 지원 방안으로 가족 수당 또는 주택 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거 복지는 가구 단위 지원 방안으로 청년 빈곤 및 저출산 문제의 사전적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족 수당을 지원하거나 공공 부조성 제도 이외에 주택 수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금 지원 수단인 대출 지원의 확대이다. 청년층의 지불 능력을 감안한 현재 대출 제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요즘 일자리 문제의 상황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담보로 하는 금융 지원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금융 기관과 연계하여 보증금 또는 이자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청년 민

간 임대 주택 거주자를 우선 고려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물 지원 방식의 주거 복지 정책 수단이다. 대표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이다. 현재와 같은 양적 확충은 지양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성격 변화를 전제로 개편해야 한다. 공공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신규 택지의 부족과 높은 주거비 책정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 단독세대를 위한 소형 주택이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공급자 지원 방식 중심의 중형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저소득 청년1인가구와 부모부양청년가구, 청년부부가구 등을 표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 형태와 공급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의 주체이다. 공급 주체는 확대되어야 한다.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참여 방법을 활용해야한다. 비영리 사업주체들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도록 제도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주거 내지 주택 사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의 셰어 하우스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공공의 셰어 하우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현금 지원 방식과 현물 지원 방식의 정책 수단을 결합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소득 지원 즉 임대료 지원, 일자리 정책, 그리고 주택정책을 연계하여 정책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포이어(Foryer) 프로그램, 미국에서는 가족자립프로그램(FSS) 및 개인발전계좌(IDA)와 주택바우처가 결합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근로연계프로그램(Moving to Work Program, MTW)도 주택바우처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 주택 지원을 받으면서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에

게 사례 관리 지원과 더불어 임대료 및 연금 재정 보조 패키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저소득 청년가구의 주택 선택 기회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용어: 청년빈곤, 청년주거, 결혼 및 출산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 고용 상황 악화에 따른 빈곤이 지속화되고, 주택 시장 여건으로 빈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청년 세대의 빈곤은 주거비 지불 능력 저하와 맞물리면서 청소년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기 주요 과업인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저소득 청년층의 지원이 필요하다.

빈곤에 대한 관심은 주로 노인 세대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12.4%)의 네 배를 넘는 수준인 까닭에 정부, 정치권, 언론 등 각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이 2007년 15.1%에서 2010년 12.4%로 감소한 반면, 청년 빈곤율은 같은 기간 12.2%에서 13.8%로 증가하였다. 아동 빈곤율은 같은 기간 12.8%에서 13.4%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OECD 국가 내에서 빈곤 위험 집단이 노인에서 아동과 청년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문길 등, 2015).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경우 청년 빈곤율이 초기 단계에서 높아졌다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부터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태완 등, 2012).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 구조의 변화는 빈곤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청년을 새로운 빈곤 집단으로 부상시켰다. 무엇보다도 경제 위기의 충격은 청년층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집단으로 전락시켰다. 청년층 자체가 빈곤의 생애 주기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시기로

간주되기보다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짧은 이행, 혹은 통과 기간 정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독립으로의 이행이 장기화되고 그 과정이 치열한 경쟁과 불안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청년층은 경제적 곤란과 불확실한 미래의 상징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김수정, 2010).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은 물론 불평등과 빈곤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반정호, 2010). 최근 청년 실업률이 나날이 높아져 간다. 2016년 2월 청년 실업률이 12.5%로 급등하여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 생산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12%를 넘긴 것도 처음이다. 이 수치의 청년 실업률은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 중에 지난 1주간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돈을 벌고 싶어도 포기한 일명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즉, 일과 교육, 훈련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제외되어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포함한 청년실업률, 일명 청년 체감 실업률이 34.2%에 달한다고 발표 했다. 청년 실업률과 니트족의 현주소는 한국 사회의 신빈곤층¹⁾으로서의 청년층 구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2016년 10월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한눈으로 보는 사회 2016’에서 우리나라 청년(15~29세) 중 니트족의 비중은 18%(201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5.8%보다 2.2% 포인트 높았다. OECD는 한국에 니트족이 많은 이유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꼽았다.

1) 한국 사회에서 세계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세대인 현재의 청년 세대는 특히 사회 양극화로 인한 실업과 일자리의 문제, 정보 사회 진전으로 인한 정체성의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특징을 보여준다. 혹자는 이들을 88만 원 세대, 혹은 언더클래스 집단, 혹은 신빈곤층이라고 부른다(민병희, 2010, 박원일, 2009, 구인회, 2002, 노대명, 2002).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은 인적 자본이 부족한 일부 계층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게 되었고, 취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임금, 반복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구조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 악화 현상은 초기 청년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년층의 ‘출발의 실패’는 경제적 사회적 생애 과정에서 ‘상처효과(Scar effect)’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또 청년층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간격이 커져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이행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김수정, 2010).

이러한 청년층의 빈곤 지속성 및 위험성 증가와 함께 최근의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높은 주택 가격과 소형 및 저렴한 주택의 부족,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 등은 청년층의 거주 불안정을 더욱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청년 주거 문제의 경우, 직업 청년은 직장에서, 대학생은 대학이나 부모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청년층의 주택 문제는 높은 등록금, 낮은 취업률과 함께 젊은 세대의 미래를 억누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낮은 자가 주택 거주 비율과 공공 임대주택 거주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득이나 지출 대비 가장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게 된 것이다. 2012년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1분위 20대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율은 55.8%, 가계지출 대비 주거비 비율(Schwabe 지수)은 무려 3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30대 청년층들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면서 부담하는 주거비 수준이 견디기 힘든 수준에 이르고 있다(변창흠, 2014). 이는 청년 문제가 고용 문제만이 아니라 청년 주거, 청년 빈곤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년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신조 유행어들²⁾의 등장과 함께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기획 주제로 자주 등장하며, 청년들이 실제 겪고 있는 구체적인 당면 문제들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직업 이행과 주거 이행이 결혼 이행의 선결 조건으로 꼽히며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했거나 이행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가족 이행의 목표 즉, 결혼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김문길 등, 2015).

최근 공공 정책의 핵심도 ‘청년’이다. 청년 실업과 저출산 등 청년문제가 대두되자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지자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방향의 핵심을 일자리와 주거 지원 대책으로 10년 만에 바꾸었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의 빈곤화가 가속화하고, 빈곤 세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문제의 사회적 논의를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청년 빈곤의 문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지위, 가구 구조, 생애 주기를 고려한 보다 관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다(김수정, 2010). 한국의 청년 문제는 일자리 지원을 넘어서 경제적, 주거적 독립을 위한 사회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세대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가구 형성 지연을 방증한다고 볼 수

2) 현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말로,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헬조선’, 자신을 ‘흙수저’라 일컫고, ‘청년실신(청년 실업과 신용불량자를 합친 신조어)’하여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산다는 표현과, 최근에는 극단적인 절망적 용어로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준말)’ 등이 유행한다.

있는 청년층의 빈곤 규모 및 양상을 살펴보고, 주거 문제와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여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청년층의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청년층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세대 연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구 단위의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청년 연구가 일자리 문제에 관련하여 집중되어 있고 청년의 빈곤 변화, 청년 빈곤의 다층적인 특성, 그리고 주거 문제와의 관련성 등의 실증 분석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빈곤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빈곤한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양과 질 두 측면에서 어떠한지를 청년의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점에 의의를 둔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오늘날의 청년들이 당면한 빈곤 및 주거 문제의 대응 방안 마련에 정책적으로 유용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하여 향후 탄탄한 인구 재생산 구조 및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의 세부 유형별 빈곤 규모의 추이와 양상을 살펴보고 빈곤 청년의 주거 문제 실태를 진단하며, 이것이 청년의 혼인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청년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인 주거 문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데 있다.

본 보고서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의 주요 내용은 한국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을 소득, 자산, 지출 기준의 빈곤율 추이 및 청년층의 빈

곤 특성으로 살펴보고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과 주거 문제의 심각성과 이들의 개연성, 그리고 성인으로의 이행의 어려움 등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주요 내용과 연구 방법을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들과 현상을 점검하고 현재 청년 지원 제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최근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로 청년 빈곤이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의 가구 특성 변화를 중심으로 청년이 당면한 현주소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청년의 주거 불안정성의 증가현상과 이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 가구 형성의 지연, 저출산 등 사회적 결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한국의 청년 지원 제도로 소득 지원, 고용 지원, 주거 지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례도 소개하였다.

3장은 외국의 사례로, 우리나라와 국토 면적 및 인구가 비슷하고 공공부조 제도의 주거 지원 정책이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일본과 영국을 선정하여, 각 나라의 청년 주거 문제가 제기된 사회적 배경과 주거 실태 및 정부/지자체/민간단체의 대응을 살펴보고 그 배경과 성과, 한계점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청년층의 빈곤 및 주거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로 인한 혼인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우선 청년층의 빈곤 측정을 위하여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청년 빈곤율의 추이를 연령별, 혼인 상태별, 청년가구 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또한 지출 기준의 빈곤율 추이와 자산 및 부채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청년 빈곤의 양상을 보기 위해 성별, 경제활동 상태별 빈곤율의 차이와 빈곤의 동태적 변화와 청년층의 정신 건강인 우울 경험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청년층의 주거 실태를 보기 위해 청년가구 형

태별 빈곤 여부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등의 주거 빈곤 문제와 주거 박탈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노동시장 및 주택시장 여건을 결혼 및 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과 주거 비용에 초점을 두어 결혼 및 출산의 결정 요인 실증 분석을 하였으며, 청년층의 주택시장 여건,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별 출산율을 함께 분석하여 이들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5장 결론과 정책 제언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과 아울러 현재의 청년 지원 정책의 한계와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청년층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한 청년층의 빈곤 및 주거 문제의 정책적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단계적, 통합적 정책 패키지형 지원, 현금과 현물, 모기지 등의 다양한 정책 수단 추진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분석 자료

앞에서 본 보고서의 내용 구성을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내용은 청년층의 세부 유형별 빈곤 규모의 추이와 양상을 분석하는 것과 빈곤 청년의 주거 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이 청년의 혼인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청년층 분석 기준, 연령 범위 및 세부 형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년층³⁾의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한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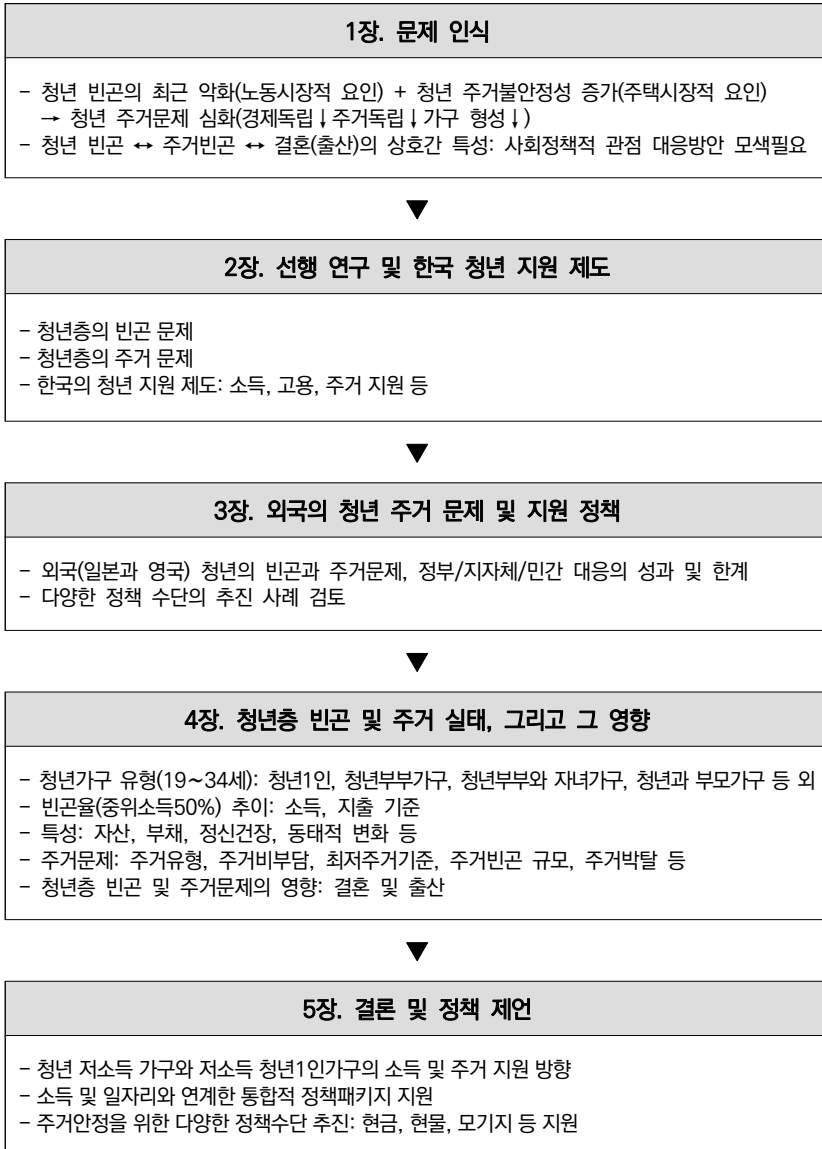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또한 최은영(2014)에 의하면, 가구 형성에 의한 독립적인 주거 수요가 낮다는 점과 성인으로서의 이행에 과거에 비해 더

만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종단 분석의 경우에 미혼인 청년가구원의 연령을 19세 이상과 최근의 가구 형성 지연 즉, 만혼화 현상을 고려하여 40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청년층이 있는 가구의 세부 형태를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와 자녀가구, 청년과 부모가구, 그리고 청년과 조부모 등의 가구를 기타가구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가용한 원자료의 분석 방법이 활용되었다. 4장의 1절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실태조사(패널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청년층의 빈곤 실태에 대한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복지 패널은 2005년에서 2014년까지, 가계동향조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4장의 2절 청년들의 주거 상황을 살펴보고자 가구와 개인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 자료는 1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있으며, 청년가구도 약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해석에 있어 자료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주거 관련 주요 실태 조사 등의 결과와 함께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4장의 3절 소득과 주거 비용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청년 연령층의 조사 대상이 많고, 10년간의 가구 형성 변화 추적이 가능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7차 연도(2004년)에서 17차 연도(2014년)까지의 개인 및 가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14년 기준 미혼 상태인 청년가구원 표본을 선정하였다. 또한 주거 비용 측정을 위해 KB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부수적으로 활용하였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외국에서도 상한선을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1-1-1] 주요 연구 내용의 구성



제 2 장

선행 연구 및 한국의 청년 지원 제도

제1절 청년층의 빈곤 문제

제2절 청년층의 주거 문제

제3절 한국의 청년 지원 제도

2

선행 연구 및 << 한국의 청년 지원 제도

제1절 청년층의 빈곤 문제

경제 위기 이후 청년 세대는 취업난과 경제난, 불안정 고용,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으로 경제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세계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온 세대였던 현재의 20대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극심한 경쟁과 사회 양극화에 의한 실업과 일자리의 문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정보사회 진전으로 인한 정체성 강화의 특징을 보여 준다. 또한, 경제 위기 이후 그 충격은 청년층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집단으로 전락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대졸자의 학업 연장과 취업 연기는 새로운 사회적 풍속도가 되었고, 청년층은 준실업 상태와 유사한 불안정 고용, 저임금 비정규 노동으로 환류함으로써 새로운 빈곤 집단이 되었다. 혹자는 이들을 88만 원 세대 혹은 언더클래스 집단 혹은 신빈곤층이라고 부른다(김수정, 2010; 민병희, 2010; 우석훈·박권일, 2006; 구인회, 2002; 노대명, 2002; 조명래, 1997).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 세대의 취업난과 경제난은 사회와 경제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년 세대의 경제력 감소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글로벌 위기 이후 나타나는 세계적인 특징이기도 하다(주택사업연구원, 2014).

본 절에서는 이러한 경제 위기로 인하여 신빈곤층이라고 불리게 된 청년 세대의 현주소를 선행 연구를 통해 점검하고자 한다.

현재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와 불안정은 일차적으로 청년층 노

동시장 상황의 악화와 관련되는데(김수정·김영, 2013), 1997년 외환위기와 이후 몇 년간의 세계 경제 위축과 위기로 청년들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었다(민병희, 2010). 즉, 청년의 빈곤은 경제 위기로 인한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저임금 등의 문제로 살펴볼 수 있다.

통계청(2016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그리고 실업률은 다음과 같은데, 이를 전체와 청년(15~29세)을 비교하면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전체에 비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 계층의 일자리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들의 소득과 생계 역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청년 실업률은 급격하게 상승(2013 8.0% → 2014 9.0% → 2015 9.2%)하였으며, 전체 실업률과 비교하였을 때 2.5배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청년 계층이 더 이상 노동과 임금을 통한 선순환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경제 변화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년 세대의 고용 사정이 좋지 못한 것은 선진국에서도 공통된 현상이다. 또한, 고용 사정이 좋지 못한 것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 OECD 국가에서 독일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주택산업연구원, 2014).

이러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청년 실업의 심각성이 젊은 계층의 빈곤을 확대하고, 빈곤의 세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청년 빈곤 계층 연구는 한국 계층의 구조적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민병희, 2010).

〈표 2-1-1〉 전체 및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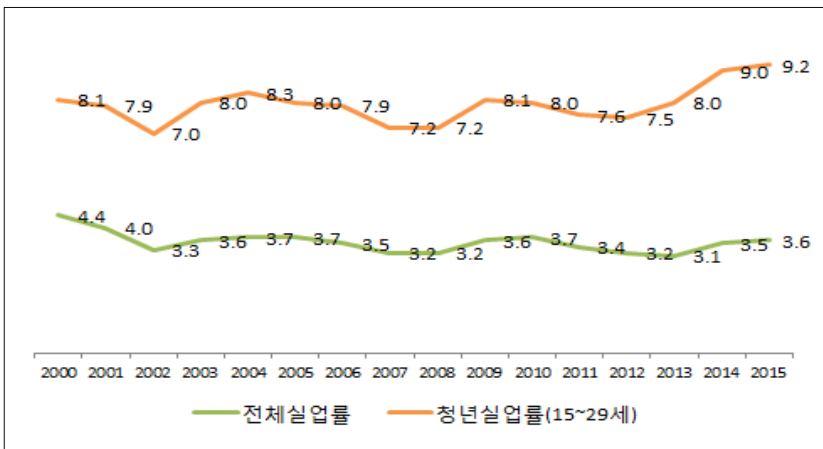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청년 (15~29세)	전체	청년 (15~29세)	전체	청년 (15~29세)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00	61.2	47.2	58.5	43.4	4.4	8.1
2001	61.4	47.7	59.0	44.0	4.0	7.9
2002	62.0	48.4	60.0	45.1	3.3	7.0
2003	61.5	48.3	59.3	44.4	3.6	8.0
2004	62.1	49.2	59.8	45.1	3.7	8.3
2005	62.0	48.8	59.7	44.9	3.7	8.0
2006	61.9	47.1	59.7	43.4	3.5	7.9
2007	61.8	46.0	59.8	42.6	3.2	7.2
2008	61.5	44.8	59.5	41.6	3.2	7.2
2009	60.8	44.0	58.6	40.5	3.6	8.1
2010	61.0	43.8	58.7	40.3	3.7	8.0
2011	61.1	43.8	59.1	40.5	3.4	7.6
2012	61.3	43.7	59.4	40.4	3.2	7.5
2013	61.5	43.2	59.5	39.7	3.1	8.0
2014	62.4	44.8	60.2	40.7	3.5	9.0
2015	62.6	45.7	60.3	41.5	3.6	9.2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다운로드 시점: 2016. 6. 18. 15:50)

[그림 2-1-1] 한국 전체 및 청년실업률

(단위: %)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다운로드 시점: 2016. 6. 18 15:50)

〈표 2-1-2〉 연도별 주요 국가 청년층(15~24세) 실업률 추이

(단위: %)

구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OECD 평균	대한민국
2010	22.9	9.7	9.2	19.5	18.4	19.0	9.8 (8.0)
2011	22.1	8.5	8.0	20.2	17.3	19.0	9.6 (7.6)
2012	23.9	8.0	7.9	21.2	16.2	20.4	9.0 (7.5)
2013	23.9	7.8	6.9	21.1	15.5	20.4	9.3 (8.0)
2014	23.2	7.8	6.3	16.3	13.4	19.3	10.0 (9.0)

주: 1) ()는 15~29세 실업률.

2) 우리나라(15~29세)를 제외한 주요 국가의 청년 실업률 연령층은 15~24세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다운로드 시점: 2016. 6. 18. 15:50)

경제 구조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사정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 악화 현상은 초기 청년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가구의 소득 수준 불평등 및 빈곤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반정호(2010)의 연구는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통계청 「(도시)가 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호트 분석을 하였다.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층 일수록 근로소득의 절대적 소득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 간 소득 격차도 상당히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구소득 및 본인의 근로소득이 외환 위기 이전 시점(1987~97년)에 비해 10여 년(1998~2008년) 동안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에서 소득 불평등도와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외환 위기 이후 10년은 전반적으로 이전 10년에 비해 불평등이 확대되고 빈곤 위험도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환 위기 이전보다 이후 10년 동안을 청년기로 보내고 있는 세대들에서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인한 소득 둔화와 분배 악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빈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

졌다. 또한, 청년층의 소득원천별 불평등도의 요인을 분해한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고용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지는데, 외환위기 이전 10년에 비해 그 이후 10년(1998~2008년) 동안에 20~30대 청년층 가구의 근로소득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 상태와 소득이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동시에 고용 상태에 기반한 근로소득의 불평등 확대가 전체 가구의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 청년 세대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으로 고급 지식 노동력 공급은 뚜렷하게 증가한 데 반해, 노동력의 수요는 감소하고(민병희, 2010), 청년의 고학력화로 인한 임금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오히려 과잉 투자로 인한 학력 거품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여유진 등, 2015).

〈표 2-1-3〉 청년층 가구의 연령대별 가구원 수 분포 및 평균 가구원 수

(단위: %, 명)

구분		계	1인가구	2인가구	3~4인가구	5인이상가구	평균 가구원 수
25~29세	2003	100.00	40.43	28.69	28.53	2.36	2.07
	2010	100.00	50.25	31.49	16.98	1.27	1.75
	2014	100.00	60.43	21.77	17.30	0.49	1.62
30~34세	2003	100.00	12.63	16.78	62.36	8.23	3.07
	2010	100.00	21.81	27.57	46.20	4.42	2.57
	2014	100.00	26.80	23.99	45.74	3.46	2.44
35~40세	2003	100.00	5.35	7.05	73.42	14.19	3.66
	2010	100.00	11.54	13.48	64.67	10.31	3.27
	2014	100.00	16.41	16.16	59.98	7.44	8.97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각 연도); 이수옥 등(2015) 재인용.

청년층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원 수 구성에도 두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수옥 등

(2015)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1~2인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3인이상가구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1인가구의 비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혼인 시기도 젊은 층에서 빠른 속도로 늦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층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중 30대 청년층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표 2-1-3).

청년 빈곤의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청년 빈곤 또는 청년 주거 연구 및 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1990년대 말 경제 위기 이후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며, 노동력 수요가 경력 중시형으로 바뀌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이 사회문제로 대두했다(이병희, 2003). 이 같은 취업난은 고졸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고학력화와 청년층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와 병행되고 있어 오늘날 청년층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험난한 이행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의 궁극적 표현인 빈곤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김수정, 2010).

빈곤 연구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전제되고 아동이나 노인과 같이 근로 능력이 없는 집단이 일차적인 보호의 대상이다. 그러나 김수정(2010)에서 나타나듯이 청년층은 아동보다 빈곤 위험이 더 높은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대 후반 또는 30대가 되어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집단이 적지 않다.

또한, 청년 빈곤과 관련한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 청년 주거 문제는 주거비 부담 가능성과 살만한 집에 살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다른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이다(최은영 등, 2014).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주거 문제를 사회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관련 연구도 제한적이다(정의철, 2012; 권지웅, 이은진, 2013).

제2절 청년층의 주거 문제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청년의 빈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동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취업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산업 구조의 변화 및 기술 발달, 그리고 경제 위기로 인한 일자리 부족 및 노동 시장 불안정성의 증가, 저임금 등의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쉽게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빈곤을 비롯한 청년층의 문제들은 과거의 청년층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청년기는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하여 경제적 독립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 시기의 경제적 독립의 성과는 매우 중요한데, 다른 세대의 빈곤과 달리 청년기에 빈곤층으로 진입한 가구는 장년, 노년기에 빈곤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청년기의 빈곤은 낮은 자산 형성으로 인한 미흡한 노후 준비로 이어지고, 이는 향후 사회적 부담의 문제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청년기의 빈곤은 생애 주기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 지위로 인해 청년층은 경제적 독립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생애 주기의 다음 단계인 독자적인 가구 형성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가구 형성의 지연은 저출산 문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듯 중요한 청년 빈곤의 한 측면은 바로 주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거비는 청년가구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청년 빈곤, 특히 주거 빈곤의 측면에서 청년 빈곤의 문제에 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청년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짚어 보고자 한다.

1.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

우리나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가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을 어렵게 하고, 심각한 경우 가구 부채를 늘리게 하는 등 청년가구의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온다. 또한 가구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을 제약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 조사를 분석한 정미옥 등(2016)은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거 빈곤을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35~65세 미만인 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20~35세 미만인 청년가구로 세대를 나누었다. 주거 빈곤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옥탑 거주 또는 주택 이외의 기타 거주 거주,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로 정의되는데,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다른 세대와 상대적으로 비슷했으나, 주거비 부담에 의한 주거 빈곤의 경우 청년가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 빈곤⁴⁾ 비율은 노인가구가 11.2%, 아동가구가 6.3%인 데 비해 청년가구는 20.3%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동 연구는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이 다른 세대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조금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4) 미국 연방정부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를 넘으면 부담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미옥 등(2016)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2-2-1〉 세대별 주거 빈곤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노인		청년		아동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시설 미달	부엌 미달	112,881	3.1	72,254	2.9	33,693	1.2
		화장실 미달	353,020	9.6	68,944	2.8	45,864	1.6
		목욕시설 미달	173,212	4.7	47,428	1.9	23,380	0.8
	면적 미달		105,443	2.9	189,084	7.6	201,740	7.1
	방수 미달		19,119	0.5	126,041	5.1	95,523	3.4
	최저주거 기준 미달		532,370	14.5	364,785	14.6	327,642	11.6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거빈곤			594,863	16.2	472,163	18.9	364,049	12.8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			409,483	11.2	505,492	20.3	177,633	6.3
전체 주거빈곤			732,343	20.0	722,900	29.0	419,260	14.8
전체			3,663,234	100.0	2,495,696	100.0	2,835,928	100.0

주: 노인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청년은 가구주 연령이 20~35세 미만, 아동은 가구주 연령이 35~65세 미만인 가구임.

자료: 정미옥 등(2016).

동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거주 불안정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현실도 보여 주고 있다. 청년층은 주거 안정성이 낮은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가 많다. 전세 비율은 청년가구 30.4%, 아동가구 21.0%이며, 월세 비율은 청년가구 37.4%, 아동가구 15.3%로 청년가구는 전세에 비해 월세 비율이 더 높다. 특히 주거빈곤가구 중 월세 비율이 노인가구는 31.2%, 아동가구는 43.9%에 비해 청년가구는 66.0%로 청년 주거빈곤가구의 월세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당히 높다.

〈표 2-2-2〉 점유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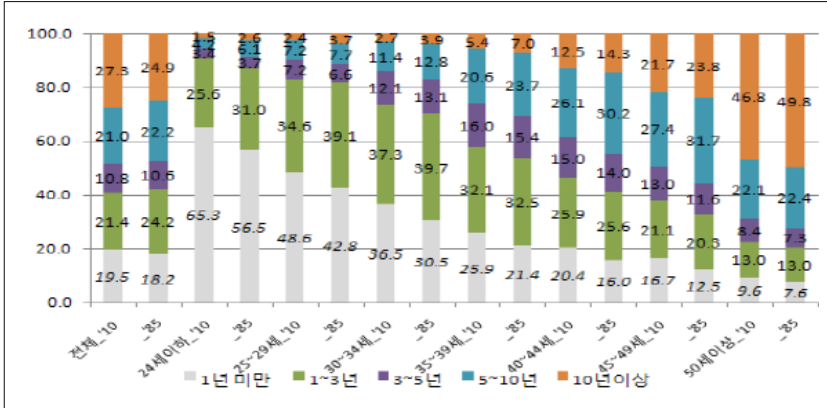
구분	전체 가구			주거빈곤가구		
	노인	청년	아동	노인	청년	아동
자기 집	76.0	23.4	60.7	53.5	8.1	27.7
전세(월세 없음)	9.5	30.4	21.0	10.9	19.0	22.9
보통금 있는 월세	9.0	31.4	13.2	21.6	52.1	36.9
보통금 없는 월세	1.8	3.9	1.3	6.8	8.8	4.1
사글세	0.8	2.1	0.8	2.8	5.1	2.9
월세	11.6	37.4	15.3	31.2	66.0	43.9
무상	2.9	7.6	3.0	4.3	6.4	5.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노인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청년은 가구주 연령이 20~35세 미만, 아동은 가구주 연령이 35~65세 미만인면서 아동이 있는 가구임.
자료: 정미옥 등(2016).

실제로 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박준오(2014)의 연구에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에 25~29세 및 30~34세의 청년 중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은 각각 48.6%, 36.5%이며, 1~3년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각각 34.6%, 37.3%로, 3년 이하로 거주하는 가구가 청년가구 전체의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청년층의 거주 이동이 더 나은 주택으로의 이동이나 이직 등의 영향일 수 있으나,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2-1] 연령대별 주택 거주 기간 비중

(단위: %)



자료: 박준오(2014).

또한 가구소득으로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주거비는 열악하지만 저렴한 주거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물리적인 주거 빈곤의 상태로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의 주거 실태를 분석한 최은영 등(2014b)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42.4%에서 14.4%까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서울의 청년가구는 1995년 51.4%에서 2005년 16.6%까지는 서울의 전체 가구와 비슷하게 감소하다가 2010년에는 오히려 18.5%로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2-3〉 서울 전체 가구와 서울 청년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변화

(단위: 가구, %)

서울 전체 가구				서울 청년가구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241,651	806,928	509,954	501,984	433,638	226,625	120,970	127,520
42.4	26.3	15.5	14.4	51.4	29.9	16.6	18.5

자료: 최은영 등(2014b).

2. 주거사다리의 붕괴 및 부모 경제력의 계승

전월세에 산다는 것이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구의 점유 형태는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점유 형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최은영(2014)은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중년이 되는 과정을 1990년 25~29세였던 청년가구주의 점유 형태 변화를 2010년까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들의 자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42.3%를 나타냈으나 2010년에는 40.4%로 감소하였고, 월세 비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 40대 후반이 된 코호트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에 비해 전월세 거주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40대 후반에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전 세대와 상당히 구별되는 모습이다.

〈표 2-2-4〉 연령대별 가구의 점유 형태(1990~2010년, 서울시)

(단위: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20~24세	5.6	46.7	43.6	4.8	53.7	39.0	4.9	49.4	44.1	5.2	32.6	60.5	3.9	21.4	73.8
25~29세	9.5	56.9	30.6	8.7	65.8	23.3	9.9	62.3	25.7	10.5	45.9	41.5	7.8	37.8	53.0
30~34세	21.4	54.1	22.2	18.6	63.6	16.1	19.5	62.4	16.1	24.0	50.4	23.3	19.0	48.5	30.6
35~39세	35.9	42.7	19.6	32.6	50.7	15.2	30.7	51.3	16.1	35.3	43.6	19.0	30.8	44.3	22.9
40~44세	46.1	35.5	16.9	45.5	40.2	13.2	41.3	41.2	15.9	42.3	37.2	18.8	36.6	39.5	22.3
45~49세	52.7	31.4	14.6	53.2	33.9	12.0	50.2	33.9	14.6	49.2	31.2	18.2	40.4	35.3	22.9
50~54세	56.3	29.0	13.4	58.9	29.5	10.7	57.1	28.8	13.2	57.3	25.2	16.4	48.3	29.4	21.1
55~59세	58.1	28.0	12.4	62.0	27.3	9.8	62.5	25.1	11.5	64.0	21.1	14.0	57.1	24.0	17.9
60~64세	57.9	27.9	12.3	62.7	26.5	9.6	64.7	23.8	10.5	67.2	19.2	12.6	63.4	20.8	15.0
65~69세	56.6	28.1	12.6	61.1	26.7	10.6	62.6	24.8	11.1	66.7	20.0	12.0	65.6	20.0	13.5
70~74세	56.1	28.2	12.2	58.4	27.8	11.7	57.4	27.3	13.2	62.2	23.0	12.9	63.8	21.7	13.3
75~79세	55.1	28.5	11.8	56.1	28.6	12.2	53.0	29.2	14.9	56.1	26.1	15.2	58.9	24.9	14.7
80~84세	54.4	28.5	11.7	55.4	28.0	12.6	50.2	30.1	15.6	51.4	28.0	16.9	52.4	28.5	17.0
85세 이상	52.4	28.6	11.5	55.0	27.4	11.5	48.6	29.9	16.2	48.9	28.2	18.1	48.3	28.7	19.7
전체	38.2	40.4	19.4	39.9	43.9	14.9	41.1	41.2	16.1	44.7	33.3	20.4	41.2	33.0	24.4

자료: 최은영(2014).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경제활동을 시작한 청년이 중년을 거쳐 노년에 이를 때, 그들의 주거 점유 형태는 자연스럽게 전월세 임차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라는 일반적인 경로를 따랐다.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애 자가 소유가 생애 주기에 이루어야 할 하나의 목표였으며, 그동안 정부도 주택 정책의 핵심으로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최근 청년이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를 오르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청년들에게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준비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이다. 서울시 청년(16세~34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에 더 나은 주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은 응답자의 3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청년층은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 저축할 여유가 없음(43.6%)’과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너무 커서 저축할 여유가 없음(15.5%)’ 응답이 1, 2위를 차지하였다(최은영, 2014).

〈표 2-2-5〉 연령대별 주거준비 여부(서울시)

(단위: 명, %)

구분	16~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전체	
예	17	18.5	119	28.0	131	48.7	39	57.4	306	35.8
아니오	75	81.5	306	72.0	138	51.3	29	42.6	548	64.2
전체	92	100.0	425	100.0	269	100.0	68	100.0	854	100.0

자료: 최은영(2014).

이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30대 미만 청년의 자가 소유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 30대 미만의 자가 소유 비율은 1980년에서 2007년 사이 18%에서 9%로 감소하였다(Mckee, 2012).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에 따르면 1996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의 주택 가격은 평균 연봉의 2.7배였으나, 현재는 평균 연봉의 4.4배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Dugan, 2014). 또한 미국의 경우도 Thompson(2012)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과 2000년 사이 자가 소유 비율이 20대 후반은 43%에서 38%로, 30대 초반은 61%에서 55%로 감소했으며, 주택 가격 거품이 붕괴된 이후 자가 소유 비율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다수의 청년들이 주거 자립의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부모의 '자산 사다리'를 얻은 청년층은 이들과 다른 생애 주기의 이행기를 거친다. 변창흠(2014)은 이러한 부모로부터의 지원의 차이는 청년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주택이나 재산을 상속받는 청년층과 그렇지 못한 청년층과의 괴리가 평생을 두고 극복되지 못한다면 주거 문제는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다.

정민우(2011)의 연구에 따르면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청년은 16명으로 많지 않았으나, 이 중 부모로부터 주거비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는 11명, 부분적으로 받은 경우는 3명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자가 소유는 대부분 부모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차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임차료 부담에 대해 분석한 최은영 등(2014)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가구의 49.4%가 부모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가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학생의 경우는 80.7%가 부모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상용 근로자와 임시·일용 직근로자도 각각 29.8%, 35.0%는 부모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6〉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임차료 부담 주체(서울시)

구분	동거		독립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모	223	94.5	214	49.4	437	65.0
본인	3	1.3	117	26.8	120	17.9
다른 가구원	1	0.4	10	2.3	11	1.6
부모와 본인 분담	5	2.1	36	8.3	41	6.1
본인과 다른 가구원 분담	0	0.0	38	8.7	38	5.7
가구원 모두	4	1.7	14	3.2	18	2.7
기타	0	0.0	7	1.6	7	1.0
전체	236	100.0	436	100.0	672	100.0

자료: 최은영 등(2014).

위와 같은 사실은 자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 청년층의 주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평균 나이가 부모의 지원이 없는 경우 37세, 부모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31세로 차이가 났다(CML, 2011).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족의 재정적 지원이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상향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가구 형성의 지연 및 부모 부담의 연장

청년의 빈곤, 특히 주거 빈곤의 문제는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켜 가구 형성을 지연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결혼 연령의 상승, 미혼 인구의 증가는 저출산 문제로 직결되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성인 자녀의 가구 형성 지연으로 인한 부모와의 동거 지속은 가족의 차원에서 부모 부담의 증가 및 연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W. Aquilino, 1999; Y. Lee et al., 2011; G.

Lee, 2001; M. Yamada, 2004, 최연실, 2014에서 재인용).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2.6세, 여자 30.0세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1.7세, 2.2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c). 청년층은 독자적인 가구를 형성할 경우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을 연장하는, 즉, 부모와의 동거를 연장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현재 한국의 만혼화 현상이 바로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가구를 형성한 청년층의 빈곤율을 혼인 지위에 따라 비교해 보면, 미혼 단신가구 빈곤율은 21.0%이나 혼인을 통해 가구를 형성한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 위험이 감소하여 가구주는 7.9%, 배우자는 7.5%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 청년층 중에서 혼인을 할 수 있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험이 낮은 집단임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김수정, 2010).

또한 정의철(2012)은 한국노동패널 7차 조사(2004년)와 11차 조사(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20~35세 청년가구의 가구 형성에 대한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추정 결과 청년가구의 연령과 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시장 변수인 전세 가격도 청년가구의 가구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세 가격이 1,000만 원 증가하면 가구 형성 확률은 1.3% 감소하고, 전세 가격 상승률이 10% 포인트 증가하면 가구 형성 확률은 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가구 패널 자료를 이용한 Ermisch(1999)의 연구도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청년가구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확률이 낮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체코 상황을 분석한 Vobecka et al(2014)의 연구에서도 주택 점유 형태와 주택에 대한 접근성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구의 종류, 형성 시기 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택 문제는 가구 형성뿐 아니라 자녀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녀

수의 차이에는 주택 문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국의 경우, 31~44세 사이의 아이가 없는 사람들 중 20%가 부담 가능한 집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것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pennington et al., 2012).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출산율은 1.24명으로 2000년대 후반 이후 약 1.2명대를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2016b).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주택 가격과 출산 시기와 수준에 대해 분석한 김민영 등(2016)의 연구에 의하면, 주택 가격은 합계 출산율에는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주택 가격은 출산의 시기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구 형성의 지연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부양 부담의 연장으로 이어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심지어 독립했던 자녀가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캥거루족’, ‘연어족’, ‘스크럼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신조어의 등장은 한국이 서구에 비해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가족문화에 비추어 보아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최연실, 2014). 캥거루족은 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일본에서 2000년대 초반 만들어져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연어족은 부모로부터 독립했다가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며, 스크럼족은 결혼 이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또한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미국에서는 생애 주기 관점에서 볼 때 성인 자녀가 독립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면서, 이러한 집단을 일컫는 ‘ILYA(Incompletely Launched

Young Adults)’ (A. Schnaiberg & S. Goldenberg, 1989)라는 용어가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20대 후반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트릭스터(Twixter)’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중간에 낀 세대(betwixt and between)’라는 의미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안정된 직업을 찾지 못하고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부메랑 키즈(Boomerang Kids)’라 부르기도 하며, 영국에서는 이들을 ‘부모의 퇴직 연금을 좀먹는 아이들(Kids in Parent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이란 의미로 ‘키퍼스(Kippers)’라고 부른다(최은영, 2014).

더 이상 성년 이후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일은 ‘예측 가능한 선형(linear)’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닌 것이다. 미국과 영국 모두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25~34세 인구 비율이 2000년대 초반에는 10.6%였으나, 경제위기 바로 1년 전인 2007년에는 11.8%로 증가하였다고 한다(Shah, 2013). 영국 통계청에 의하면, 경기 불황으로 인해 부메랑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Dugan(2014)은 영국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20~34세 청년은 10년 사이 38%가 증가해 335만 명에 이르는데, 2013년에는 청년의 4분의 1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이는 유럽 대륙에서 이미 흔한 현상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가구주 60세 이상)는 2013년 32.2%에서 2015년 31.6%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동거의 이유는 자녀의 독립 생활 불가능이 34.2%로 2013년 29.3%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부모 본인의 독립 생활 불가능은 29.3%로 2013년 36.0%에 비해 감소하였다(통계청, 2015). 서울시 청년 대상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 거주 청년 858명의 응답자

중 부모와 동거는 46.5%로 비동거 가구가 약간 높았지만, ‘독립은 원하나 주거비와 생활비가 부담스러움’과 ‘독립은 원하나 소득이 없음’으로 응답한 비자발적인 동거가 전체의 5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은영, 2014).

〈표 2-2-7〉 부모와 동거하는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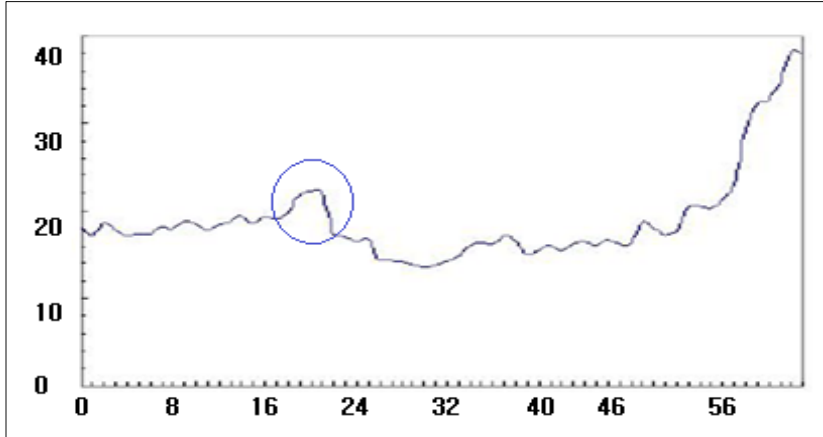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독립을 원하지 않음	62	15.5
결혼 등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경우 독립할 계획	121	30.3
독립은 원하나 주거비와 생활비가 부담스러움	87	21.8
독립은 원하나 소득이 없음	115	28.8
기타	14	3.5
전체	399	100.0

자료: 최은영(2014).

성인 자녀의 부모 동거뿐만 아니라, 비동거이지만 경제적 독립이 지연되어 여전히 부모가구의 자녀로 남아 있는 비율의 증가도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청년 빈곤의 특징은 아동 빈곤과 근로 빈곤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18세~24세의 청년층은 아동기에서 청년층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나, 청년기로의 이행의 곤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정점에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18~24세 청년층의 빈곤율은 18세 미만 아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연령의 청년층은 부모가구의 자녀로 남아 있는 비율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빈곤 지위는 부모가구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아동 빈곤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김수정, 2010).

[그림 2-2-2] 연령별 빈곤율(2006~2008)

(단위: %)



자료: 김수정(2010).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금의 청년층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가구 형성을 지연시키고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의존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부모의 부양 부담을 높이고 있다. 생애 주기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늦추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의존 인구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제3절 한국의 청년 지원 제도

한국의 청년이 복지 대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도는 고용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청년들이 학업-취업-결혼에 이르는 생애 주기 상의 전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사회 전반에 공유 되면서, 청년은 비로소 복지의 영역으로 한걸음 들어오게 되었다. 본 절

에서는 한국의 청년 지원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 수행된 지원 정책의 특징과 지원이 미흡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득 지원 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를 살펴보기 이전에 보편적으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최저임금제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되어 지난 2016년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되었다. 개편을 통해 하나의 선정 기준은 급여별로 다양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욕구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2016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또한 위와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라 해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의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최대 월 1,273,516원, 주거급여(임차급여)는 최대 월 307,000원(1급지, 서울)을 받을 수 있다.

〈표 2-3-1〉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임차급여)

(단위: 원)

구분	생계급여	주거급여			
		1급지(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471,201	195,000	174,000	143,000	133,000
2인	802,315	225,000	195,000	154,000	143,000
3인	1,037,916	266,000	236,000	184,000	174,000
4인	1,273,516	307,000	276,000	215,000	195,000
5인	1,509,116	317,000	287,000	225,000	205,000
6인	1,744,717	369,000	338,000	256,000	236,000
7인	1,980,317	-	-	-	-

주: 1) 생계급여의 경우, 8인이상가구의 선정 및 급여 기준은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35,600원을 추가함.

2) 주거급여(임차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는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 10% 증가.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558호).

다음으로 실직자들의 생활 수준 유지를 돕고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제도가 있다.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 되는 급여로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성 된다. 그 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 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된다. 실 직의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또한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자에게 지급되며, 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거나, 재취업 훈련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한해 지급하고, 구직급 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가 30일 이상 남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 급여 일수만큼 지급되며, 2016년 이후 이직한 자는 상한액이 1일 43,416원, 2015년 이직자는 1일 43,000원을 받게 되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이며,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8,24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0,27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단, 3개월 이내의 수급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상여금 등), 소정 근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 일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가족수당, 급식 수당, 주택 수당, 통근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표 2-3-2〉 소득 지원 제도

제도	내용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이전 최저생계비 개념)의 일정 비율 이하 ·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 -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생계와 주거급여의 수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 규모별 최대급여액의 차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음. -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직자 -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일수만큼 지급(1일 상한액 43,416원)
최저임금제	-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 - 2016년 현재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일급 48,240원, 월급 1,260,270원)

2. 청년 고용 지원 제도⁵⁾

가. 현장 실무 습득 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 역량 제고: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등

청년층의 문제는 고용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년층 대상의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고용 지원 측면에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대학 및 관련 교육 기관에서의 교육과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지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청년 고용 지원 제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학습병행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의 고용 지원 제도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청년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병행 제공하고 직무 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우수 인재를 선점하여 현장 훈련 및 실무 경험을 익히게 하여 기업에 필요한 숙련 인재를 양성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기업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학생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배우고 동시에 임금을 수령하여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 기업에 조기 채용 및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학습 근로자를 채용(6개월~4년)한 기업에게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학습 도구 지원 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고 학습 근로자에게 40만 원 한도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둘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다. 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에게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고용노동

5) 청년 대상의 고용 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정책마당의 대상자별 정책(청년) 페이지와 「2016 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부의 프로그램이다. 청년인턴 대상은 취업 경력 12개월 미만의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으로서 인턴십 과정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을 형성하며, 직업 능력을 배양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월 60만 원(중견기업 월 50만 원) 지원하며, 청년인턴을 정규직 전환하고 1년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최대 390만 원(6개월 후 195만 원, 12개월 후 19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년 이상 근무 시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 원, 그 외 업(직)종은 18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때 지원금은 1개월 후 20%, 6개월 후 30%, 12개월 후 50%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셋째,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사업주 단체, 대학 또는 민간우수훈련기관이 직접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며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년은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대학 재학생과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자로서 연수 시간은 교육과정에 따라 200~600시간이다. 아카데미는 일반과정과 인문계 특화과정으로 나뉘며, 참여 학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아카데미 운영기관은 1인당 교육비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한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교육과정 후 상담 및 경력 관리를 통해 교육생에게 맞는 분야의 단계별 취업을 연계하고 수료 후에는 사후관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료 후 6개월까지는 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1년까지는 권장사항이다.

넷째,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대기업 등의 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직업훈련

및 인턴제를 실시한 후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이다. 본 사업은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만 15세~34세 청년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의 자체 직무훈련에 참여 후 협력업체 등에서 인턴 프로그램을 거쳐 취·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을 위한 운영비(최대 3억), 시설·장비비(최대 15억) 및 훈련비(실비)를 기업에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훈련 수당(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인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인턴 지원금(중소기업 월 60만 원, 중견기업 월 50만 원, 3개월)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정규직 전환 후 6개월 195만 원, 1년 195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취업 지원금(최대 300만 원, 1개월 후 20%, 6개월 후 30%, 1년 후 50%)을 지급한다.

나. 해외 취업 지원 및 훈련 및 취·창업 지원

: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 청년내일찾기패키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의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해외취업 희망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어학+직무교육) 등을 통해 구인 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여 해외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단, 30% 범위에서 연령 초과 참여 가능) 미취업자로서 해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한다. 6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 대상은 1인당 최대 580만 원, 6~12개월의 장기교육 대상은 최대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성공적 해외 취업 및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8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으로 연봉 1,5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단순노무직 배제)에 취업한 경우 인

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청년층의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을 분리하여 「청년내일찾기패키지」를 신설(2016년)하여 훈련 및 취·창업 등 분야별 핵심 사업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즉, 취업과 관련한 진단 및 상담에서부터 청년의 의욕증진 및 능력개발, 그리고 알선에 이르는 일련의 전 과정을 제공한다. 1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진단하고 경로를 설정(참여수당 최대 20만 원)하고, 2단계에서는 취업의욕 및 직무능력 증진을 위해 일 경험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훈련 참여 수당 최대 40만 원)하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동행 면접 및 실질적인 취업 알선이 이루어진다(기관 방문 참여자 실비 1회 2만 원, 최대 3회 6만 원). 단, 청년층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층의 니즈 파악을 위한 사전 단계로 자가 진단을 신설하고, 2단계 프로그램을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보다 다양화하고 일 경험, 해외 취업 등의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만 18~34세의 고교, 대학,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대졸 이상 미취업자,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액 8000만~1억 5000만 원 미만),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의 이직자 등이 대상이다. 직무능력 및 취업의욕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직무능력↓ 취업의욕↓은 대상자는 통합지원형(A), 직무능력↓ 취업의욕↑ 대상자는 일경험중심형(C), 직무능력↑ 취업의욕↓ 대상자는 훈련중심형(B), 직무능력↑ 취업의욕↑ 대상자는 조기취업형(D), 해외취업형(E), 창업창직형(F)으로 구분된다.

〈표 2-3-3〉 청년 고용 지원 제도

제도	내용
일학습병행제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 프로그램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미취업 청년에게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청년취업아카데미	기업·사업주단체, 대학 또는 민간우수훈련기관이 직접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 후 취업연계와 사후관리를 제공
해외취업지원사업 K-Move	해외취업 희망 청년(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어학+직무교육) 등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여 해외일자리 매칭 등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고용디딤돌	청년들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품질 직업훈련 및 인턴제를 실시한 후 취업·창업을 지원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청년내일찾기패키지」를 신설(2016년)하여 훈련·취창업 등 분야별 핵심사업 통합 제공

3. 청년 주거 지원 제도

가.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사회적주택

주거 지원 제도로써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행복주택과 전세임대주택, 그리고 사회적주택은 최근 청년층을 포함하거나 주요 대상으로 삼아 시행 중인 대표적인 주택 지원 제도이다. 우선,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 층이 행복주택에 80% 입주하게 됨으로서 입주 청년층에게 행복주택을 주거사다리로 삼아 안정적인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030세대가 집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을 갖고 있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행복주택 인근(인접 시, 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자로서 최대 거주 기간은 10년이다(국토교통부, 2015).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주거 지원 제도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바로 이 제도의 큰 맥락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라 볼 수 있다. 대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신혼부부가구 등이 해당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주거지가 대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 군 출신 대학생이며, 취업준비생은 부모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경우)의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이 신청한 지역에 한한다. 소득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순위가 주어지며, 시세 대비 저렴한 월세로 임대하며, 최장 6년 장기 계약이 가능하다. 단, 대학생이 졸업을 하거나, 취업준비생이 취업한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하다(LH, 2016. 6. 2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되며, 최장 20년 계약(최초 임대 기간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LH, 2016. 6. 10.).

마지막으로 청년을 위한 주택 지원 제도는 최근 시범사업이 시작된 사회적주택을 들 수 있다. 2016년 9월 시작된 사회적주택 시범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고, 운영 기관은 한 집에 여러 명이 방을 나눠 사용하는 세어 하우스 형태로 주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입주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친목 도모, 취업 멘토·멘티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주 자격은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재직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6년, 취업준비

생은 4년 동안 거주가 보장된다. 재계약 및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을 준용한다. 운영 기관은 시중 전세 가격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금융 지원

: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월세대출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제도로는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 지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주택 구입 자금 금융 지원의 경우 디딤돌대출이 대표적이다. 2016년 9월부터 신혼부부가구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현행 연 2.3~3.1%에서 0.2% 포인트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도 최저 금리 하한은 1.6%로 유지(2016년 11월 말까지 한시적 적용)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 포인트 우대와 신혼부부 0.2% 포인트 우대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또한 2016년 1월 대출신청 가능 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되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가구를 위한 전세 자금 지원 제도로는 버팀목대출이 있다. 신혼부부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을 경우, 현행 연 2.5~3.1%에서 0.2% 포인트 우대된 연 2.3~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2016년 1월 수도권외의 경우 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 신청 가능 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였다. 정부는 디딤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출산을 제고

등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6. 1. 20.).

마지막으로 청년 월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지원 제도가 있다. 주거 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 원씩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근로 장려금 수급자 및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이었으나, 2016년 8월부터 자녀 장려금 수급자 및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은 연 1.5%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최장 10년(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또 다른 월세 지원 제도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 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6. 8. 17.).

〈표 2-3-4〉 청년 주거 지원 제도

제도		내용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금융 지원	디딤돌 대출	신혼가구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현행 연 2.3~3.1%에서 0.2% 포인트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
	버팀목 대출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을 경우, 현행 연 2.5~3.1%에서 0.2% 포인트 우대된 연 2.3~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 가능
	월세 대출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근로 장려금 수급자 및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이었으나, 2016년 8월부터 자녀 장려금 수급자 및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확대 시행
임대 주택	행복 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주택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2016. 9/LH)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고, 운영기관은 한 집에 여러 명이 방을 나눠 사용하는 셰어 하우스 형태로 주거 제공
	전세 임대	대학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 하고자 하는 주택 매물을 찾아 LH에 의뢰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

4.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제도

기획재정부에서는 2016년 청년취업인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취업 지원금의 지원 방식을 전환하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청년내일공제)제도로 개편하였다. 동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 또는 장기 실업자 등이 중소기업 인턴으로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만 15~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 5000원씩 24개월을 납입하면(총 300만 원), 기업이 2년간 300만 원, 정부가 2년간 6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후 2년 근무 시 만기 공제금 총 1,200만 원+ α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최근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는 기업 정서를 고려하여 청년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을 쌓고, 이를 발판으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만기 공제금 수령 후에는 중기청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장기근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6. 4. 27.).

또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속 유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8월 도입한 제도로써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5년 이상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인력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공제 사업이다. 동 제도의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핵심 인력)로서 최초 가입 시 5년, 재가입 시 3~5년의 가입 기간을 두고,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1:2의 매칭 비율로 5년간 최소 2,000만 원을 이상 납입해야한다. 가입한 기업은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비인정하며, 세액공제(25%) 혜택을 주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만기 공제금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2016년 7월부터는 청년 취업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규 사업으로 시행되었다(중소기업청, 2016. 8. 22.).

〈표 2-3-5〉 청년 자산 지원 제도

제도	내용
청년내일공제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 또는 장기 실업자 등이 중소기업 인턴으로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만 15~34세) 대상 -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 5000원씩 24개월을 납입(총 300만 원), 기업이 2년간 300만 원, 정부가 2년간 6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후 2년 근무 시 만기 공제금 총 1,200만 원+α(이자) 받을 수 있음.
내일채움공제	- 5년 이상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인력 대상 -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1:2 매칭(5년간 최소 2,000만 원 이상 납입 의무) - 근로자는 만기 공제금 근로소득세 50% 감면

5. 지방자치단체 청년 지원 제도⁶⁾

가.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서울시는 낡은 비주거 시설(고시원, 여관 및 호텔 등)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 공간이 반영된 셰어 하우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로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의 1인가구로서 청년층을 포함한 저소득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운영 관리는 민간 공모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주택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가 담당한다. 즉, 사회적 경제 주체가 건물을 매입 및 임차

6)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제도의 사례는 중앙정부 청년 지원 제도의 큰 틀 안에서 다른 이름으로, 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제외하였다. 즉, 중앙 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하게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을 담고자 하였다.

후 리모델링을 거쳐 주거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방 하나의 전용 면적은 6.5㎡로서 이는 영국의 다중주택 침실 1개의 최소 면적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입주자는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주변 고시원 시세의 50~70% 수준이다(서울시청, 2016).

나. 서울시 한지붕세대공감

서울시는 대학(원)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홀몸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과 어르신이 주거를 공유하는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자가·전세) 60세 이상의 어르신은 1실당 100만 원 이내의 환경 개선(도배, 장판 등) 자금을 지원 받고, 주거를 공유하는 대학생으로부터 생활상의 필요 활동(청소 등)을 분담할 수 있으며, 대학생은 보증금 없이 월 20만 원 내외의 저렴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월 임대료와 추가로 발생하는 전기료 및 수도세 등은 어르신과 대학생 상호 간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하다(서울시청, 2016).

다. 파주시 따복하우스

따복하우스는 ‘따뜻하고 복된 하우스’란 의미를 가진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대체로 중앙 정부의 행복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상자 기준 및 지원 수준으로 설계되어있다. 즉,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유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의 따복하우스는 파주시 문발산업단지 내에 건설됨에 따라 중앙 정부의 행복주택과 비교하여 일자리와 주거 복지의 연계가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된 예라고 볼 수 있다. 문발산업단지로 출퇴근 하는 청년 근로자의 주거 문제 해

결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제공하여 청년 근로자의 주거비 및 출퇴근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파복하우스는 2017년 11월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주 대상은 산업단지 근로자 또는 만 34세 미만의 미혼 청년과 지역 주민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경기도청, 2016. 1. 8.).

라. 경기도 파복하우스(행복주택) 임대 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도형 행복주택, 파복하우스의 목적 중의 하나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파복하우스 입주자에게 임대 보증금의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 할 계획에 있다. 표준 임대 보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변 지역 주택 등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임대 시세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 대상별 계수를 곱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된다. 경기도의 파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 가구는 임대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표준 임대 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입주 후 자녀 1명 출산 시 이자의 60%, 자녀 2명 출산 시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경기도청, 2016. 10. 19.).

마. 성남시 청년배당

성남시는 청년층이 학업과 취업 등에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청년층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여 청년배당제도를 2016년 1월 처음 도입·시행하였다.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24세의 청년(재정 여건에 따라 만 19~24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액은 당초 청년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중앙정부와의 권한쟁의심판 중으로 당초 지원 금액의 50%인 연 50만 원(분기별 1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성남시청, 2016a; 2016b).

〈표 2-3-6〉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제도

지역	제도	내용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 낡은 비주거 시설(고시원, 여관 및 호텔 등)을 리모델링하여 셰어 하우스로 제공 -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 1인가구 청년층 - 주택의 운영 관리는 민간 공모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가 담당
	한지봉세대공감	- 60세 이상 어르신의 주택에 대학(원)생이 주변보다 저렴한 (월 20만 원 내외) 임대료로 입주 - 어르신은 1실당 100만 원 이내의 환경 개선(도배, 장판 등) 자금을 지원받고, 고립감도 동시에 해소
경기도	파주시 따복하우스	-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파주 문발산업단지에 건설(예정)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제공하여 청년 근로자의 주거비 및 출퇴근 부담 해소 -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료 책정(예정)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 따복하우스 입주자에게 임대 보증금의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계획) - 표준 임대 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1명 출산 시 이자의 60%, 2명 출산 시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됨.
	성남시 청년배당	-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24세의 청년 - 1인당 연 50만 원(분기별 12만 5000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6. 한국의 청년 지원 제도의 경향 및 함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년 지원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소득 지원 제도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청년층의 고용 문제와 맞물려 청년층의 생애 주기의 이행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년층에 대한 주거 복지 영역의 지원이 다양하게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거 복지 영역의 지원은 기존 주거 지원 제도의 대상에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획일적인 중앙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 사정에 알맞은 주거 및 소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파주시의 주거 지원과 성남시의 소득 지원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는 중앙 정부의 관련 제도를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변형한 제도도 있으며, 중앙 정부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청년층 지원 제도는 여전히 고용 지원과 주거 지원, 또는 기타 소득 지원과 같은 제도들이 연계되지 못하고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청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괜찮은 일자리와 괜찮은 주거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근 건설되고 있는 행복주택이 일자리와 주거 지원이 연계된 대표적인 청년층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파주시의 파북하우스는 산업단지 내에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산업단지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거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가장 직접적으로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연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위와 같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 3 장

외국의 청년 주거 문제 및 지원 정책

제1절 일본의 청년 주거 문제 및 지원 정책

제2절 영국의 청년 주거 문제 및 지원 정책

3

외국의 청년 주거 문제 및 지원 정책

제1절 일본의 청년 주거 문제 및 지원 정책

일본에서도 청소년이나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관련 법령⁷⁾도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청년’에 대응하는 단어로 일본에서 정착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와카모노’(若者)이다. 와카모노는 한국어로는 ‘청년’ 혹은 ‘젊은이’로 번역되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젊은이’이다. 와카모노가 처음 법령 이름으로 사용된 것은 2009년 제정된 ‘아동·청년(와카모노) 육성지원추진법’인데, 이 법에는 와카모노의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처음으로 와카모노를 특집으로 다룬 2015년 노동백서에서는 20세에서 39세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사회학이나 사회복지학에서는 20세에서 34세로, 아동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는 20세에서 34세로 개제되어 있고, 또한 와카모노 관련 사업은 대체로 35세 미만으로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와카모노를 20세에서 34세까지로 한국의 청년과 대응하는 단어로 사용한다.

1. 청년 주거 문제의 배경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청년 문제는 가족 내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청년층 문제는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7) 2012년 “아동·청년 백서”에서는 참고 자료 3에 각종 법령 등에 의한 아동 및 청년 연령 구분을 제시하고 총 19개 법령에 의한 연령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내각부, 2012).

를 대표하는 말이 ‘패러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족’, ‘NEET’, ‘히키코모리’ 등이었다.

이러한 ‘기생충 싱글족’, ‘NEET’, ‘히키코모리’ 등 현 청년층을 나타내는 새롭게 등장한 조어들은, 일본 사회에서 청년층 문제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나타내 준다. 특히 가출 청소년이나 단신 청년층이 주요 사회문제시 되어 온 한국 사회와 비교하면 흥미로운 시사점들을 알려준다. 이들 중 일본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위와 같은 청년층 문제는 모두 ‘가정 내’ 문제이다. ‘기생충 싱글족’, ‘NEET’, ‘히키코모리’는 일단 부모와의 동거가 전제된다. 따라서 부모가 세대주일 확률이 높으며, 주택 관련 통계에서 이들은 한 세대로 간주된다. 이것은 일단 가구주로서 드러난 청년이 주요 대상이 되어온 한국과는 매우 다른 맥락이다. 가구에서 독립한 청년보다는 일본에서는 가구 내 청년을 통하여 사회 변화를 읽으려 한 연구들이 90년대 후반부터 꽤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것은 특이할 만하다.

둘째, 따라서 일본의 주거 관련 청년 연구의 주요 대상은 아주 최근까지 주로 가구 내 단신 청년층에 집중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들이 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가? 부모에게 왜 의존하는가? 이것은 일본 사회의 어떠한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가? 등이 주요 연구 주제였지, 가구로부터 독립된 단신 청년 문제가 독자적으로 사고되지는 않았었던 것이다.

셋째, 따라서 일본의 청년 주거 문제가 독립된 문제라기보다는 한 가구 내 문제에 집중되었다. 일단 주거는 부모로부터 일정정도 안정화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들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이 주로 실천 현장에서 고민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논의에서, 청년들의 ‘나약함’, ‘자립심 부족’ 등 ‘마음가짐’이나 ‘정신상태’에 대한 지적이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응 중 하나로서, 발달

장애 등의 범주 확장이나 심리학적 해결 방법 등이 고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청년층 주거 문제가 독자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으로서의 청년층 문제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이다. 특히 이 연구들은 이들에 대한 ‘정신상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는, 세대 내의 단신자가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이 열악함을 드러내면서,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부모와 동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1, 宮本 2004, 大石 2004 등), 두 번째는, 넷 카페 난민, 청년 홈리스 등, 집 밖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실태 조사와 르포를 통해서 폭로하는 연구이다(川崎 2007, 水島 2007 등).

특히 이 연구들은 청년층의 생활보호 수급자 비율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한 2008년 리먼쇼크를 계기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현 일본의 주거 정책에서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청년층을 정책 대상으로 올려 놓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청년 주거 연구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그 독자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의 청년 주거 문제

여기서는 일본의 주거 문제 실태를 크게 전반적인 실태와 저소득층 청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⁸⁾

8) 주거의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볼 때에는 일본 정부의 통계를 주로 참조하면서도 히라야마 요스케(平山洋介)의 세대 내 단신자·세대 밖 단신자·세대형성자로 구분한 청년 주거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 청년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平山 2008, 平山 2009a, 平山 2009b). 히라야마는 종래의 주택 통계가 세대 단위를 중시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세대주가 부모인 세대에 속해 있는 청년층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세대 수준의 분석은 아동,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약자의 주거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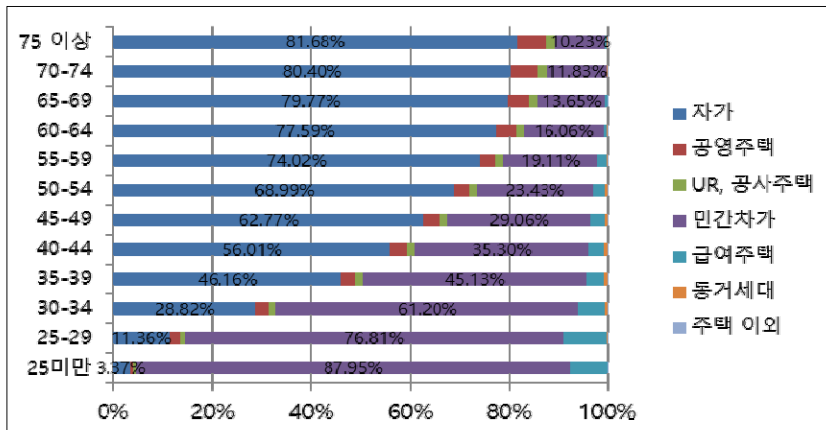
가. 청년층의 주거 실태

일본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택·가족·일이 상호 간 생애 주기를 구성하는 데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또한 이 세 가지가 생애주기별 각 단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며, 그 단계를 제대로 밟고 올라가느냐에 따라 그 생애가 사회적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거는 자주 하나의 ‘사다리’로 표현된다(平山, 2009b). 생애 주기는 주거 소유 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일’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하는 데에 할애된다. 사다리의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인생 궤도 전체에 ‘형태’를 부여한다(平山, 2009).

아래는 2013년 현재 일본의 연령대별 주거 소유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1] 일본의 세대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자의 연령별 주거 소유 형태



자료: 국토교통성(2013). '2013년도 주택·토지통계조사'.

를 은폐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平山, 2008: 11). 한국에서도 청년층 주거 분석 및 이에 대한 정책은 주로 세대 밖 단신자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히라야마의 분석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히라야마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주로 토지·주택통계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분석하면서 일본 청년 주거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자가의 경우 20대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나, 40대의 경우 절반 이상이 자가 소유의 형태를 보인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그 비율은 70%에 육박하며 75세 이상은 81.68%가 자가 소유를 보인다. 다른 한편, 민간 차가의 경우, 25세 미만의 경우 압도적인 87.95%이나, 서서히 감소하여 35~39세가 되면 자가와 비슷한 비율인 46.16%가 된다. 75세 이상은 81.68%가 자가 소유자이다. 즉 주거 소유와 생애 주기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애 주기와 주거 소유와의 관계는 아직까지 그 큰 형태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이러한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청년층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히라야마가 국세 조사를 활용한 자료에 따르면, 세대 내 단신자⁹⁾는 청년기라 할 수 있는 25~29세, 30~34세, 35~39세 모든 연령대에서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다(平山, 2008). 1980년의 경우, 25~29세 중 세대 내 단신자는 24%였으나, 이는 2005년에 41%로 증가한다. 또한 30~34세와 35~39세도 각각 8%, 3%에서 25%, 16%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다. 단신자 역시 25~29세는 12%에서 19%로, 30세~34세는 6%에서 14%, 35~39세는 9%로 그 비율이 늘어난다. 반면 세대 형성자의 경우, 2005년 25~29세가 28%, 30~34세가 50%, 35~39세가 62%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의 청년층 중 표준적 생애 주기의 과제로서 세대 형성이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예전의 소위 '표준'적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결혼으로 인한 세대 형성이 35세가 넘어서도 약 60% 정도의 사람들만이 달성하게 되었다는 점은 과거 일본의 주거 정책의 전

9) 세대 내 단신자에 관한 조사로 2001년에 후생성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세대 내 단신자에 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이 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데이터 비교는 어렵다.

환 모색이 촉구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러한 세대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 세대 내에 머물거나, 집에서 독립하더라도 단신세대 형태의 생활자가 늘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중 다수의 연구들은 위에서도 언급한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한 생활의 빈곤화를 거론한다. 이 연구들은 1990년대 말부터 노동시장의 불안정화와 더불어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미혼자 다수는 독립 세대 형성에 필요한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실태를 밝히고 있다.

취업구조기본조사 2002년 데이터에 따르면, 30~34세 남성이 배우자를 가지는 비율은 정규직인 경우 59%이나, 비정규직은 30%,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취업자는 19%였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은 별거하는 청년층에 비하여 비정규직이 많으며, 소득이 낮다는 점은 다수의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岩上, 1999; 宮本, 2004 등).

이렇게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저해되고 세대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청년의 인구 이동도 침체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대도시로 취업을 위해 이동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소가 2001년 실시한 인구이동 조사에 따르면 도쿄권의 도쿄권 출신자가 68%였는데, 34세 이하는 70% 이상이었으며, 24세 이하는 80% 이상이다.

나. 청년의 세대 유형별 주거 실태

히라야마가 2008년 독자적으로 주택토지통계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대 내 단신자의 경우, 자가 소유가 압도적으로 많다. 남성의 경우, 25~29세는 85.0%, 30~34세는 85.4%, 35~39세는 86.1%, 여성의

경우, 25~29세 84.7%, 30~34세 84.4%, 35~39세 84.4%이다.

세대 내 단신자 본인이 자가 소유라기보다는, 단신자를 부양하는 부모의 자가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주택 소유 형태 및 넓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 분포를 확인해 본다¹⁰⁾. 세대 내 단신자 가구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그 세대의 연수입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20~24세의 300만 엔 이하 비율은 남성은 12.3%, 여성은 11.9%이나, 35~39세의 경우, 28.2%, 28.8%로 크게 증가한다. 단신자의 경우, 20~24세 중 300만 엔 이하 남성은 88.5%, 여성은 90.4%로 압도적이며, 이 수치는 35~39세에서 각각 25.7%, 42.3%로 크게 감소는 하지만 작지 않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세대 형성자의 경우에는 20~24세의 300만 엔 이하가 남성은 56.0%, 여성은 44.4%이나, 35~39세가 되면 남성은 10.5%, 여성은 9.5%로 매우 낮아진다. 반대로 700만 엔 이상은 20~24세의 2.0%, 3.4%에서 각각 28%, 32%로 크게 증가한다.

다음은 월세이다. 월세는 세대 내 단신자의 경우 임차가구가 매우 적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고, 단신자와 세대 형성자를 비교하면, 단신자의 경우, 월세 7만 엔 이상이 20~24세의 남성은 40.0%, 여성은 45%이며, 이 비율은 35~39세가 되면 60%, 66%로 증가한다. 한편 세대 형성자는 20~24세의 남성은 54.6%, 57.8%에서, 35~39세가 되면 각각 65.6%, 61.5%로 증가한다. 양 집단 간 수치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이유로는 세대 형성자 중 월세가 매우 저렴한 회사 사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35~39세가 되면 이미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증가한 것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10) 히라야마가 주로 참고한 주택토지통계조사에서는 개인의 수입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세대 연수만을 참조하고 있다(히라야마, 2008: 21).

이상 세대 내 단신자, 단신자, 세대 형성자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세대 유형에 따라 주거 및 경제적 조건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대 내 단신자의 경우, 주거 조건은 부모의 주거 조건에 종속되어 있고, 대부분 넓은 집에 자가 소유가 많다. 하지만 소득 등 그 개인의 경제적 조건이 열악함으로 독립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반면 세대 형성자는 인생의 상승 곡선이 나타나며, 단신자의 주거 환경은 열악하나 경제적 조건은 세대 내 단신자에 비해 좋은 상황인 것이다.

둘째, 가시적인 주거 수요를 넘어선 보다 넓은 청년 주거에 대한 시야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주요 정책 대상은 세대에서 독립한 세대 형성자 혹은 단신 세대에 집중되기 쉽다. 하지만 세대 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조건이 다른 세대 유형의 청년들과 비교되면서, 세대 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신적 해이함’을 지적하는 관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잠재적 정책 수요 계층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 준다.

셋째, 따라서 이러한 분석은 일본 청년 주거 정책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 및 경제적 조건 등 다양한 사회적 구조를 시야에 넣을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단신 세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한국에서도, 세대 유형별 분석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은 즉자적인 정책을 넘어선 보다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정책을 제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 저소득 청년 주거 실태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실태 조사로 2014년 빅이슈 재팬이 발간한 “청년의 주택문제”(주택정책제안·검토위원회 편, 2014)¹¹⁾을

들 수 있다. 또한 주거 상실자에 대한 조사로서 2007년 후생노동성 직업 안정국이 펴낸 “주거상실불안정 취로자 등 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¹²⁾”가 있고, 매년 후생 노동성에서는 ‘홈리스에 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2007).

먼저 연소득 200만 엔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빅이슈 재팬의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소득 200만 엔 이하인 청년의 77.4%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 또한 결혼 희망자의 비율도 낮은 편이며, 대부분이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이동치 않고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서의 히라야마 분석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이 같은 또래 세대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 조사 결과로 인해 적은 수입과 주거비 부담 등 경제적 조건이 부모와 동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1) 이 조사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권에 거주하는 ① 20~39세, ②미혼, ③연소득 200만 엔 미만의 개인을 대상으로 2014년 8월에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1,767명이었다. 조사 대상에서 학생은 제외되었으며, 인터넷 패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응답자 분포는 수도권 904, 간사이권 863, 남성 938, 여성 829, 20대 888, 30대 879이다.
- 12) 이 조사는 이른바 ‘넷 카페’ ‘만화 카페’ 이용자 1,66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최근 일본에서 빈곤 청년을 상징하는 단어로 정착된 ‘넷 카페 난민’ 조어가 빈곤 청년을 상징하는 단어로 정착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표 3-1-1〉 저소득층 청년 주거 관련 특징

■ 가족 및 세대 형성

- 4명 중 3명은 부모와 동거
- 3명 중 1명은 “결혼하고 싶지 않다”
- 80%가 넘는 응답자가 출신지에서 이동치 않고 그대로 거주 중

■ 경제 및 학력 조건

- 3명 중 1명은 대졸자
- 무직자는 약 40%, 구직 포기자는 약 20%
- 취업 중인 자 중 8%가 정직원, 취업 경험 없음이 27%
- 개인 소득 없음이 27%, 연 소득 50만 엔 미만이 23%, 세대 총소득 200만 엔 이하 42.7%
- 부모로부터 지원 있음이 45%

■ 어려움의 경험

- 3명 중 1명이 ‘이지메’(집단 괴롭힘) 경험
- 대화 상대 없음이 36%, 남성은 46.7%

■ 주거 형태

- 부모와 동거가 74.1%, 그중 부모 자가 소유는 60.9%,
- 부모와 별거하는 자는 24.0%, 그중 임대는 66.4%.
- 공적 임대주택(공영주택 및 UR) 거주자는 응답자 중 6.2%
- 광의의 홈리스 경험자 6.6%, 부모와 별거하는 자가 2배 높음

■ 가족과 세대 내 단신자.

- 부모와 함께 사는 이유로 주거비 부담이 53.7%, 가사 부담이 54.0%(복수 응답)
- 저축액 없음이 63.7%

■ 주거비 부담

- 주거비 부담 주요 담당자가 자신인 경우 16.6%
- 부모와 별거하는 자는 77.7%, 이 중 임대주택 거주자는 62.6%
- 주거비 부담자 중 부모 도움 없는 주거비 지출 시 27.8%가 가계 마이너스

자료: 주택정책제안·검토위원회 편(2014)에서 필자가 요약.

다음으로, 이른바 ‘넷 카페’ 등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한 조사의 주요 결과이다. 대체로 젊은 연령층이 많으며,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이 집중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 상실 불안정 취로자는 도쿄, 나고야, 오사카 시 등 3대 도시에 5,400여 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이들 중 46.4%는 34세 이하의 청년층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1-2〉 넷 카페 난민 실태

- 연령: 20-24세가 30.0%, 25-29세가 21.2%로 가장 많음
- 넷 카페나 만화 카페에서 철야를 하는 이유 중 '현재 주거가 없으며 잠자리가 필요해서' 응답자가 7.8%
- 이 7.8% 중 고용 형태로
 - ① 단기 파견 노동자 혹은 단기 직접 고용 노동자 46.15%
 - ② 실업자 19.24%, 구직 의욕 없는 무업자가 20.51%
 - ③ 학생이 3.84%
- 주거 상실자 추정
 - ① 도쿄, 나고야, 오사카시 5,400명 추산
 - ② 이들 중 46.4%가 34세 이하일 것으로 추정

자료: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2007)에서 필자가 요약.

마지막으로 홈리스 실태에 관한 전국 조사(생활 실태 조사)이다. 매년 개수 조사는 이루어지나 생활 실태 조사는 비정기적으로 도쿄 및 주요 지정 도시 중 50명 이상 홈리스가 있다고 보고된 지자체에 실시된다. 일본의 홈리스 정의는 도시 공원, 하천, 도로, 역사 기타 시설을 어쩔 수 없이 거주 공간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된다(홈리스 자립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따라서 한국과는 다르게 각종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2003년, 2007년, 최근의 2012년 조사에서 평균 연령은 각각 55.9세, 57.5세, 59.3세로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4세 이하 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은 1.9%, 2007년 1.5%, 2012년 1.2%로 거의 변화가 없다(厚生労働省, 2012). 이와 같은 사실로 비추어 봤을 때 주거가 극히 불안정한 청년층은 일본 홈리스 개념인 거리 노숙을 하는 비율은 매우 작으며, 넷 카페나 24시간 만화방과 같이 매우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생활할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3〉 홈리스 연령대별 비율

구분	2003년		2007년		2012년	
	홈리스 수	비율	홈리스 수	비율	홈리스 수	비율
19세 이하	0	0.0	1	0.0	0	0.0
20-24세	3	0.1	3	0.1	3	0.2
25-29세	10	0.5	8	0.4	7	0.5
30-34세	28	1.3	20	1.0	7	0.5
합계	2163	100.0	2047	100.0	1326	100.0
평균연령	55.9세		57.5세		59.3세	

자료: 후생노동성(2012).

3. 일본 청년의 주거 정책

여기서는 일본의 주거 정책에서 청년층의 위치가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이를 위하여 주거의 약자로서 청년을 고려할 때, 먼저 일본의 주거 약자에 대한 정책의 변천과 그 성격을 정리한다. 그 다음, 각 제도별 대상자와 그 규모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주거 정책의 큰 축인 세 가지, 공영주택, 도시재생기구(UR), 주택금융공고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청년 대상 프로그램의 예와 그 한계를 밝힌다.

일본의 주거 정책이 종래에 역점을 두어 왔던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주택금융공고(현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용자 공급으로 인한 중간층의 자가 취득 촉진, 둘째, 정부의 보조를 받아 지방공공단체가 건설 및 관리하는 저소득자 대상의 공영주택, 셋째, 주택공단(현 UR(도시재생기구)) 및 주택공급공사가 공급하는 중산층 대상 공단주택 및 공사주택이다. 이렇게 각 주거 정책은 각각 타겟 계층과 목적이 상이하다. 세 가지 축은 점차 변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거 정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그 외에도 기업 복지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급부주택이 있으며,

민간업자에 각종 조성금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지역 우량임대주택’이 있다.

이러한 전국적이며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주거 정책 이외에 별도의 주거 정책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공공부조인 생활보호제도의 주택부조가 있다. 또한 2012년부터 급속도로 진행된 생활보호제도 개혁과 더불어 2015년부터 정식 개시된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의 주거확보급부금이 있다. 여기서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는 주로 노동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 취로지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보호 수급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지원제도이다.

가. 주(住)생활계획에서의 청년

일본의 전국적인 계획으로, 최근까지 1966년 제정된 주택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제8차에 걸친 주택건설5개년계획에 따라 전국 주택의 구체적인 건설 및 운영 목표치가 제시되었다. 주요 목표는 시기별로 다소 상이하였으나, 주로 당면한 주거 부족을 해소하는데 역점이 두어졌으며, 또한 주택 스톡이 그 수치로 매우 중요하게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다, 2006년에 이 주택건설종합계획법이 폐지되었으며, 이를 대체하는 법으로 ‘주생활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주택세이프티넷 법)이 제정되었다.

주택 ‘주생활기본법’은 10년간의 전국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2006년에 2015년까지의 주생활기본전국계획이 책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5년차인 2011년에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2016년 3월에는 새로

운 향후 10년간 주생활기본전국계획이 수립되었다.

먼저 2006년과 2015년의 주요 정책 목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1-4〉 주생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006년	2016년
1. 양질의 주택 스톡 형성 및 장래 세대의 계승 ① 주택 품질과 성능 유지 및 향상 ② 주택의 합리적이며 적절한 관리 등 2.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 3. 다양한 주거 니즈가 적절하게 실현되는 주택시장 환경정비 4. 주택 확보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자의 거주 안정 확보	1. 결혼·출산을 희망하는 청년 세대·양육세대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생활의 실현 2. 고령자가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주생활이 실현 3. 주거 확보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자의 주거 안정 확보 4. 자가 주택 중심을 넘어선 새로운 주택환경시스템 구축 5. 개축이나 리폼에 의한 안전하고 질 높은 주택 스톡 갱신 6. 급증하는 빈집 활용·제거 추진 7. 강한 경제 실현에 공헌하는 주생활산업의 성장 8. 주택지의 매력 유지·향상

자료: 국토교통성(2006, 2016)에서 필자가 요약.

2006년과 2016년의 계획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젊은 층에 대한 강조이다. 2006년의 주요 목표에는 젊은 층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4.주택 확보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자의 거주 안정 확보’의 대상자는 ‘고령자(65세 이상)’와 ‘최저거주면적수준미만’ 세대만이 제시되었다. 이에 반해 2016년 계획에서 제1목표로 제기되는 것이 청년 세대 및 양육 세대이다. 따라서 최근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주생활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다.

〈표 3-1-5〉 2016년 주생활기본계획 중 청년 세대 관련 기본적 시책

- (1) 결혼·출산을 희망하는 청년 세대·양육 세대가 필요로 하는 질이나 넓이의 주택에 수입 등 세대 상황에 맞추어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
- ① 민간임대주택을 양육 세대용으로 리폼하는 것을 촉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을 활용
 - ② 양육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영주택에 대한 우선입주, UR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저렴화 등으로 공적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
 - ③ 양육 세대 등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매력적인 기존 주택의 유통을 촉진하는 등 자가 취득을 지원
- (2) 세대 간 서로 도와가며 아동을 기를 수 있는 3세대 간 동거·근거리 거주의 촉진
- (3) 주거 가까이 양육 지원 시설 입지 유도 등 지역에서 아동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촉진

성과 지표

· 아동 양육 세대(18세 미만이 포함된 세대)의 유도주거면적수준달성율

[전국] 42%(2013년) → 50%(2025년)

[대도시권] 37%(2013년) → (2025년)

자료: 국토교통성(2006, 2016)에서 필자가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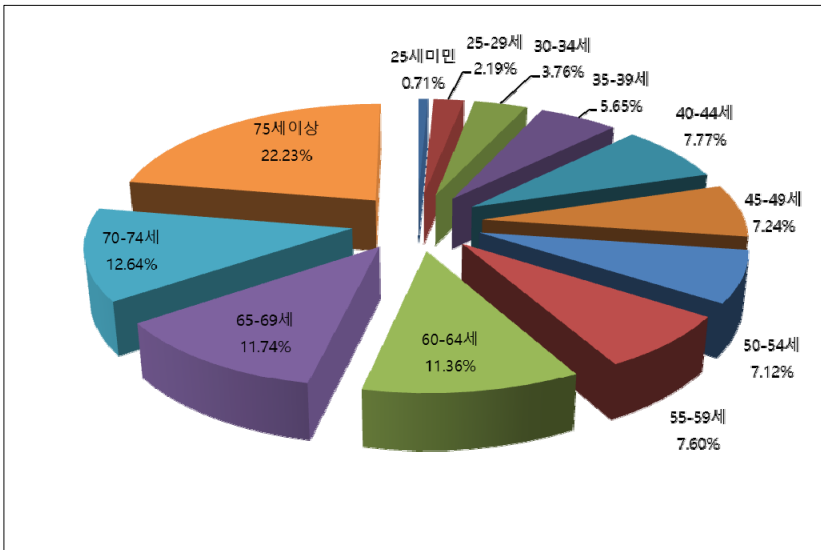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현 일본에서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계획이나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여기서의 청년은 어디까지나 결혼을 한 아동이 있는 세대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청년 주거 실태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으며 점차 안정된 주거를 확보해 나갈 확률이 높은 청년층이다. 청년 지원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청년층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단신 세대 청년은 이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나. 공영 주택 및 UR

1) 공영주택

2013년 현재 공영주택 거주 세대 중 주로 생계를 담당하는 자가 34세 이하인 비율은 6.66%이다. 반면 70대 이상은 34.87%를 차지한다. 다른 한편, 34세 이하인 자 중 공영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25세 미만이 0.85%, 25~29세 2.11%, 30~34세가 2.62%를 차지한다. 이 통계는 주로 생계를 담당하는 자의 통계이므로, 세대 내 청년이 아닌 단신 세대 혹은 가구를 형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수치이다. 이들의 주거에서 공영주택이라는 지원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1-2] 공영주택의 생계 책임자의 연령대별 분포



자료: 총무성 통계국 홈페이지에서 필자가 작성.

여기서 자주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것은 공영주택 입주 자격의 동거 가족 요건이었다.

공영주택의 입주 자격은 소득 기준과 가족 동거 기준이다. 2010년 “지역주권개혁의 추진을 꾀하기 위한 관계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1년 공포되고 이로 인해 공영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가족과의 동거 규정이 폐지되었다. 즉 청년 단신자의 입주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장애’나 ‘고령’, ‘가정폭력 피해자’ 외에 소득 범위의 재량을 부여하고 특별히 주거에 배려가 필요한 자 또한 각 지자체 등 사업 주체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공영주택의 대상 범위에 대한 지자체의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를 활용한 청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 정책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단신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면서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이라 기대되는 한편, 입주 신청자의 경쟁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며, 가족용으로 상정된 주택에 단신자가 입주할 가능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渡辺, 2011).

2) 도시재생기구(UR)

보통 UR이라고도 불리는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Urban Renaissance Agency)는 2004년 기존의 도시기반정비공단과 지역진흥정비공단의 지방도시개발정비부문이 통합되면서 창립되었다. UR이 담당하는 계층은 가족을 형성한 중견 노동자 층으로 대체로 UR 주택은 공영주택보다 넓으며 임대료는 시세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계약 시 부동산 수수료, 보증인, 입주 시 집주인에 지불하는 사례금(礼金)이 필요 없다는 이점이 있다. UR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전국에 약 75만 호이며,

입주민은 약 200만 명이다.

UR 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은 소득 기준만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매월 평균 수입액이 기준 월 수입액(월세의 4배 혹은 33만 엔, 월세가 20만 엔을 넘을 경우 40만 엔) 이상이거나, 기준 저축액이 월세의 100배인 경우이다 (UR 홈페이지). 상당한 소득 수준 혹은 통장 잔고가 있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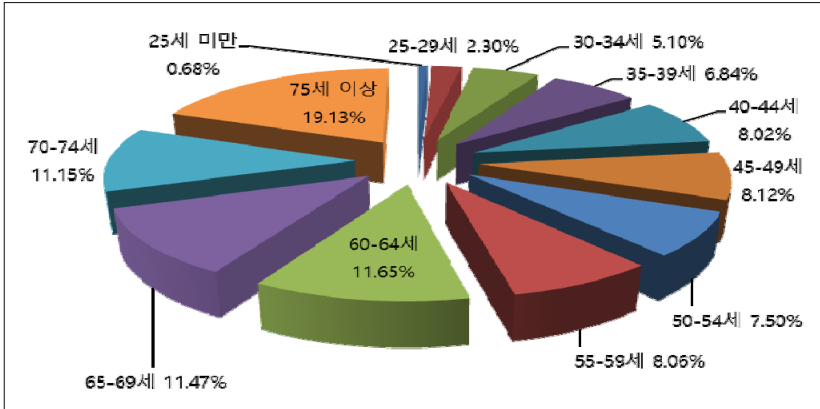
〈표 3-1-6〉 UR 입주 자격

세대		단신자	
월세	기준 월 수입액	월세	기준 월 수입액
82,500엔 미만	월 임대료 4배	62,500엔 미만	월 임대료 4배
82,500엔 이상 20만 엔 이하	33만 엔(고정액)	62,500엔 이상 20만 엔 미만	25만 엔(고정액)
20만 엔 이상	40만 엔(고정액)	20만 엔 이상	40만 엔(고정액)

자료: UR 홈페이지.

UR 중 34세 이하는 8.08%이다. 이 수치는 공영주택보다 약 2% 더 높은 비율이다. 또한 전체 34세 이하 중 UR 거주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세미만이 0.68%, 25~29세가 2.30%, 30~34세가 5.10%를 차지한다. 이 또한 공영주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UR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는 가족 세대를 형성한 청년층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림 3-1-3] UR 주택의 생계 책임자 연령 분포



자료: 총무성 통계국 홈페이지에서 필자가 작성.

UR에서는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하우스 셰어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우스 셰어링은 다음과 같은 입주자 및 계약 조건이 있다.

〈표 3-1-7〉 UR 하우스 셰어링 입주 관련 내용

- 입주자 조건
 - 입주자의 수는 원칙적으로 2명. 2명 이상도 입주 가능하나 거주 인원은 방 수가 상한이다.
 - 입주 후 새로운 입주자를 추가하거나 입주자를 교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계약 중 거주 인원 중 일부가 퇴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 계약 관련
 - 계약은 입주자 모두가 계약 명의자가 된다.
 - 계약상 책무는 모두 연대하여 책임진다.
 - 계약 명의자 중 1명을 대표로 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연락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와 취한다.
 - 임대료 및 관리비는 대표자 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지불된다.
- 소득 기준
 - 소득 기준은 앞서 제시된 기준 월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학생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

자료: UR 홈페이지.

기본적으로 UR의 임대료는 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 하우스 셰어링에 제시된 주거비는 높은 수준이다.

도쿄 등 대도시의 임대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하우스 셰어링 제도는 도심 내에 거주할 수 있다는 큰 장점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조건에 맞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함께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본인이나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없다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3) 지역우량임대주택

고령자 세대, 장애인 세대, 양육 세대 등 각 지역의 주거 안정에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세대에 제공하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조성금이나 임대료 감액에 대한 조성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래의 중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우량임대주택¹³⁾과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¹⁴⁾을 2007년 양육 세대나 고령자 세대 등 주거 안정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중점화한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¹⁵⁾로 통합하였으며, 다시 2011년에 자격 요건 등이 재편¹⁶⁾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의 주 대상은 주택 세이프티 법의 ‘주거 안정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세대’이며, 그 세대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고령자뿐 아니라 청년층도 포함되나 반드시 아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소

13) ‘특정우량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률’(1993년 제정)에 의함.

14) ‘고령자 주거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2001년 제정)에 의함.

15)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주택 세이프티 법)(2007년 제정)에 의함.

16) ‘고령자 주거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함.

득 분위는 원칙적으로 80% 이하로 상당히 넓은 편이다. 또한 동거 친척 요건 즉 단신 세대의 입주를 불가하는 조항도 본래 있었으나, 2011년 당시 없어졌다. 본 제도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3-1-8〉 지역우량임대주택 입주 조건

동거친척요건	없음
수입기준	소득 분위 80% 이하(소득: 487,000엔 이하)
세대 요건	① 고령자 세대 ② 장애인 등 세대 ③ 양육 세대 ④ 지방공공단체가 지방주택계획에서 정하는 세대
관리 기간	10년 이상

자료: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청년층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세대 요건 중 ‘④ 지방공공단체가 지방주택계획에서 정하는 세대’이다. 이것은 ‘배려가 필요한 세대’ 이외에 각 지역별 필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조항을 활용하여 청년층이나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례들은 대도시가 아닌 주로 지방 외곽의 지자체들이 그 지역 출신자의 U턴을 촉진하거나, 다른 지역 출신임에도 정착(I턴)을 촉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대도시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미진한 형편이다.

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제도

1) 생활보호에 의한 주택부조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최저생활비 이하인 사람들에게 총 8개의 부조¹⁷⁾가 하나주의 세트로서 부여되는 제도이다. 최저생활비에서 근로로 인한 수입이나 연금 등을 제한 액수가 보호비로서 지급된다. 2016년 현재 도쿄도에 거주하는 20세에서 40세 단신 세대의 경우, 생활부조로 86,130엔, 5세 아동 및 30대 부부로 이루어진 세대의 경우에는 158,380엔이 지급된다¹⁸⁾(이하, 2016년 거택기준적용세대 제1류 및 제2류 기준액에서 필자 계산).

한편, 이 생활부조 이외에 주거와 관련된 주택부조가 있다. 주택부조 기준은 본래 세대원 수에 의한 기준만이 있었으나, 2015년 주택부조 재검토 과정에서 그 기준이 세분화되었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주거 면적 기준이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2015년 7월 이후 도쿄도의 단신 세대의 경우 도쿄도는 6㎡ 이하는 38,000엔 이내, 6~10㎡ 이하는 43,000엔 이내, 10~15㎡ 이하는 48,000엔 이내, 15㎡ 초과는 53,700엔 이내이다. 오사카시는 각각 28,000엔 이내, 32,000엔 이내, 36,000엔 이내이다(도쿄도 및 오사카시 홈페이지). 이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비가 지급된다. 이렇게 주택부조에 면적을 추가하고 그 액수를 낮춘 것은 지나치게 좁은 면적의 집에 거주하면서도, 월세를 주택부조 상한액까지 받는 이른바 ‘빈곤비즈니스’의 만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保護

17) 구체적으로는 ① 생활부조, ② 주택부조, ③ 교육부조, ④ 의료부조, ⑤ 개호부조, ⑥ 출산부조, ⑦ 생업부조, ⑧ 장제부조이다.

18) 28년도의 거주기준적용 세대의 제1류 및 제1류의 기준액 참조. 이 계산법은 노대명 외(2014, p.182)에도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기준액은 변화되었다.

課2014). 주택부조를 대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할 정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다.

면적 기준이 없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그 정도를 비교하기 어려우나, 2016년 단신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쿄가 서울시의 약 2.7배 정도 더 높다. 여기서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일단 주택부조는 매우 높은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단은 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어 주택급부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활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요건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생활보호는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며 ‘세대원 전원’이 그 이용할 수 있는 자산, 능력 기타 모든 것’을 그 최저한도 생활 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전제이며,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한다고 규정된다.

여기서 세대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는 ‘동일 거주’, 다른 하나는 ‘동일 생계’이다. 즉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요구되는 것¹⁹⁾이다. 하지만 함께 살고 있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일 세대라 할지라도 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 등은 세대 분리로서 생활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현재의 해석으로는 청년층은 부모와 동일 주거 상태가 아니라면 별도의 세대로서 독립된 상태로 생활보호의 대상이 되며, 동일 주거라 할지라도 생계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별도의 세대로서 인정될 수 있다.

19) 이에 7가지 요건을 내외로 내걸고 있는데 (1) 타지에 일하러 간 경우 (2) 아동이 의무교육을 위해 다른 곳에서 기숙하고 있는 경우 (3) 부부간 혹은 부모와 미성년 아동에 대한 관계가 있는 자가 취로를 위해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4) 행상 혹은 근무 관계상, 아동을 지인 등에 맡기고 그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경우 (5) 병 치료를 위해 병원 등에 입원 혹은 입소하고 있는 경우 (6) 직업능력개발학교, 국립광명기숙사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7) 그 외 (1)에서 (6) 까지 중 한 가지 경우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또한 청년층과 가장 주요하게 관련된 것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기노시타는 1)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청년의 생활보호신청이 거부당할 수 없으며, 2) 부모와 청년 간의 부양의 정도는 ‘사회 통념상 부모의 일정 정도의 생활에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여야 하며, 3) 부양의무의 친족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는 한에서 규정되어야 하며, 4) 결국, 부모와 청년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에 의해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고 있다(木下, 2008: 153).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부양의무를 이유로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 주거상실불안정취로자에 대한 대책

후생노동성은 2009년도 예산 요구에서 ‘넷 카페 난민 등’에 대한 주택 확보의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았다. ‘챌린지 넷’(주거상실불안정취로자지원센터) 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 임대주택 입주 초기 비용의 급부(보증금·사례금²⁰⁾, 중개 수수료·이사 전 임대료 등/상한 40만 엔, 이자 3%, 그 외 취직 활동비, 생활비 등/상한 20만 엔, 이자 3%), ② 임대주택 입주 보증(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집주인에 대해 보증) 등이며 그 외에 취업, 주거 관련 각종 상담 업무 및 직업 소개를 수행할 것이 계획되었다. 이것은 ‘저수입이기 때문에 아파트 등 입주 초기 비용을 확보할 수 없고 주거를 확보할 수 없으며 거꾸로 주소가 없으므로 안정적인 취로처나 수입을 확보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자가 많은 상황에

20) 사례금은 레이킹(礼金)이라고 하는데, 입주 시 보증금과 함께 집주인에게 지불한다. 지역과 주택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월세의 2배에서 3배 정도이다. 보증금과 다르게 퇴거할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

있는’ 가운데, ‘취로·생활주택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을 모델로서 실시’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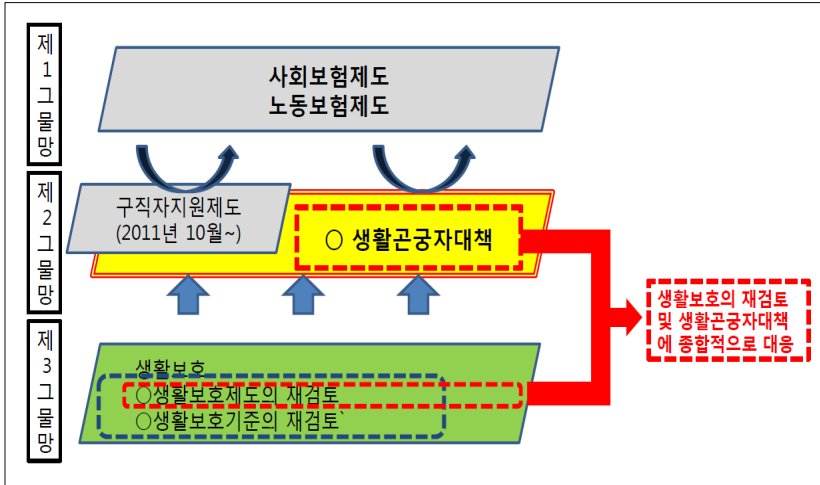
3) 생활곤궁자지원제도에 의한 주거확보급부금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은 2012년 정부가 설치한 ‘생활곤궁자 생활지원의 방식에 관한 특별부회’에서 2013년 보고서를 제출한 뒤, 2015년 생활보호법 개정과 함께 제정되었다.

이 두 법의 목적의 차이는 바로 대상자에 있다. 생활보호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법 제6조 제2항)인 반면,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의 대상자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저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자(법 제2조 제1항)’, ‘요보호자는 아니나, 생활곤궁자’인 것이다. 즉, 생활보호를 통해 국민의 최저한도 생활을 보장하지만, 그 상황에 이르기 전에 또 다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의 목적인 것이다.

취업 중인 자들은 사회보험으로, 노동할 수 없는 자들은 생활보호로 대응하는데, 사회적 안전망의 층층적인 구축을 통해 그 간격을 메우면서 생활보호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리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4] 생활보호의 재검토 및 생활곤궁자 대책의 위상



자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주거확보급여금은 이전의 리만쇼크로 인한 실업 대책 중 하나로 2009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고 있던 ‘주택수당긴급특별조치사업’, 이어서 2014년 10월까지 이루어졌던 ‘긴급고용창출사업 임시특례기금’에 의한 ‘이직자 주택지원급여사업’(2014년도 말까지 진행)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전의 ‘이직자주택지원급여사업’은 이직을 전후하여 주거를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에 따라 1달 1인당 4만 엔에서 6만 엔, 최대 6개월간 지원하였던 사업이다. 또한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6개월 이상 고용이 정해진 주당 노동 시간 20시간 이상인 자여야 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제도의 지원 건수는 총 120,097건이었으며, 총 55,568명이 상용직(무기 고용이거나 6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이 정해진 상태의 취업)으로 고용되었다. 이 사업이 생활곤궁자지원제도 내로 포함되면서 ‘주거확보급여금’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9〉 주거확보급부금의 주요 내용

■ 지급 대상자 - 신청일에 65세 미만이며 이직 후 2년 이내인 자 - 이직 등 전에 세대 생계를 주로 책임진 자 - 헬로우 워크(공공직업소개소)에 구직 신청을 하고 있는 자 - 국가의 고용 정책에 의한 급부 등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지급 요건 1. 수입 요건 - 신청 월 세대 수입 한계액이 기준액(시정촌 주민세 균등 분이 비과세인 수입액의 1/12) + 임대료액 이하일 것. - 임대료는 주택부조특별기준액이 상한 · (도쿄도 1급지인 경우) 단신 세대: 13.8만 엔, 2인 세대: 19.4만 엔, 3인 세대: 24.1만 엔 2. 자산 요건 - 신청시 세대 저축금 합계액이 기준액 x 6 (다만 100만 엔을 넘지 않은 금액) 이하일 것 · (도쿄도 1급지인 경우) 단신 세대: 50.4만 엔, 2인 세대: 78만 엔, 3인 세대: 100만 엔 3. 취직 활동 요건 - 헬로우 워크에서 월 2회 이상 구직 상담, 지자체에서 월 4회 이상 면접 지원 등 ■ 지원 기간 - 원칙 3개월(취업 활동을 성실히 행하는 경우 3개월 연장가능(최장 9개월까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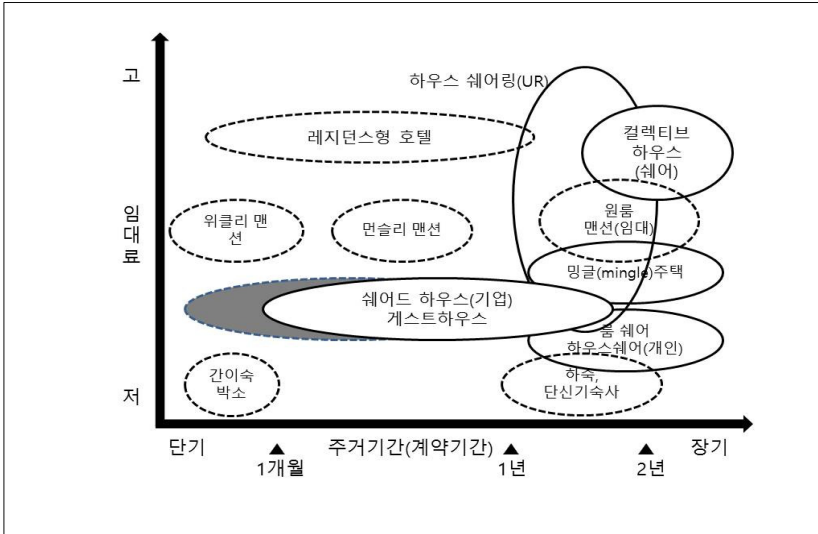
자료: 후생노동성(2009).

4. 셰어 하우스: 민간에 의한 새로운 가능성 및 한계

최근 일본에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셰어 하우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셰어 하우스는 앞서 살펴본 UR 하우스 셰어링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도 언론 등을 통하여 소개된 바 있는데, 단신자의 주거 선택지의 하나로써 확산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단신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 형태를 임대료와 거주 기간(계약 기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셰어형 주택은 호텔이 아니라 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통상 한 달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태에서는 이 그림의 게스트 하우스 회색 부분처럼 한 달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도 해약이라는 형태로 해외로부터의 관광객 등을 하숙시키는 경우도 있다. 일반 임대 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호텔이나 주 계약 맨션, 월 계약 맨션, 게스트 하우스 등은 거주기간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림 3-1-5] 일본의 단신자 주거 유형



출처: 丁志映(2009, p. 36).

주거를 셰어하는 형태는 다양한데, 정지영(丁志映, 2009)에 따르면 ‘룸 셰어’, ‘하우스 셰어’, ‘게스트하우스’, mingle로 나눌 수 있다. ‘룸셰어’란 주로 기존의 맨션이나 원룸 등의 집단 주택 중 한 호를 빌려서 비혈연 관계의 사람들이 복수로 동거하는 주거이다. 룸 셰어와 같은 공간 구성이라도 복합 주거가 아니라 기존의 일반 주택의 경우 ‘하우스 셰어’라 불린다. 또한 ‘게스트 하우스’는 주로 업자가 전문적으로 경영·관리하며, 가구, 가전, 일용 비품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mingle’이란 2DK에서 2명이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이다. 룸셰어와 마찬가지로 각자가 개별실을 사용하며 DK나 욕실, 화장실 등을 공동 이용한다.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이다.

〈표 3-1-10〉 일본의 주거 세어 유형

유형		특징				
룸세어		맨션이나 원룸의 연립주택의 1실을 빌려서, 하나의 가호에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동거를 하는 주거. 개별실이 있으며, 하나의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LDK나 욕실, 화장실 등을 공동 이용한다. 공적 기관으로서는 UR이 2004년 10월부터 '하우스 셰어링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 세대형 주택을 단신자들에게도 대여하고 있다.				
하우스 세어		룸세어와 마찬가지로 공간 구성이나 이용 등을 보이지만, 일반 주택이며 하우스 세어, 셰어드 하우스, 세어 하우스라고 부른다.				
게스트 하우스		주로 민간업자가 전문적으로 경영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가구, 가전,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품을 설비하고 있다. 또 공동 공간의 청결 등은 개인 관리가 아닌 경우가 많다. 셰어드 하우스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mingle		친구 2명(같은 성별)이 반공동생활을 하는 거주. 오사카 등의 간사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개별실은 열쇠가 있고 화장실, 욕실 등은 공동 이용한다. 광열비나 공동 이용하는 비품 등은 거주자끼리 반씩 부담한다.				
		구분	룸세어	하우스 세어	mingle	게스트 하우스
이용 주택	기존	연립주택의 한 호	○	×	×	×
		단독주택	×	○	×	○
		사택·기숙사	×	×	×	○
		주상 복합 빌딩	×	×	×	○
	신축	세어 주거용 주택	×	×	○	×
정원 규모			약2~4인	약4~8인	2인	약5~120인 (사택·기숙사의 규모에 따라 좌우)
임대료 추정가 (도쿄도 이토바시구의 예)			약4~5만 엔	약45~55만 엔	약6~7만 엔	약5~6만 엔
도미토리 임대료 추정가			도미토리 없음			약3~3.5만 엔
계약 기간			1년간 또는 2년간			1개월
공동 공간 비품			지참			부속
공동 공간 관리			개인 관리			사업자 관리 (일부 개인 관리 있음)

일반사단법인 일본 세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 연맹의 2014년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연말 현재 전국의 세어 하우스용으로 운영 중인 주택 수는 2,744건이며, 이 중 3/4에 해당하는 2,057건이 도쿄도 내에 입지되어 있다. 또한 도쿄도 내에서도 90% 이상이 도쿄 시내 23구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에 따르면 주요 원룸 사업자는 전국에 약 600개소가 활동 중이며, 2006년 이후 신규 참가 사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사업자 수는 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래 20배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일본 세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 연맹, 2014).

한편, 세어 하우스가 빈곤한 단신자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다양한 문제점들이 터져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2013년 6월 10일 국토교통성 주택국 주택지도과의 “다수인이 거주하면서도 화재예방 관계 규정 등 건축기준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축물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화재 대비 관련 비상 대피 통로, 벽 내화성 조건 등이 예전에 비해 훨씬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일반 주거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조치들은 집 자체를 생활하기에 적절치 않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빈곤 비즈니스 예방에는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일본 세어하우스·게스트 연맹은 세어 하우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회원 사업자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 일본의 세어 하우스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알 수 있게 해 준다(일본 세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 연맹 2013b).

〈표 3-1-11〉 일본 세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 연맹의 가이드라인

① 각 세어 하우스 허용 인수에 대하여 - 향후 연맹은 각 세어 하우스의 최대 허용 인수 $\times 9.84\text{㎡}$가 바닥 연면적 이하인 것을 권장기준으로 한다. 권장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세어 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연맹 회원은 최대 허용 인수 $\times 7.38\text{㎡}$가 바닥 연면적 이하인 것을 최저 기준으로 하며 향후 5년 이내 연맹장려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검토, 대응해 가기로 한다.
② 건물 용도에 대하여 - 각 세어 하우스 사업자가 운영하는 건물의 건축확인 신청을 완료한 용도는 거주관련 건물인 ‘단독주택 거주’, ‘나가야(복수의 주거가 수평방향으로 이어져있고 벽을 공유하는 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하숙’ 중 어느 것 하나로 한다. 현재 이에 적합하지 않은 주거형태(예를 들어 건물 용도가 사무소, 창고, 자동차차고 등)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용도를 신속하게 변경하도록 한다.
③ 입주자와의 계약에 대하여 - 입주자와의 계약은 보통 건물 임차 계약 혹은 정기건물임차계약으로 한다.
④ 맨션을 사용하여 세어 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 - 구분소유건물(맨션이나 단지 등)을 세어 하우스로 전용하는 경우, 관리조합의 계약을 준수하며 또 그 허락을 얻을 것.
⑤ 각 세어 하우스 데이터 관리에 대하여 - 운영하는 세어 하우스 건물주소 및 방 개수, 연바닥 면적에 관한 데이터를 연맹에서 수집하고 회원전용 홈페이지 내에 보존할 것.
⑥ 화재예방 관리자 자격 취득 - 세어 하우스 관리자는 조직 내에 최소 1명은 화재예방 관리자 자격을 보유할 것.
⑦ 화재예방 대책의 주지 철저 - 입주자에 대해 화재예방 대책, 피난구, 피난방법 등을 주지시킬 것(매뉴얼 등을 작성 혹은 정기적인 피난 훈련 등)

자료: 일본 세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 연맹(2013).

위에 서술된 것처럼 용도나 입주자 계약, 화재예방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세어 하우스를 주택, 즉 주거 공간으로 볼 것인지, 다수 사람들이 거주는 하지만 주거가 아닌 특별한 ‘시설’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논점으로 남을 것 같다.

5. 시사점

일본도 최근에 생애 주기 및 주거 상향 이동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증가하고, 그 원인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 흐름과 사회운동 경향이 새롭게 등장하고 그 실태가 밝혀지면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이지 않으나, 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그 중심에는 고용 불안정과 아울러 극단적인 주거 빈곤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 주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의 청년 주거 실태 및 지원 정책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주거를 고민할 때 세대 내 단신자 청년층에 대한 일본의 주목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청년층 문제는 가족 내 문제에서 시작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그 영향으로 청년 단독 세대 실태 및 지원책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 비해 다소 낮은 감이 있으나, 가족 내에서 부모의 부양을 받으면서 독립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청년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다. 한국의 청년 주거 문제에서 부모의 부양을 받는 세대 내 단신 청년층은 매우 한정적으로만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이들이 청년 주거 정책의 대상자인가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대 내 청년에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실제 청년 주거 문제를 포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일부 가시화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청년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청년 주거 문제의 객관적인 접근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관점에서도, 잠재적 수요자까지 포괄하는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는 단기적이고 응급 대응적인 협소한 정책 집행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셋째, 다른 주거 정책에서 배제된 계층과의 공통적 관점을 제

공해 줄 수 있다.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등은 세대를 기준으로 한 주거 통계나 정책에서 가시화된 단독 세대가 되지 않으면 정책 대상으로 파악되기 힘들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유사하게 비가시화되기 쉬운 잠재적 정책 수요자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연계, 발전시켜 더욱 포괄적인 주거 정책의 가능성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비가시화 된 정책 수요자에 대한 주거 요건 파악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한 차례 후생노동성에서 사회보장·인구문제기본조사의 하나로 ‘세대 내 단신자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도 세대 내 18세 이상의 미혼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한다면 다층적인 청년 주거 실태 파악을 통해 청년 주거 정책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년 단독 세대에 대한 주거 정책은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적인데, 이것은 뿌리 깊은 자기책임론에 근거한 잔여적 주거 정책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청년에게까지 제공하는 데에 대한 형평성 문제의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공영주택에서 청년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요건 중 하나인 단독 세대 거주 금지 조항이 폐지되었다. 또한 소득 기준은 정부의 참고 기준이 제시될 뿐,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따라서 빈곤한 단신 청년이 공공 주거 정책에 포섭될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신 청년의 공영주택 입주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매우 제한적이며, 장애인, 노인 등 일부 계층이나 양육 세대에 그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도 법적 조항에서는 청년 세대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할 능력의 유무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이로 인해 실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청년이 적지 않으며, 따라서 주택급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청년 지원책이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청

년에게 주거를 제공해야 할 근거를 단순히 청년의 주거 형편이 어렵다는 데에서 찾는 것을 넘어설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과제는 일본과 한국 양 국가에 다양화된 라이프 코스에서 청년이라는 연령대의 생애 주기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년 시기 안정된 일자리에 진입하여 장년까지 저축을 통해 자신의 집을 마련한다는 라이프 코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가고 있는 현 시기에, 상정되어 있는 라이프 코스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혹은 라이프 코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보다 확대되고 유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청년 주거 해결의 가능성으로 일본에서 공영주택의 자격 완화 및 지자체에 대한 그 대상자 자격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한 것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물론 이 제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거난이 심각한 대도시가 아닌, 젊은 층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농촌 지역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곧바로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청년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 중 누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는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고, 구체적 사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계층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일부 부여하여,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자율권이 적절히 결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청년과 같이 그동안 공공주택 정책에서 제외되어온 계층을 제도 내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최근 한국에서 각광받는 세어 하우스 문제이다. 한국에는 일본의 세어 하우스가 매우 대안적인 주거 형태인 것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본문에서 고찰한 바를 바탕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세어 하우스는 ‘대안적’ 주거 형태라기보다는 하나의 ‘주택사업’으로서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세어 하우스는 어떤 대안이

있는 주택 정책이라기 보다는, 심각한 주거비 문제로 인해 수요에 대응한 '주택시장의 반응'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UR 사업을 제외하면 공공의 세어 하우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세어 하우스라 칭하는 주거 형태는 다양한데, 넷 카페나 창고를 개조하거나, 보통의 맨션을 다시 빌리는 형태 등, 매우 열악한 환경도 존재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국의 고시원과 같이 매우 좁은 방에 화장실과 부엌을 공유하는 형태도 세어 하우스라 불리기도 한다. 셋째, 이 다양한 세어 하우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주거의 형태들, 예를 들어 노인 그룹홈이나, 한국의 고시원, 기숙사 등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는 과연 주택이란 무엇인가, 혹은 다양한 생활의 공간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하며, 어떤 사항을 의무화할 것인가 라는 점과 맞닿아 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주거 형태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논쟁과 업계의 반응, 법률의 변화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은, 한국 주거 형태의 법적 규정 및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영국의 청년 주거 문제 및 지원 정책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하여 많은 선진국 및 한국에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영국은 특히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으며 이에 따른 청년층의 빈곤율은 최근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1980년대부터 시행된 주택시장의 민영화에 따른 주택 가격 인상으로 청년층의 자가 소유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월세 주택 의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 부분의 임금이(약 50~60%) 주택 렌트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청년들이 실업을 겪을 시에는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청년들이 겪은 이런 주택 빈곤 문제는 현재 한국의 청년 빈곤 주택 문제와 많이 닮아있으며 영국의 청년층 주거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영국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의 청년 주거 빈곤 지원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영국 청년층의 빈곤과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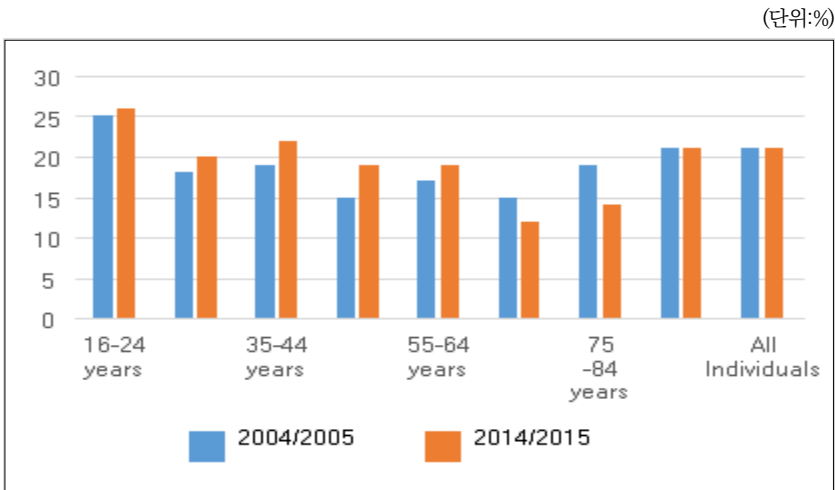
2000년 말에 시작된 국제 경제위기로 인하여 영국의 청년층은 극심한 취업난과 함께 빠르게 증가된 실업,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다른 연령층의 노동자들보다 경제력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16세에서 24세 기준 영국 청년층의 실업률은 2008년 15%에서 2012년 20%까지 증가하였고, 이는 영국의 중장년층(24~65세) 노동 인구 실업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

2015). 또한 영국은 G8 국가들 중 청년 실업률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고 OECD 국가 대비 현재 스페인과 그리스 다음 3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rowley et al., 2013). 이런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영국 사회에 또 하나의 특정한 빈곤 집단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많은 영국 사회학자들은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이 경기 변동에 더 영향을 쉽게 받고,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고용 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직업훈련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Crowley and Cominetti, 2014; Staneva et al., 2015 e.g.). 또한 경제 구조 및 노동시장의 구조가 1980~90년대를 거치며 제조업 노동시장 체제에서 서비스시장 체제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직업군들이 많이 사라졌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정책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 실업률과 함께 영국 청년들의 빈곤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 및 주변 유럽 국가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빈곤의 개념은 개인 가구의 소득이 그 나라의 중위소득의 60 % 이하를 빈곤으로 정의하는 유사상대 빈곤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영국의 9백만 명의 청년 인구 중(16~24세 기준) 약 26%에 달하는 인구가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영국 정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이 발표했다. [그림 3-2-1]을 보면 다른 중장년층의 그룹들보다 청년층의 빈곤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New Policy Institute 의 ‘주거와 빈곤의 상관관계’ 보고서에 의하면 740,000명의 청년층이 빈곤의 차상위 계층(중위소득의 60% 이상 70% 이하)에 속한다고 발표했다(New Policy Institute, 2015). 즉,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

면 약 30%에 해당하는 청년이 빈곤선 밑에 있거나 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다. 또한 국제 비교에 있어서도 남부 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 스페인(38.7%), 그리스(42%)보다는 청년 빈곤율이 낮지만 다른 서유럽 국가들, 독일(23.9%), 프랑스(24.2%) 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EUROSTAT, 2014).

[그림 3-2-1] 영국의 연령별 빈곤율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UK(2016).

2. 영국 청년층의 주거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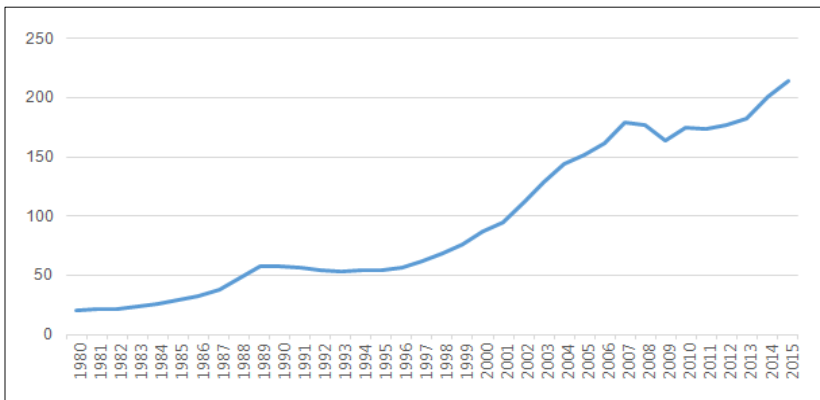
영국 청년층의 급격한 실업률과 빈곤율의 증가와 함께 영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에 따른 청년 주거 빈곤 문제이다. 영국의 주택시장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주택 민영화 정책에 따라 공공사회주택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금융위기 발생이전인 2007년 말까지 영국의 실질주택 가격은 약 1.5배

상승하였다(André, 2011)(그림 3-2-2 참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주택 가격은, 특히 런던과 영국의 동남부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Hilber, 2015). 또한 최근 새로 지어진 영국 주택들의 실면적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Sweden, 2005). 새로 지어진 주택들의 규모는 영국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독일이나 네덜란드보다 약 38~4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분석에 의하면 영국의 높은 주택 가격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 말까지의 경제호황과 더불어 개인의 소득 증가와 주택 모기지 상품들의 실질 이자율이 감소하여 자가 소유 수요 측면이 증가한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매우 엄격한 토지 이용 계획 제도로 인해 부족한 공급량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보다 쉬운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지난 20년간 급격히 발달하였고 임대료(월세) 수준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실제로 영국의 주택 상승률은 지난 4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ilber, 2015).

이런 변화로 인하여 가장 영향을 받는 그룹은 바로 청년층이었다. 청년층(16-24세 기준)의 주택 자가 소유율은 1991년에 36%에서 2013/14년 9%로 낮아졌으며(그림 3-2-3 참조) 임대주택 의존율은 점점 높아져 2001/02년 43%에서 2012/13년 기준 67.7%에 달하고 있다(ONS, 2016). 또한 가중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하여 청년층에서는 다른 임대인들과 주거 공간을 같이 쓰는 형태인 셰어 하우스가 보편적인 주거 독립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주택 임대비는 2010년 기준, 민간 주택 임차인의 약 4분의 1이 월세로 가구소득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André, 2011).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들은 부모로부터 늦게 독립하거나 조기에 독립을 한 경우에

도 월세비 부담으로 인하여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청년들의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장기적인 저축을 통한 주택 구입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Rugg,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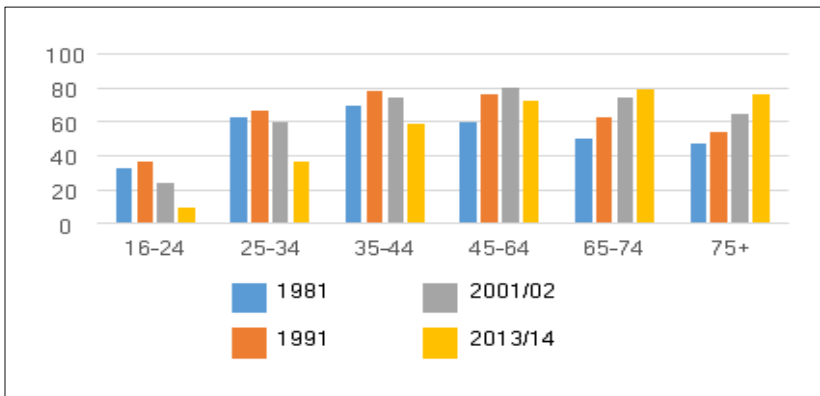
[그림 3-2-2] 영국의 주택 가격 인덱스(1980~2015)



자료: 영국 자료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5.

[그림 3-2-3] 연령에 따른 잉글랜드 자가 주택 소유율(1981~2014)

(단위: %)



자료: 영국 주택 조사(English Housing Survey, EHS). 2013/2014.

이러한 주택시장의 구조적 상황이 청년 주거 빈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연구와 관련 Rugg(2010)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안에서 불안정한 지위와 고용, 임금 상태,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시장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청년층에 대한 차별들이 맞물리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현재 영국의 청년 특히 18세에서 20세 사이 청년들의 최저임금은 25세 이상의 성인들보다는 시간당 약 2파운드 적게 책정되어 있다(2016년 현재 25세 이상은 7.2파운드, 21~24세 6.95파운드, 18~20세는 5.5파운드). 청년들의 나이별로 최저임금을 규정해 놓은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근로를 하더라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 청년 세대들은 가족들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경제적 도움은 이제 그들이 독립을 하는 데 있어 거의 필수적이 되고 있다. 만약 가족들의 도움이 없다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젊은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독립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주택시장 정보와 지식들이 필요하다. 보통 어린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주거 독립을 위해서 부모나 다른 성인 가족 구성원들의 조언이나 권고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반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은 완전한 주거 독립과 주거 빈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셋째로, 주택 소유자의 입장에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청년층을 임대인으로 선호하지 않는 현상에 있다. 이는 청년들이 임대인으로 들어올 경우 다른 중장년층 세대보다 집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쓰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과 함께 그들의 재정적 불안정 상태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풀타임 대학생들이 주택시장에서 겪고 있는 차별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다(예: Susilawati and Wong, 2014).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함께 맞물려 청년 세대들이 주거 독립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00년대 말 급증한 청년 실업률은 청년 세대들의 주거 빈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캠브리지 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내 25세 미만 청년 노숙자는 90,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Clarke et al., 2015). 이는 2010년 기준 약 50,000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더구나 약 57%의 청년 노숙자는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 NEET)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가 실업 문제를 비롯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크게 관련이 있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3. 영국 청년층의 주거 문제의 사회적 결과

이렇듯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가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악화시키고 사회병리 현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영향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높은 주택 가격 수준과 과도한 월세는 특히 청년층으로 하여금 부모로부터의 독립 시기를 늦추고 있다. 2011년 기준 약 3백만 명의 청년들이(20~34세)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1997년에 비해 약 50만 명(약 20%)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ONS, 2012). 부모로부터의 늦은 독립은 청년들의 잠재적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그들의 사회생활과 삶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밝혀졌다(Pennington et al., 2012). 다시 말해, 청년층에게 안정되고 독립된 주거 공간은 성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청년들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높은 실업률은 청년가구들의 재정적 불안정 상태로 이어지면서 빚을 늘리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경제적 통제력과 독립성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Shelter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16%의 청년층(130,000명 이상)이 월세를 낼 때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이자율이 높게 적용되는 월급일 대출을 쓰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임대료를 감당한다고 밝혔다(Shelter, 2012b).

셋째로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주택 가용성 부족 현상은 청년층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악화시켜 독자적인 가구 형성의 시기를 연기시킬 수 있다. 비록 성인 자녀 가구 형성의 지연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가용 주택의 부족과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Bramley 외 4명의 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에는 지난 10년간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의 가구 형성 수가 가용주택의 부족과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Bramley et al., 2010).

4. 영국 청년층의 주거 지원 정책

영국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 빈곤 문제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노숙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난 약 20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정권을 잡았던 노동당 정부는 중앙 정부 산하의 거리 노숙자 대책반을 설립, 충분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체화시켰다. 하지만 2008년의 국제 경제위기와 함께 새로 출범한 연합 정부는 국가 재정안정을 위하여 사회복지 지출을 감소시켰고(welfare reform

2012) 이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정책까지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보다 포괄적인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노력하였다. 이 절에서는 최근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주거, 주택 정책과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계점과 시사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가. 영국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1) 16~17세 청년들을 위한 주거 우선 제공 정책

2002년부터 노숙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지방 정부와의 공동 노력으로 16~17세의 청년들 중, 부모로부터 독립하였으나 주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여 노숙자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경우, 주거 공간이나 주택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가족들의 지원이 없는 경우 16~17세의 청년층이 주거 빈곤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보고, 지방 정부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주거 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청년 노숙자에 비해 불충분한 주택 상황으로 인하여 지방 정부의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B&B(Bed and Breakfast) 게스트 하우스나 어린 청년들이 많이 묵고 있는 공동주택에 묵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16~17세의 어린 청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이 주거 공간에 묵고 있는 다른 노숙자들에게 괴롭힘이나 협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점들은 부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Heath, 2008).

2) 주거급여

① 35세 이하 싱글 청년층을 위한 주거급여

: 싱글룸 렌트 정책(Single Room Rent Policy)

1980년대부터 시작된 주택 민영화정책으로 공공주택(social housing)의 퇴조 경향은 최근 20년 사이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영국의 주거 정책들이 주택을 직접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주택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바뀌는 흐름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 영국의 주거급여 시스템은 우선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로 한정된다. 즉, 공공주택, 비영리 협동조합 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주거급여의 대상자는 보통 살 주택이 없거나 실업으로 인하여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 또는 저소득 계층일 경우로 개인에게 지원되는 복지 수당 중 하나이다. 특히 1996년부터 시작된 청년층을 위한 주거급여인 싱글룸 렌트 정책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량의 부족으로 시작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André, 2011). 25세 이하의 독신인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로 시작된 싱글룸 렌트 정책은 지방 정부가 그 지역의 주택 임대료를 감안하여 화장실, 부엌, 거실이 갖추어져 있는 셰어 하우스의 싱글룸 임대료 적정선을 정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까지만 주거급여로 청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정책으로 영국 정부는 높아지고 있는 민영화 주택 임대료를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사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높은 주거급여를 막고자 했다(Heath, 2008). 즉, 지방 정부가 책정한 상한선의 주거급여보다 더 높은 가격의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이에 상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정책은 최

근 2012년 35세의 싱글인 청년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Berrington and Stone, 2014).

하지만 청년층을 위한 싱글룸 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첫째로, 지방 정부에서 정한 주거급여 선은 실제 임대주택 시장의 월세 임대료보다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Heath, 2008). 2010년 연합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주거급여의 개혁을 단행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에서 나타났다. 기존 영국의 주거급여는 시장 임대료의 평균치 수준으로 제공했지만 2012년부터 시장 임대료의 30%로 주거급여의 지원 수준을 낮춘다는 방안이다(Tunstall et al., 2013). 실제로 주거급여와 임대주택 시장의 월세 임대료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2배 정도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Shelter, 2012a) 주거급여 신청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실제 주택임대시장의 임대료 수준에 따른 주거급여 수준의 적정한 변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주거급여 수준에 맞는 임대주택들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민영주택 소유주들이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들을 그들의 세입자로 받고 싶지 않은 상황도 정책의 적절성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청년 세입자들이 중장년층의 세입자에 비해 신뢰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이런 사회현상은 청년 세대의 주거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점점 늘고 있는 청년 노숙자의 수는 이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셋째로, 싱글룸 정책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그들의 의지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 강제적으로 셰어 하우스에 주거하도록 하고 있다. 셰어 하우스는 국가의 주거급여 지출을 낮추고 청년들끼리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독립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과 주거 공간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어린 청년층들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주거 독립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을 위한 보다 다양한 주거급여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② 청년 가정층을 위한 주거급여

청년 세입자가 가족이 있을 경우는 가족원의 수와 구성원에 따라 주거급여의 수준이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배우자의 임금이 16,000파운드 이하일 경우 그리고 자산이 6,000파운드 이하일 경우에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주거급여가 제공된다. 또한 영국은 지역별로 주택임대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방 정부에서 정한 주거급여 상한선(시장 임대료 수준의 30%)에 따라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 정부가 정한 주택급여 상한선과 실제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주택 임대료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약 67%의 임차인이 자신이 내야 할 주택 임대료보다 낮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Beatty et al., 2012).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거급여 신청자들이 빈곤 위험에 처해있거나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etty et al.(2012)은 실제로 주거급여의 부족으로 인하여 42%의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필수 가정 물품 소비에서 이 차액을 충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주거급여가 빈곤과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빈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Tunstall et al., 2013).

(표 3-2-1) 영국의 연령대별 주택급여 수급 상황(2015년)

연령	계	가족 형태							
		1인가구			한부모가정			무자녀 부부	유자녀 부부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전 연령	4,681,714	2,527,753	1,187,802	1,325,542	1,146,461	57,639	1,078,162	442,609	564,896
25세 미만	242,669	95,109	51,515	42,988	122,963	1,077	120,869	6,586	18,005
25 ~ 34	801,599	195,520	127,346	66,851	436,186	9,649	422,498	17,219	152,673
35 ~ 44	873,291	269,689	175,531	92,405	368,153	20,129	344,393	18,149	217,300
45 ~ 49	445,582	219,631	122,097	96,068	124,605	11,123	112,325	18,854	82,480
50 ~ 54	406,330	260,377	131,949	126,709	61,814	7,887	53,374	33,143	50,995
55 ~ 59	337,307	246,624	118,781	126,279	21,438	4,143	17,115	44,740	24,500
60 ~ 64	311,053	239,198	112,587	125,168	6,355	1,900	4,411	55,279	10,218
65 +	1,263,824	1,001,556	347,982	649,061	4,919	1,731	3,159	248,631	8,716

(단위: 가구)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Housing Benefit caseload statistics,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housing-benefit-caseload-statistics>

3) 청년층을 위한 주택 마련 정책(Affordable Home Ownership scheme)

① 저렴한 공공주택(Affordable Home Programme)

주택시장의 안정을 촉진하고 주택 가용성 부족 현상을 진화시키기 위하여 2010년 연합 정부는 Affordable Home Programme을 통하여 2014-2015년까지 새로운 공공주택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 150,000호를 새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HM Treasury, 2010).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어진 주택들은 공공주택의 가격이나 월세보다는 높지만 민영주택시장의 가격이나 임대료보다는 저렴하게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률을 낮추고자 하였다. 영국 정부는 또한 이 사업을 통하여 청년 세대의 주택 소유율을 늘리고 이들의 사회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2012년 복지개혁을 통하여 이 사업에 할당된 기금이 축소되면서 위기를 맞았으며, 최종 사업 추진권이 지방자치정부로 넘겨져 여러 학자들이 이로 인하여 지역적인 주거 불평등을 더 낳게 될 것이라 우려를 표명하였다(Tunstall et al., 2013; Pennington et al., 2012). 결과적으로 Affordable Homes Programme은 2014년 9월 철회되었고 계획된 사업의 약 3분의 1에 미치는 68,553호의 주택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되었다. Gibbs et al.(2013)은 정부가 공공주택의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아닌 민간부문의 참여 (특히 주택 개발업자들)를 고취시킴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였다.

② 생애 첫 공공주택(Starter Home Programme)

2015년에는 40세 이하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first-time buyers)들에 한하여 주택시장 가격의 20%를 할인받아서 살 수 있는 ‘starter homes’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하여 100,000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 하였다(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6). 이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숫자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든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모기지 상품들의 규제 강화와 이자 세율의 인상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구매율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반영, 영국 정부는 이 정책으로 개인, 특히 일하는 청년층의 주택 소유율을 높이고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률을 늘린다는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과는 더 지켜볼 일이다.

③ 주택 마련 보증금 저축 지원(Help to Buy Independent Saving Account, ISA)

2015년 Starter Home Programme과 함께 도입된 또 다른 하나의 주택 마련 보조 정책은 Help-to buy ISA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잠재적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계정을 개발하여 영국 내의 은행들에서 가입이 가능하게끔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는 매달 최고 200파운드씩 저축을 잠재적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정부가 모기지의 보증금을 최고 3,000파운드까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HM Treasury, 2015). 그리고 주택 구매 상한선을 런던은 450,000파

운드 런던 외 지역은 250,000파운드 지역으로 정해 다른 연령층보다 청년층의 첫 주택 구매를 고취시킨다는 취지이다. 특히 청년층이 Starter Home 프로그램을 통해 Help-to-buy ISA를 이용,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하기에 청년층이 주택시장에 빨리 진입하여 안정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2019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나.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의 노력

1) 포이어(Foyer)

포이어는 청년 노숙자나 노숙자 상태에 직면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숙소와 각종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포이어는 원래 세계2차 대전 직후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90년대부터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 그리고 북미 국가들로 널리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사회적 문제, 즉 주거 문제(노숙자)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되었다. 포이어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숙소 또는 쉼터 제공뿐만이 아닌, 청년들이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량과 기술을 갖추기까지 여러 가지 직업훈련과 교육 그리고 직업과 관계된 서비스를 지원한다. 즉, 포이어는 노숙자 상태에 직면에 있거나 노숙 상태에 있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면서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립을 총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청년 노숙자들이나 노숙자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주택과 고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접근 방식이 포이어의 장점이다. 영국에는 1991년 민간단체, 쉼터(Shelter)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992년 포이어 연합(Foyer Federation)이 창설되었다(Quilgars and Anderson, 1995). 포이어 연합은 포이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살피고 각 지역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영국 포이어는 16세에서 25세 사이의 노숙자 청년이나 주거 빈곤에 맞닥뜨린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전국 120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다(Hillman, 2010).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관리는 민간단체인 포이어 연합이 주가 되어 하지만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은 지방 정부의 복지기금, 유럽 사회기금(EU Social Funds) 그리고 개인들의 후원들로 채워진다.

현재까지의 포이어에 대한 평가는 큰 틀에서는 긍정적이다(Smith et al., 2006; Hillman, 2010). 특히 청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민간단체와 지방 정부의 연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지역 사회 단체와 정부가 함께 청년 주거와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큰 장점이 있다(Quilgars et al., 2008). 하지만 꾸준하지 못한 기금 문제로 인하여 어떤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자체를 폐쇄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비록 많은 포이어가 정부-민간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복지 재정을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 서비스가 정부의 기금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해서 주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제점 중 하나이다. 또한 포이어가 만들어 내는 성과는 중요하지만 포이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중 약 10% 정도에 불과 하다(Quilgars et al., 2008). 이는 많은 지역의 포이어 프로그램이 지방에 작은 규모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마다 포이어 프로그램의 성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그렇기에 포이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청년들의 주거와 경제적 빈곤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방식은 한국의 청년 빈곤과 주거 문제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2) 비영리 주택조합(Housing Association)들의 노력

영국의 비영리 주택조합은 자가 소유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청년층, 장애인, 노인가구 같은 특별한 필요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 소유의 주택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조합원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약속하는 비영리적 성격의 협동체이다. 영국의 비영리 주택조합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민영화 정책과 함께 그 숫자가 점차 늘어났다 (Baldock et al., 2011). 이는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반면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주택 빈곤에 취약한 특정 그룹을 보호하기 위한(낮은 주택 임대료로 주택 제공)영국 정부의 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 주택 조합들은 임차인 혹은 주택에 대한 의무에 실패한 민간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하며, 주요 조합원들에게 민간 주택시장의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약 10%의 주택이 비영리 주택조합들의 소유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주택조합들은 그들의 목적에 따라 주택 관리 및 운영, 주택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주택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청년층의 지위를 감안, 많은 비영리 주택조합들이 잠재적으로 노숙자 상태에 직면할 수 있는 실업 청년층이나 젊은 층의 편부모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Tunstall et al., 2013). 비영리 주택조합은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주택 부서보다 덜 관료적으로 관리되며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임차인들에게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자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장기간 기다려야 하며, 임대료의 수준은 보통 공공주택과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수준이라 이에 대한 비판도 높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실업이나 빈곤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을 감안, 임차인이 되기 위하여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대기자 명단은 청년 주택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공헌도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비영리 주택조합을 통한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서비스는 주택 빈곤의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기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시사점

앞에서 영국 청년층의 주거와 빈곤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 청년 세대는 취업난과 경제난, 취약한 노동시장의 지위로 인하여 경제력이 감소되고 있고 이는 청년층의 빈곤율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증가된 빈곤율과 함께 증가된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는 영국의 구조적 주택시장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청년층을 위한 주택 정책은 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은 한국의 청년 빈곤 문제를 완화, 해결하는 방안에서 다양한 시사점과 여러 가지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택 빈곤에 처한 청년층을 위하여 포이어가 제공하고 있는 종합적 주거 고용 프로그램은 한국의 청년 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에 유의미한

합의를 제공해 주는 훌륭한 요소라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재정 축소와 이에 따른 청년 주거 빈곤 프로그램의 축소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한 청년들이 노숙자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었고 청년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기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및 비영리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급여 및 주거 서비스 시스템은 청년층의 주거 빈곤을 줄이는 중요한 지원 방안이 되고 있다. 특히, 35세 이하의 싱글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로 제공되는 싱글룸 정책은 국가의 복지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로 하여금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고취제로 고안되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주택급여를 제한 나머지 주택 임대료의 부족분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을 낳았다. 청년 가정층의 주택 급여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드러내 주택 급여 정책이 주택 빈곤을 실질적, 효과적으로 예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주택 빈곤 문제를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세우는 데 있어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시사점을 낳는다.

제 4 장

청년층 빈곤 및 주거 실태, 그리고 그 영향

제1절 청년층의 빈곤 실태

제2절 청년층의 주거 실태

제3절 청년층 빈곤 및 주거 문제의 영향: 결혼 및 출산

4

청년층 빈곤 및 주거 실태, 《 그리고 그 영향

제1절 청년층의 빈곤 실태

1. 분석개요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패널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청년층의 빈곤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계동향조사는 오랜 기간 통계청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온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복지패널조사는 2006년(2005년 기준) 시작되어 2016년(2015년 기준)까지 조사된 것으로 전국 가구를 대표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는 농어가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복지패널조사는 패널이라는 점에서 매년 조사가 진행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조사 대상자 및 가구가 탈락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통해서만 전체적 수준의 청년 빈곤을 측정하고 복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만 다양한 청년 특성을 반영하고 동태분석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기준으로 하되 복지패널은 2005년에서 2015년까지, 가계동향조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국내의 대표적 소득 및 소비 조사라는 점에서 지난 시기 청년층의 빈곤화 현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복지패널조사는 표본 수도 다른 패널에 비해 많은 6,000~7,000 가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 대표성 확보가 가

능하며, 소득 및 자산과 더불어 주거 현황에 대한 설문을 자세히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빈곤의 다양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횡단 자료가 아닌 종단 자료(패널)인 점에서 청년 빈곤층의 동태적 변화를 함께 분석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청년층의 빈곤 실태는 청년층의 빈곤과 빈곤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보다는 개인 단위²¹⁾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빈곤층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청년 성별, 연령을 세분(19~24세, 25~29세, 30~34세)하였고, 이외에 소득 및 소비, 자산, 경제활동 참여 상태 및 정신건강(우울) 등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였다.

청년층 분석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19~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청년 연구자 및 통계 작성 기관에 따라서 청년층의 연령은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준이 되는 연령은 노동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연령을 기준으로 19~34세를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통계청은 상한 연령을 29세로 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선행 연구와 통계 작성 기관의 기준을 토대로 청년층의 연령을 구분하였다. 통계청과 같이 29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남성의 군대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연령 상한을 34세로 하였다. 특징적으로 영국과 일본에서도 청년층의 하한 연령은 다르지만 상한 연령은 34세로 보고 있다.

또한 빈곤 분석의 기준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OECD 균등화 방식(경상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눔)을 이용하여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통해 산출하였으며²²⁾, 빈곤 기준이 되는 빈곤선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하여 중위소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21) 가계동향조사는 가구 단위로 조사되어 가구 가중치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 가중치를 개인 단위로 전환하는 데 많이 이용되는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해 다시 산정된 개인 가중치를 활용하여 청년 개인 단위 빈곤율을 측정하고 있다.

22) 지출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산출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2. 청년 빈곤층 규모

청년의 빈곤 규모는 선행연구들을 기준으로 보면 전 연령대 빈곤 수준 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김태완 등, 2012; 김문길 등, 2015). 전 연령 기준 빈곤율은 55세 이상 고령층 및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됨으로써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거의 40% 중후반대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청년 빈곤율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생애 주기별 평가에서는 청년층의 빈곤율이 노인 빈곤율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 연구 결과도 있다(김수정, 2010).

여기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을 통해 청년 빈곤율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경상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은 2006년 7.3%에서 2015년에는 5.8%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세부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19~24세의 청년층의 빈곤율이 다른 청년 연령층에 비해서는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25~29세, 30~34세의 순이었다. 초기 청년의 경우 대부분 학생이거나 고교 졸업 이후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급여 수준이 낮다는 점과 부모로부터 바로 독립하여 안정적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높은 빈곤율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직장 내에서 경력이 늘어나고 급여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초기 청년층에 비해서는 빈곤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1〉 청년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미만)

(단위: %)

가계동향	19~34세				한국복지 패널	19~34세			
		19~24	25~29	30~34			19~24	25~29	30~34
2006	7.3	7.8	7.4	6.9	2006	7.2	9.4	5.0	7.3
2007	7.3	9.4	6.9	6.8	2007	7.5	9.2	5.9	7.6
2008	6.8	9.7	6.0	5.1	2008	6.9	7.8	6.7	6.2
2009	7.8	10.9	7.3	5.8	2009	6.2	8.8	5.3	4.6
2010	7.1	7.8	7.4	6.3	2010	6.5	7.1	6.7	5.8
2011	6.2	7.4	5.6	5.6	2011	6.8	8.5	5.9	5.7
2012	5.7	8.5	4.5	4.6	2012	6.4	6.1	6.8	6.3
2013	5.6	7.7	4.7	4.9	2013	7.3	8.5	7.4	6.0
2014	5.7	6.1	5.9	5.1	2014	6.5	7.6	6.1	5.6
2015	5.8	7.4	7.1	3.7	2015	6.3	7.2	4.7	6.6

주: 1) 소득은 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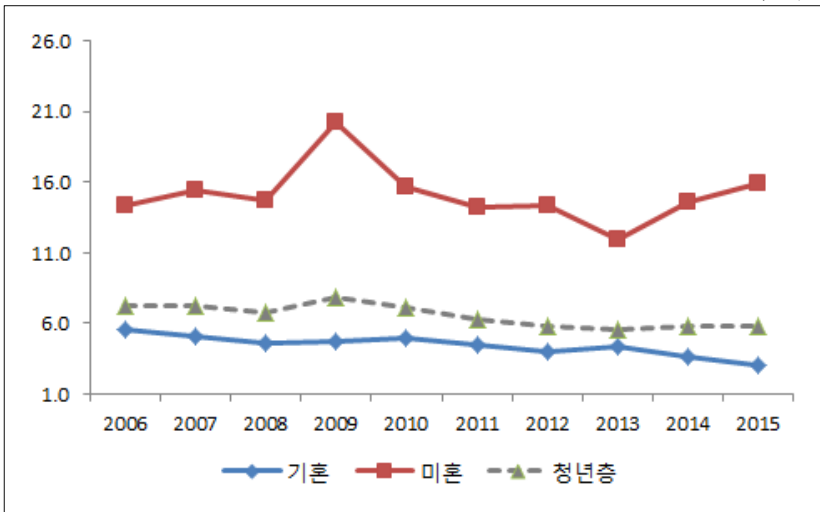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청년 빈곤율을 분석해 보면 가계동향조사에 비해서는 빈곤율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두 조사의 차이점은 통계청의 분석 자료는 농어가가 제외되어 있으며, 조사 방식이 가계부 기장방식인 반면에 복지패널조사는 농가가를 포함하고 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표본과 조사 방식에 의한 차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청년 빈곤율의 변화 양상이 양 조사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빈곤 특성을 분석할 때는 패널조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청년층의 연령을 세분하여 보면 통계청의 분석 결과와 같이 초기 청년층(19~24세)의 빈곤율이 중기 및 후기 청년층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동 연령대의 청년층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높은 빈곤율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청년층 중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여 주는 연령대도 전기 청년층이지만, 이후 각종 복지 제도의

지원을 받으며 빈곤율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결혼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미혼 청년에 비해 기혼 청년의 빈곤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미혼 청년의 빈곤율은 평균적인 청년 빈곤율 수준과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는 반면에 기혼 청년의 경우 빈곤율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미혼 청년층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혼 청년층은 다소 빈곤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을 한 청년층의 경우 가구에 대한 책임감 등이 높아지면서 소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에 미혼 청년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기혼과 미혼 청년 간 빈곤율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1] 청년층 혼인 상태별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미만)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청년층의 가구 형태별로 구분하여 빈곤율 변화를 보면 가구 형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여 주는 가구 형태는 청년1인가구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6년 16.7%에서 2015년에는 19.5%로 빈곤율이 한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청년부부가구는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빈곤율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청년부와 자녀가구,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가구는 비슷한 수준이면서 지속적으로 빈곤율이 줄어들고 있다. 청년1인가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여 주는 가구 형태는 기타청년가구로 청년이 함께 모여 살거나, 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역시 높은 빈곤율을 보여 주고 있다. 청년가구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가구 형태가 다소 취약한 경우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 취약한 가구 형태를 보여 주는 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2〉 청년가구 형태별 청년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미만)

(단위: %)

구분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자녀	부모동거 청년가구	기타청년가구
2006	16.7	0.7	6.2	6.9	8.5
2007	12.6	0.4	4.7	6.4	11.6
2008	12.2	0.2	4.3	6.9	8.5
2009	18.5	4.0	3.8	7.7	9.0
2010	17.0	2.4	6.4	5.8	9.0
2011	12.9	2.1	6.4	4.9	8.4
2012	17.5	2.7	4.3	5.1	6.9
2013	15.1	1.8	4.3	4.8	7.9
2014	21.2	2.7	5.4	3.5	7.9
2015	19.5	-	3.1	4.3	8.4

주: 청년가구(19~34세 청년가구원이 있는 가구) 유형 구분.

- 1) 청년1인가구: 19~34세의 청년1인가구, 2) 청년부부가구: 가구주가 19~34세인 부부가구,
- 3) 청년부부+자녀가구: 가구주가 19~34세인 부부와 자녀가구, 4) 부모동거청년가구: 청년가
구원이 부모와 생활을 같이 하는 가구, 5) 기타청년가구: 그 외의 청년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3. 청년 빈곤층 특성

가. 지출 및 자산

일반적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 소득 혹은 지출이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빈곤 연구에 따라서는 빈곤을 측정에 있어 소득의 정확성을 강조하거나 혹은 지출이 좀 더 분명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로서 지출을 기준으로 생계비가 산출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면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고, 지출보다는 소득을 좀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이미 본 연구도 앞의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의 빈곤 현상을 간단히 측정해 보았다.

지출을 기준으로 청년 빈곤을 변화를 보면 소득 기준에 비해서는 지출 빈곤율은 낮은 수준이었다. 2006년 3.7%로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3%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빈곤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빈곤 축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그동안 거의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볼 수도 있다.

연령을 좀 더 세분해 보면 소득 분석에서 본 것과 같이 전기 청년층(19~24세)의 빈곤율이 전반적으로 다른 연령대의 청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2015년 들어 전기 청년층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다. 후기 청년층인 30~34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낮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동 연령대는 학교 졸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이며 노동시장 참여정도가 길고 경력이 축적되면서 낮은 빈곤율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혼인 상태별로 구분해 보면 기혼 청년이 미혼 청년에 비해서는 빈곤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혼 청년층의 빈곤율이 2%대를 보여 주고 있는 것과 대비해 미혼 청년은 7~8%대에서 최근에는 10%를 넘어서 두 배에 5배 이상의 빈곤율 격차를 보여 주고 있다.

〈표 4-1-3〉 지출 기준 청년 빈곤율 추이(중위 50% 미만)

(단위: %)

가계동향	19~34세	혼인 상태				
		19~24	25~29	30~34	기혼	미혼
2006	3.7	3.7	3.9	3.5	2.5	8.9
2007	3.7	4.9	3.2	3.5	2.0	9.9
2008	3.4	3.8	3.8	3.0	1.8	9.1
2009	5.2	6.3	5.4	3.8	3.5	12.1
2010	4.1	4.6	5.3	2.7	2.9	8.8
2011	3.7	4.0	4.5	2.5	2.3	9.7
2012	2.9	3.8	2.7	2.3	2.1	7.0
2013	3.3	5.7	2.8	2.4	2.5	7.7
2014	3.2	4.1	3.3	2.6	2.0	8.4
2015	3.9	5.6	4.5	1.8	2.0	10.6

주: 1) 소득은 균등화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청년가구 형태별로 가계지출 기준 빈곤율을 살펴보면, 소득 분석과 비슷하게 청년1인가구의 지출 빈곤율이 가장 높았다. 2008~2012년까지는 5~6%대의 낮은 수준을 보여 주었지만 최근 들어 빈곤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소득 빈곤율과 유사한 추세로 1인가구 증가, 청년 실업률 증가 추세와 맞물려 많은 1인 청년가구들이 빈곤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1인가구 다음으로는 기타청년가구의 빈곤율이 높았다. 가장 낮은 수준은 청년부부가구와 청년부부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빈곤율이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1-4〉 지출 기준 청년가구 형태별 청년 빈곤율 추이(중위 50% 미만)

(단위: %)

구분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자녀	부모동거 청년가구	기타청년가구
2006	9.9	0.8	2.0	3.3	5.1
2007	5.5	0.3	0.8	3.0	7.8
2008	3.8	0.01	1.2	3.4	5.9
2009	6.3	4.0	1.5	6.1	6.2
2010	6.1	1.0	1.0	4.5	5.8
2011	6.5	0.7	1.7	3.5	5.7
2012	5.2	3.0	1.0	2.8	4.2
2013	7.6	1.7	1.0	2.8	6.4
2014	8.3	0.8	2.6	2.4	5.0
2015	13.6	-	1.4	2.7	6.5

주1: 1) 소득은 균등화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함.

주2: 청년가구(19~34세 청년가구원이 있는 가구) 유형 구분.

1) 청년1인가구: 19~34세의 청년1인가구, 2) 청년부부가구: 가구주가 19~34세인 부부가구,
3) 청년 부부+자녀가구: 가구주가 19~34세인 부부와 자녀가구, 4) 부모동거청년가구: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생활을 같이 하는 가구, 5) 기타청년가구: 그 외의 청년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여기서는 청년층의 자산 및 부채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사가 없어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분석의 기준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자산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청년 개인의 자산이기 보다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자산이란 점을 밝혀 둔다.

19~34세 청년층의 자산을 보면 2006년 27천만 원, 2014년에는 35천만 원으로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부채는 2006년 3000여만 원에서 2014년에는 5500여만 원으로 증가하여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가 청년층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표 4-1-5〉 청년층 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만 원)

구분	자산				부채	순자산
		부동산	금융 자산	기타 자산		
2006	27,469	23,393	3,265	810	3,177	24,292
2007	25,244	20,297	3,957	990	3,348	21,896
2008	28,346	23,414	3,873	1,059	3,874	24,473
2009	28,388	23,114	4,194	1,080	5,844	22,543
2010	30,810	24,532	4,975	1,303	6,483	24,328
2011	31,420	25,003	5,081	1,336	4,658	26,762
2012	31,884	25,054	5,415	1,414	5,008	26,876
2013	31,982	24,564	6,016	1,402	4,771	27,211
2014	35,061	28,000	5,614	1,447	5,519	29,54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빈곤층만을 기준으로 보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산 및 부채 수준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시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었으며, 자산 수준은 약 12천만 원에서 14천만 원까지였다. 빈곤층의 부채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21백만 원에서 2013년에는 32백만 원까지 늘어났다.

〈표 4-1-6〉 청년 빈곤층 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만 원)

구분	자산				부채	순자산
		부동산	금융 자산	기타 자산		
2006	12,214	10,236	1,500	478	2,169	10,045
2007	12,227	10,907	792	528	2,794	9,433
2008	11,967	9,915	1,489	563	2,404	9,563
2009	8,704	7,510	873	321	2,250	6,454
2010	17,649	15,137	1,306	1,207	3,669	13,980
2011	19,273	16,517	2,268	488	3,221	16,052
2012	11,307	9,374	1,128	804	2,793	8,514
2013	13,955	11,646	1,794	514	3,229	10,7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1-7〉 청년가구 유형별 자산 및 부채 추이

(단위: 만 원)

구분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자녀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2006	5,699	736	14,000	3,226	14,175	2,706
2007	5,254	625	14,930	3,153	16,437	2,806
2008	6,510	874	15,955	2,170	18,810	3,501
2009	5,617	1,197	16,920	3,067	18,138	5,762
2010	6,187	1,784	18,515	6,029	19,198	5,755
2011	7,139	1,060	17,561	2,641	22,005	4,150
2012	6,199	596	17,707	3,665	23,428	4,623
2013	7,628	956	18,251	3,014	22,130	3,803
구분	부모동거청년가구		기타청년가구			
	자산	부채	자산	부채		
2006	41,861	3,827	18,410	2,447		
2007	35,170	4,166	16,719	1,974		
2008	36,985	4,614	18,611	2,809		
2009	37,291	6,772	19,010	4,654		
2010	39,028	7,271	21,577	4,988		
2011	38,674	5,388	26,376	4,489		
2012	39,334	5,794	17,842	3,234		
2013	38,335	5,470	23,938	3,904		

주: 청년가구(19~34세 청년가구원이 있는 가구) 유형 구분.

- 1) 청년1인가구: 19~34세의 청년1인가구, 2) 청년부부가구: 가구주가 19~34세인 부부가구,
 3) 청년부부+자녀가구: 가구주가 19~34세인 부부와 자녀가구, 4) 부모동거청년가구: 청년가
 구원이 부모와 생활을 같이 하는 가구, 5) 기타청년가구: 그 외의 청년가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나. 기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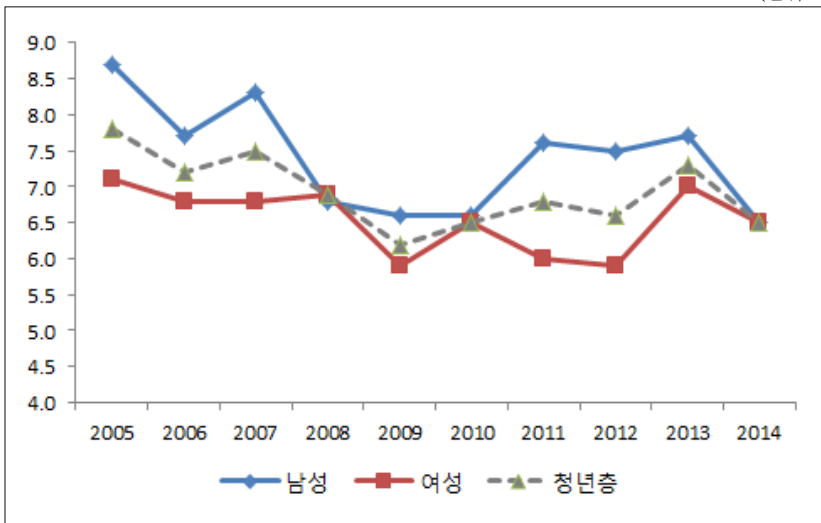
여기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기타 특성별 빈곤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청년들의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 청년에 비해서는 남성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 기간에 걸쳐 여성 청년은 평균 이하의

비율을 보여 주고,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남성 청년층은 시기별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8~2010년 사이 청년층의 빈곤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 청년층의 빈곤 감소율이 높았다. 2010년 이후에는 모두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에는 남성 및 여성 청년층의 빈곤율이 동일한 수준을 보여 주었다. 전 연령대를 기준으로 여성층은 “빈곤의 여성화”라고 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에 비해 높은 빈곤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층에서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4-1-2] 청년층 성별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미만)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별로 빈곤율 추이를 보면, 일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청년층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참여하는 경제활동 형태에 따라 빈곤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안정

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용직의 빈곤율은 다른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모습이었지만, 반면에 임시·일용,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층, 무엇보다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층의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들어 청년 실업률이 매년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측면에서 많은 청년층이 실업과 빈곤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경제활동에 있는 경우도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유형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실업과 비경제활동 인구의 청년층은 오히려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표 4-1-8〉 경제활동 참여 상태별 청년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미만)

(단위: %)

구분	상용	임시일용	자영	실업	비경제활동 ¹⁾
2005	2.4	8.6	10.1	24.2	7.8
2006	1.9	9.6	10.2	18.4	7.7
2007	1.9	8.9	12.6	23.5	9.7
2008	2.1	7.2	7.6	14.9	10.4
2009	1.0	6.6	7.1	11.5	18.6
2010	1.6	5.5	7.8	23.7	16.1
2011	0.7	6.4	6.6	13.7	20.5
2012	1.5	7.1	10.0	16.4	16.2
2013	1.5	8.4	7.4	10.8	23.1
2014	0.8	7.0	4.7	26.2	14.4

주: 1)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진학준비, 취업준비, 간병, 구직포기, 근로의사 없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비경제활동 사유(가사, 군입대, 재학, 장애 등)는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금까지 청년 빈곤 현상을 청년의 특성별로 분석하되 횡단면 분석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이하에서는 패널의 특성을 고려한 종단 분석을 통해 청년층 빈곤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은 분석 대상 기간인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빈곤과 비빈곤을 구분하였으며, 10년 기간을 총합하여 빈곤 경험 기간을 산출하였다. 빈곤 경험 기간을 기준으로 10년의 절반인 5년 혹은 5회 이상 빈곤을 경험하면 장기빈곤, 2~4년을 경험하면 단기빈곤, 10년 중 1년 혹은 1회만 빈곤을 경험하면 일시빈곤으로 나누었다(김태완, 윤상용, 2015).

청년층의 빈곤율 변화를 시간 변화에 따라 먼저 연령으로 세분화해서 보면, 한 번 빈곤을 경험한 청년의 장기빈곤을 경험하는 비중이 18.0%로 높은 수준이다. 빈곤을 경험한 청년 5명 중 1명은 5년 이상의 장기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이 빈곤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와 다르게 청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기간 빈곤율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았다. 단기적으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이지만,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랜 기간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청년층 중 장기빈곤 경험자에 대한 탈빈곤 정책이 요구된다.

〈표 4-1-9〉 청년 빈곤율 동태 변화(연령별)

(단위: %)

청년 연령 세분	19~34			
		19~24	25~29	30~34
장기빈곤	18.0	15.0	19.8	19.8
단기빈곤	27.3	26.1	38.2	19.6
일시빈곤	13.0	13.5	11.2	14.0
비빈곤	41.7	45.4	30.9	46.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청년 빈곤층의 성별 및 우울 경험을 동태적으로 보면, 성별에서는 횡단 분석에서와 같이 여성에 비해 남성 청년층의 빈곤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단기빈곤을 경험하는 남성 청년층이 많다는 점은 정부가 청년 빈곤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어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학교 졸업 이후, 안정적 일자리로의 이행 이전에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단기적인 소득 및 주거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빈곤을 경험한 청년층이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에 비해서는 정신건강 즉 우울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장기빈곤을 경험한 청년층의 21.2%가 우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지원과 더불어 정신 건강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제안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경험하는 우울 경험의 문제는 빈곤층도 심각하지만 비빈곤을 경험한 청년층에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적 접근이 요구된다.

〈표 4-1-10〉 청년 빈곤율 동태 변화(성별, 우울 경험별)

(단위: %)

청년 성별	남성	여성
장기빈곤	19.1	16.8
단기빈곤	39.7	13.8
일시빈곤	9.9	16.5
비빈곤	31.3	53.0
우울 경험	우울	비우울
장기빈곤	21.2	17.5
단기빈곤	32.0	28.3
일시빈곤	16.3	12.5
비빈곤	30.6	41.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참여 상태별 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보면, 역시 상용직보다는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인 청년층의 장기 및 단기 빈곤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도 비빈곤을 경험한 비율에 비해 빈곤을 경험한 청년층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현세대 청년층은 언제든지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상용직에 있어서도 장기빈곤을 경험하는 비중이 15.5%로 높다는 것이다. 비록 청년이 1년 이상의 장기간 노동시장에 참여 해도 그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표 4-1-11〉 청년 경제활동 참여 상태 빈곤율 동태 변화

(단위: %)

구분	상용	임시 일용	자영	실업	비경활
장기빈곤	15.5	20.5	13.1	26.3	26.9
단기빈곤	25.7	28.9	28.2	30.3	29.7
일시빈곤	13.5	13.4	14.3	15.4	13.0
비빈곤	45.3	37.2	44.4	28.1	30.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제2절 청년층의 주거 실태

1. 분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상황을 살펴보고자 가구와 개인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원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청년가구의 주거 상황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작적 정의를 통해 분석 대상의 가구 유형을 〈표 4-2-1〉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가구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를 큰 범위로 ‘청년가구’로 보았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19~34세인 ‘청년가구주가구’로 설정하였다. ‘청년가구’의 가구 유형으로 ‘청년1인가구’는 19~34세의 청년 1인으로 구성된 가구로, 이후 가족을 이룬 ‘청년부부(무자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청년이지만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모청년가구’로, 그 외는 ‘기타청년가구’를 주요 청년가구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가구와의 비교를 위해 장년가구주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 4-2-1〉 가구 유형 분류

구분		조작적 정의
청년가구주가구		가구주가 청년(19~34세)인 가구
장년가구주가구		가구주가 장년(35~54세)인 가구
청년가구		청년가구원(19~34세)이 있는 가구
청년 가구 유형	청년1인가구	(청년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 19~34세의 청년 1인 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 가구주가 19~34세인 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청년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 가구주가 19~34세인 부부와 자녀 가구
	부모+청년가구	(청년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 청년가구원이 부모와 생활을 같이 하는 가구
	기타청년가구	(청년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 위 가구 이외의 청년가구

2. 청년층 가구 유형별 특성

앞서 언급한 <표 4-2-1>와 같이 청년가구 유형을 구분하였을 때, 그 분포는 다음 <표 4-2-2>와 같다. 청년가구원에 포함된 청년가구는 37.71%로 나타났으며, 청년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부모+청년가구, 청년 1인가구, 기타청년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청년부부가구로 청년1인가구의 비중이 전체 청년가구에서 비중이 큰 집단이다.

<표 4-2-2> 청년가구 유형별 분포(가구 단위)

(단위: %)

구분		비율
청년가구주가구		14.26
장년가구주가구		43.69
청년가구		37.71
청년 가구 유형	청년1인가구	17.64
	청년부부가구	6.74
	청년부부+자녀가구	8.91
	부모+청년가구	50.83
	기타청년가구	15.87
	전체	1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표 4-2-3>에서는 가구주 평균 연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가구의 가구주는 51.66세, 장년가구주가구 가구주는 44.72세, 청년가구원이 포함된 청년가구 가구주는 44.03세, 청년가구주가구 가구주 평균 연령은 29.97세이다. 청년1인가구는 28.46세, 청년부부가구는 31.26세, 청년부부+자녀가구는 31.8세, 부모+청년가구는 50대 중반이다.

〈표 4-2-3〉 가구 유형별 가구주 평균 연령

(단위: 세)

구분		평균연령
전체 가구		51.66
청년가구주가구		29.97
장년가구주가구		44.72
청년가구		44.03
청년 가구 유형	청년1인가구	28.46
	청년부부가구	31.26
	청년부부+자녀가구	31.87
	부모+청년가구	55.09
	기타청년가구	38.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청년가구주가구의 가구주 교육 수준은 대학 이상이 70% 이상으로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은 점을 알 수 있다(표 4-2-4 참조). 가구원이 포함된 청년가구의 가구주 교육 수준이 대학 이상이 2014년 50.49%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가구주가구의 가구주 교육 수준이 절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 준다.

청년가구주가구의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의 비율이 67.43%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영자와 실업자의 비율은 9.62%, 2.67%이다. 상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청년부부가구의 가구주는 78% 전후로, 청년부부+자녀가구 가구주는 80% 전후로 비교적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년1인가구의 경우에는 상용직 56.76%, 자영자 12.56%로 청년가구에 비해 상용직의 비율은 낮고, 자영자의 비율은 높았다. 청년1인가구 가구주의 자영자 비율이 부모+청년가구의 자영자 비율 다음이라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한 점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취업보다는 창업시장에 뛰

어드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
을 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해럴드경제, 2016. 6. 13.)과 맞물리는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표 4-2-4〉 가구 유형별 가구주 교육 수준

(단위: %)

구분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학 이상	전체
전체 가구		16.28	10.69	34.08	38.96	100.00
청년가구주가구		0.25	1.15	27.62	70.98	100.00
장년가구주가구		2.61	5.86	41.38	50.14	100.00
청년가구		5.03	7.62	36.87	50.49	100.00
청년 가구 유형	청년1인가구	-	1.00	28.35	70.64	100.00
	청년부부가구	-	0.42	24.84	74.74	100.00
	청년부부+자녀가구	-	0.54	27.62	71.83	100.00
	부모+청년가구	8.47	13.60	45.98	31.94	100.00
	기타청년가구	4.53	2.83	27.48	65.18	1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표 4-2-5〉 가구 유형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상용직	임시 일용직	자영자	실업자	비경활	전체
전체 가구		39.82	20.65	17.11	2.24	20.18	100.00
청년가구주가구		67.43	18.09	9.62	2.67	2.19	100.00
장년가구주가구		54.87	21.30	17.08	2.15	4.59	100.00
청년가구		53.28	20.64	17.27	2.69	6.13	100.00
청년 가구 유형	청년1인가구	56.76	23.13	12.56	4.88	2.67	100.00
	청년부부가구	78.57	12.47	7.09	1.30	0.57	100.00
	청년부부+자녀가구	81.94	9.01	7.97	0.39	0.69	100.00
	부모+청년가구	39.27	24.85	23.48	3.06	9.32	100.00
	기타청년가구	67.46	14.33	12.15	0.92	5.14	1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주거 점유 형태는 전체 가구, 청년가구원이 포함된 청년가구, 청년가구주가 모두 전세보다는 보증부 월세의 비율이 높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표 4-2-6 참조). 그 중에서도 청년가구주가의 경우, 보증부 월세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월세의 비율도 높다. 이는 전세의 월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가구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특히 청년가구주가(보증부 월세 39.53%, 월세 2.48%)와 청년1인가구(보증부 월세 58.32%, 월세 3.97%)의 보증부 월세 및 월세 비율이 높은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월세화는 주거비 부담으로 자산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또한 출산율 약화, 그리고 내수 감소 등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자산 축적의 지체로 중장기적으로도 주거비 부담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임차가구 내 양극화도 심화될 것(주택산업연구원, 2016)을 유념해야 한다.

〈표 4-2-6〉 가구 유형별 주거 점유 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전체
전체 가구		52.26	16.72	22.34	1.89	6.78	100.0
청년가구주가		21.07	29.70	39.53	2.48	7.22	100.0
장년가구주가		50.41	19.57	23.40	1.55	5.07	100.0
청년가구		48.41	20.26	25.06	1.40	4.87	100.0
청년 가구 유형	청년1인가구	7.76	25.17	58.32	3.97	4.78	100.0
	청년부부가구	24.51	41.33	21.43	2.22	10.50	100.0
	청년부부+자녀가구	35.14	37.04	17.06	0.32	10.43	100.0
	부모+청년가구	68.16	12.18	16.08	0.69	2.89	100.0
	기타청년가구	47.91	22.30	22.91	1.09	5.8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청년가구주가구의 주택 형태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또는 주택이외의 거처 등의 형태보다는 단독, 아파트, 다세대 연립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1인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52.09%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거주 비율은 청년부부가구 57.53%, 청년부부+자녀가구 69.47%로 가장 많았다.

〈표 4-2-7〉 가구 유형별 주택 형태

(단위: %)

구분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전체
전체 가구		34.84	13.88	48.81	2.30	0.17	100.00
청년가구주가구		36.35	18.33	44.46	0.87	-	100.00
장년가구주가구		26.64	13.08	57.94	2.11	0.23	100.00
청년가구		29.13	15.93	52.83	1.98	0.14	100.00
청년 가구 유형	청년1인가구	52.09	18.22	28.78	0.91	0.00	100.00
	청년부부가구	24.61	17.86	57.53	0.00	0.00	100.00
	청년부부+자녀가구	12.77	17.17	69.47	0.60	0.00	100.00
	부모+청년가구	25.86	14.88	56.15	2.89	0.22	100.00
	기타청년가구	25.18	15.22	57.58	1.85	0.16	1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3. 임대료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실태

주거 빈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경제적 측면의 주거 빈곤²³⁾은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으로, 물리적 측면의 주거 빈

23) 경제적 측면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데,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월세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20% 이상, 30%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곤²⁴⁾은 최저주거기준으로 이를 규정한다.

본 절에서는 경제적 측면의 임대료 과부담 비율과 물리적 측면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외에 주관적인 박탈 경험 여부를 통해 주거 빈곤의 질적인 지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청년들의 주거 빈곤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주거비 과부담 가구 실태, 그리고 주거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먼저 경제적 측면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과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을 살펴보려고 한다.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전세 및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은 월세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²⁵⁾의 중위값은 전체 가구 18.96%, 장년가구가 18.23%, 청년가구가 17.50%, 청년가구가 18.70%이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부부+자녀가구 19.6%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1인가구 18.9%, 청년부부가구 18.4% 등의 순이었다.

24) 물리적 측면의 최저주거기준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의미하며, 주택법 제5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 및 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최저주거기준은 크게 방수기준, 면적기준, 시설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저주거기준으로 보았다.

25) RIR은 소득 및 임대료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 중위값을 활용하였다.

〈표 4-2-8〉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단위: %)

구분		중위
전체 가구		18.96
청년가구주가구		18.70
장년가구주가구		18.23
청년가구		17.50
청년 가구 유형	청년1인가구	18.90
	청년부부가구	18.40
	청년부부+자녀가구	19.60
	부모+청년가구	15.00
	기타청년가구	18.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위 결과는 주택산업연구원(2016)의 청년가구의 주거 소비 특성 결과(청년가구 19.2%, 장년가구 18.5%)와도 유사한데, 여기서는 청년 실업률에 큰 원인을 두고 있으며, 이는 청년 실업 인구 증가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반면, 주거비 부담은 높아져 간다는 해석을 두고 있다. 이는 앞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본 〈표 4-2-7〉에서 청년1인가구 가구주의 실업자 비율은 전체 청년1인가구 중에 4%대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실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가구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자산 형성과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김미경, 2016).

〈표 4-2-9〉 빈곤 여부에 따른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단위: %)

구분		중위
전체 가구	비빈곤	17.77
	빈곤	26.28
청년가구주가구	비빈곤	18.54
	빈곤	36.19
장년가구주가구	비빈곤	17.73
	빈곤	23.33
청년가구	비빈곤	26.26
	빈곤	26.28

주: 소득은 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또한, 〈표 4-2-9〉를 살펴보면, 빈곤한 청년가구주가구와 빈곤하지 않은 청년가구주가구의 임대료 비율은 약 2배 차이가 나 빈곤한 청년가구주가구와 그렇지 않은 청년가구주가구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빈곤한 전체 가구와 청년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는 26.28%인 데 비해, 빈곤한 청년가구주가구는 36.19%로 9.91% 포인트 높았다.

가처분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빈곤에 처한 청년층에게 주거 빈곤층에 현금을 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만약 지원이 없다면, 청년의 주거비 비중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며,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국가가 기준선을 정하고 월세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

OECD 권고에 따르면 RIR 20% 이하이며, 선진국의 경우, RIR 30%를 초과하는 계층은 주거 빈곤층으로 간주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5).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은 청년가구원이 있는 청년가구가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년가구주가구, 전체 가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RIR 20% 이상은 청년부부+자녀 가구, 청년1인가구가 47%대로, RIR 30% 이상은 청년부부가구 23.41%, 청년1인가구 20.46%로 가장 높았으며, 과부담 비율이 낮은 가구 유형은 부모+청년가구이다.

아래 <표 4-2-11>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청년가구에 경우에는 청년가구주가구에 비하여 임대료 과부담에 있어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추론된다. 즉, 청년가구주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도 수치상으로도 그러하지만 그 상황이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빈곤 여부에 따른 임대료 과부담 가구의 비율은 절대적인 수치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빈곤한 전체 가구의 RIR 20% 이상은 65.78%, RIR 30% 이상 41.14%이다. 빈곤한 청년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RIR 20% 이상은 66.56%, RIR 30% 이상은 39.59%였으며, 빈곤한 청년가구주가구의 RIR 20% 이상은 73.33%, RIR 30% 이상은 60.22%로 청년가구주가구의 주거비 과부담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2-10〉 임대료 과부담 가구의 비율(가구 단위)

(단위: %)

구분		RIR 20% 이상	RIR 30% 이상
전체 가구		46.73	24.19
청년가구주가구		45.16	20.66
장년가구주가구		44.18	22.39
청년가구		41.50	18.11
청년 가구 유형	청년1인가구	47.03	20.46
	청년부부가구	39.81	23.41
	청년부부+자녀가구	47.09	18.14
	부모+청년가구	34.18	14.67
	기타청년가구	41.86	16.9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표 4-2-11〉 빈곤 여부에 따른 임대료 과부담 가구의 비율(가구 단위)

(단위: %)

구분		RIR 20% 이상	RIR 30% 이상
전체 가구	비빈곤	41.87	19.87
	빈곤	65.78	41.14
청년가구주가구	비빈곤	43.96	18.97
	빈곤	73.33	60.22
장년가구주가구	비빈곤	42.07	20.74
	빈곤	58.29	33.50
청년가구	비빈곤	39.93	16.77
	빈곤	66.56	39.5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경우, 복지욕구조사의 2차 조사의 문항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2차 조사는 4,796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분석 대상 수의 제한으로 빈곤한 청년가구 유형의 해석상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살펴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란, 방수기준과 면적기준, 그리고 시설기준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미달인 가구를 의미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13.88%, 청년가구원이 있는 가구 13.36%, 청년가구주가구 12.31%로 가구 특성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부부+자녀가구는 16.87%, 청년1인가구는 14.17%로 다른 가구유형보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년1인가구와 청년부부+자녀가구가 열악한 주거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미옥 등(2016)의 연구에서도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4.6%였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거주 청년1인가구의 주거 빈곤율(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반지하, 옥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비율)은 36.3%에 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5.04.21.).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으로 그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머니투데이, 2016.02.25.).

〈표 4-2-1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가구 단위)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가구		13.88
청년가구주가구		12.31
장년가구주가구		13.71
청년가구		13.36
청년 가구 유형	청년1인가구	14.17
	청년부부가구	3.85
	청년부부+자녀가구	16.87
	부모+청년가구	13.81
	기타청년가구	12.8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표 4-2-13〉 빈곤 여부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가구단위)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가구	비빈곤	11.45
	빈곤	23.65
청년가구주가구	비빈곤	12.42
	빈곤	9.29
장년가구주가구	비빈곤	10.84
	빈곤	22.21
청년가구	비빈곤	13.22
	빈곤	16.2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4. 주거빈곤가구 규모 및 박탈

주거빈곤가구 중, 임대료 과부담은 앞서 임대료 부담에서도 언급했듯이 임차가구(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RIR 20% 이상을 살펴보았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단, 7인이상가구 제외)는 자가가구도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둘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주거빈곤가구 실태를 보고자 한다.

〈표 4-2-14〉의 주거빈곤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부부가구와 부모+청년가구를 제외한 청년1인가구와 청년부부+자녀가구의 경우, 적정 주거보다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임대료 과부담 등의 주거 빈곤 상황에 놓인 것을 알 수 있다.

주거 빈곤 유형 중, 청년1인가구는 임대료 과부담 비중이 51.36%, 청년가구주가가구는 48.92%로 가장 컸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주택에 생활하면서 임대료도 가처분소득 20%를 넘는 주거빈곤가구가 청년1인가구와 청년부부+자녀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가구, 청년가구원이 포함된 청년가구, 청년가구주가가구 모두 비빈곤한 가구는 40% 전후가 적정 주거에 지내는 것에 비해, 빈곤한 가구는 임대료 과부담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생활하면서 임대료 과부담에 모두 해당하는 주거 빈곤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14〉 주거빈곤가구 비율(가구 단위)

(단위: %)

구분		적정 주거	최저주거 기준 미달	임대료 과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 + 임대료 과부담	전체
전체 가구		36.06	12.66	44.11	7.17	100.00
청년가구주가구		36.67	11.44	48.92	2.97	100.00
장년가구주가구		37.93	12.22	42.80	7.04	100.00
청년가구		37.55	13.98	44.55	3.92	100.00
청년 가구 유형	청년1인가구	33.07	12.40	51.36	3.17	100.00
	청년부부가구	46.37	3.32	50.31	0.00	100.00
	청년부부+자녀가구	32.81	15.88	45.34	5.97	100.00
	부모+청년가구	38.55	18.97	36.20	6.29	100.00
	기타청년가구	42.36	12.61	43.07	1.96	1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표 4-2-15〉 빈곤 여부에 따른 주거빈곤가구 비율(가구 단위)

(단위: %)

구분		적정 주거	최저주거 기준 미달	임대료 과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 + 임대료 과부담	전체
전체 가구	비빈곤	40.42	13.36	42.68	3.54	100.00
	빈곤	19.33	9.94	49.60	21.13	100.00
청년 가구주 가구	비빈곤	37.31	11.61	48.00	3.08	100.00
	빈곤	24.71	8.26	66.00	1.02	100.00
장년 가구주 가구	비빈곤	40.36	12.8	42.62	4.22	100.00
	빈곤	23.07	8.74	43.93	24.26	100.00
청년 가구	비빈곤	38.83	14.36	43.27	3.53	100.00
	빈곤	19.11	8.52	62.84	9.52	1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주거 박탈은 주택 및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경제적인 이유로 갖고(하고)있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크게 아래 5가지 항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4-2-16〉 주거 박탈 실태(가구 단위)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가구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중앙난방이 되는 것	1.33
	가족 수에 맞게 적절한 방을 사용하는 것	2.18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1.25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는 것	1.96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1.38
청년 가구주 가구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중앙난방이 되는 것	0.29
	가족 수에 맞게 적절한 방을 사용하는 것	1.29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0.53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는 것	3.32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0.21
장년 가구주 가구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중앙난방이 되는 것	1.12
	가족 수에 맞게 적절한 방을 사용하는 것	3.15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0.85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는 것	1.75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0.59
청년 가구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중앙난방이 되는 것	0.81
	가족 수에 맞게 적절한 방을 사용하는 것	3.04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0.85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는 것	2.29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0.2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는 것’에 해당하는 비율이 3.32%로 청년가구주가구의 주거 박탈 실태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청년가구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청년1인가구도 4~5%

대로 높은 수준이었다.

빈곤한 가구의 경우에 대부분 주거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중에 난방과 가족 수에 맞는 방 수의 결핍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17〉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 박탈 실태(가구 단위)

(단위: %)

구분	청년 1인	청년 부부	청년 부부+ 자녀	부모 +청년	기타 청년 가구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중앙난방이 되는 것	0.00	0.14	0.06	1.14	1.36
가족 수에 맞게 적절한 방을 사용하는 것	0.93	1.01	1.36	4.44	2.67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0.86	0.00	0.54	1.04	0.78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는 것	5.56	1.17	0.80	1.91	1.21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0.00	0.00	0.00	0.42	0.5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표 4-2-18〉 빈곤 여부에 따른 주거 박탈 실태(가구 단위)

(단위: %)

구분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중앙난방이 되는 것	가족 수에 맞게 적절한 방을 사용하는 것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는 것	전용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전체 가구	비빈곤	0.75	2.32	0.89	1.73	0.46
	빈곤	3.60	1.63	2.63	2.83	4.99
청년가구주 가구	비빈곤	0.11	1.03	0.55	3.48	0.18
	빈곤	3.61	6.18	0.15	0.30	0.91
장년가구주 가구	비빈곤	0.74	1.94	1.53	0.72	0.20
	빈곤	1.95	2.54	4.06	5.10	4.53
청년가구	비빈곤	0.64	2.83	0.81	2.19	0.16
	빈곤	4.02	7.02	1.56	4.17	2.7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제3절 청년층 빈곤 및 주거 문제의 영향: 결혼 및 출산

1. 분석 개요

결혼과 이에 따른 출산은 한 나라의 인구 규모와 인구 구조를 적정하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노동력의 꾸준한 공급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적 감소로 인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의 경우 1995년 28.36세에서 2015년 32.57세로 20년간 4.2세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1995년 25.32세에서 2015년 29.96세로 4.6세 증가하였다. 또한 합계 출산율은 1995년 1.63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5년에는 1.24에 머무르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를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제도적 요인들로 구분하여 분석해 왔다. 또한 실증 분석 연구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가구의 경제적 상태와 결혼 또는 출산 대상자들의 노동시장 및 주택시장 여건 등 주로 경제적 요인들을 주요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소득과 주거 비용에 초점을 두어 소득 및 주거 비용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가. 결혼 결정 요인

결혼은 두 개인이 만나 가구를 형성하는 절차이며 향후 자녀의 출산, 양육, 교육, 자녀의 결혼 등이 동반되므로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소득 및 자산과 같은 경제적 조건이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결혼 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Becker (1973, 1974)에서 출발되었다.

그는 잠재적 결혼 대상자(결혼시장 참여자)들이 결혼했을 때의 이득(gains)과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득의 크기를 비교하여 결혼했을 때의 이득이 더 크면 결혼을 선택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잠재적 결혼 대상자들은 예산 제약 조건과 시간 제약 조건하에서 가구 생산 함수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별로 공식 부문(시장)과 비공식 부문(가정)에서의 활동 시간을 결정하며, 이로 인해 획득되는 소득을 통해 필요한 재화를 소비하게 된다. 결혼 여부는 소득(재산소득 및 근로소득), 배우자 간의 임금 차이, 비시장재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지적 능력, 교육 수준 등과 같은 개인별 특성(traits), 그리고 시장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

결혼을 통한 이득은 몇 가지가 있는데²⁶⁾ 첫째,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을 통해서 가구 생산량(household-produced commodities)이 더 커지고, 또한 남성 배우자와 여성 배우자 간의 시장 임금 차이에 따른 분업을 통해(예를 들면 남성 배우자의 시장 임금이 여성 배우자의 시장 임금보다 높은 경우 남성 배우자는 근로활동, 여성 배우자는 가사 활동) 가구 생산을 더 크게 할 수 있으며, 둘째, 부부간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정을

26)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Yeiss(1997)를 참고할 것.

통해 생애 효용을 더 높게 할 수 있고, 셋째, 결혼을 통해서 상품을 공동 소비할 수 있으며, 넷째, 결혼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의 이득은 결혼한 부부가 어떠한 메카니즘(이타적인지, 상호협조적인지, 비협조적인지)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Keeley(1977)는 Becker의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1967년 미국의 Survey of Economic Opportunity 자료를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 배우자의 초혼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남성의 임금은 초혼 연령과 음(-)의 관계를, 여성의 임금은 초혼 연령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Keeley는 이러한 결과를 Becker의 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남성의 임금이 높을수록, 여성의 임금이 낮을수록 결혼의 잠재적 이득이 더 커지므로 결혼시장에 보다 빨리 진입하게 될 것이며, 또한 높은 임금은 배우자 탐색 비용을 높이므로 배우자 탐색 기간을 줄일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Keeley(1979)는 미국의 1960년 센서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의 상대적 비율이 높을수록 결혼시장 진입 시기 및 궁극적 결혼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Bergstrom and Bagnoli(1993)은 임금이 높은 남성이 결혼을 늦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미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따라서 현재 임금이 높은) 남성은 여성에게 그의 소득 잠재력을 증명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늦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Zhang(1995)은 대만의 1989년 Woman and Family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이 상반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부인이 일을 하는 경우 남성 임금이 높을수록 남성의 결혼 연령이 높았으며, 부인

이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성 임금이 높을수록 남성의 결혼 연령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이 일을 하는가에 따라 두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Matsushita(1989)는 생애 효용극대화 모형을 통해 최적 결혼 연령 결정 요인을 도출하고 미국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이용하여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추정에 이용된 표본은 1967년 미혼 상태의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으로서 1982년 연령이 18세에서 45세사이인 혼인 상태의 남성 가구주 1,897명이었다. 그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변수로는 생애 소득의 분산, 희망 방 수와 실제 방 수의 차이, 부모의 소득 수준을 들 수 있다. 추정 결과 교육 수준의 대리 변수로 이용된 생애 소득의 분산과 공동 상품 소비의 측정 지표로서 희망하는 방 수와 실제 방 수의 차이는 결혼 연령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녀의 인적 자본 형성의 대리 지표인 부모의 소득 수준은 결혼 연령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에 따라 여성의 결혼 비율이 감소하면서 그 원인을 찾는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ecker는 결혼의 이득은 부부간의 특화(분업)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높은 경우 남성 배우자는 근로활동을 하고 여성 배우자는 가사 활동을 함으로써 가구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임금도 높아질 것이므로 부부간의 특화로 인한 이득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이 미혼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을 크게 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임금 수준의 증가가 여성의 결혼 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방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Wood(1995)는 미국의 1970년과 1980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대도

시통계지역(SMSA)단위의 집계 자료를 구축한 후 1970년의 지역별 결혼 비율과 1980년 지역별 결혼 비율의 차이를 다양한 설명 변수에 대해 회귀 분석하였다. 모형 추정 결과 20세에서 34세 사이의 백인 여성의 경우 여성 임금의 변화는 여성의 결혼 비율의 변화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ppenheimer(1997)는 여성의 임금과 결혼과의 관계 분석에서 집계 자료 또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두 변수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위의 미시 자료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Lichter 등(1994)은 미국의 청년층 단자료(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를 이용하여 1979년 연령이 14~22세인 여성을 대상으로 1986년까지 결혼 여부를 추적한 자료를 구축하여 초혼에 대한 로짓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교육 수준, 고용 여부, 근로소득과 같은 경제적 독립성에 대한 변수들은 여성의 초혼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결혼 대상자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또한 결혼과 이어지는 출산에 대한 재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결혼에 의해 형성된 부부 또는 가족은 일상생활을 위한 적절한 주거 공간과 주거 여건을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주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결혼 자체가 새롭게 형성된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와의 공동 거주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거 양태(living arrangement)로 선택할 것인지는 내생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 대부분 새로운 부부 또는 가족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주거 비용은 결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주거 비용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Hughes(2004)는 미국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이용하여 1968~1996년 기간 동안 연령이 18세에서 49세인 결혼하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 결혼으로의 상태 이전에 대한 위험률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자가 거주 주택 가격은 결혼 위험률과 강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비용(주택 가격으로 측정한)이 1만 달러 증가하면 결혼 위험률은 16%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는데, 이는 소득 1만 달러 증가가 가져오는 결혼 위험률의 증가와 동일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기간을 나누어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 비용의 효과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 비용이 미국의 결혼율 감소의 일정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였다.

Bowmaker 등(2015)은 1970~1999년 기간 동안 미국의 2,450 카운티에서의 주거비 부담과 결혼 비율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들은 주택과 순소득(총소득에서 주거 비용을 제외한)으로 구성된 생애 효용 함수를 가정하여 결혼하지 않았을 때의 효용과 결혼하였을 때의 효용을 비교하고 소득의 한계 효용이 양(+)이라면 결혼하였을 때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 비용과 결혼하지 않았을 때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 비용의 차이가 높아질수록 결혼 가능성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소득 대비 자가 거주 주거 비용으로 측정한 주거비 부담은 결혼 비율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1단위 증가하면 결혼 비율은 0.21~3.7단위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의 영향은 1인당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 인당 소득이 높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거비 부담의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높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이상호, 이상현(2011)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1990~2009년 동안의 시·도 패널을 구축하여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이 결혼 건수와 초혼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택 매매 가격과 주택 전세 가격은 결혼 건수 및 초혼 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시적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의 2001~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 전세 가격이 초혼 여부와 초혼 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혼 상태인 개인의 초혼 여부에 대한 프로빗 모형을 추정한 결과 주택 전세 가격은 여성의 초혼 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주택 전세 가격이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의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출산 결정 요인

대부분 출산은 결혼을 전제로 하나, 결혼과는 또 다른 독립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분석의 초점에 따라 정태적 측면과 동태적 측면의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Becker(1960), Becker and Lewis(1973), Becker and Tomes(1976)는 정태적 모형을 통해 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시계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에서 출산이 소득과 음(-)의 관계에 있다는 퍼즐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의 수(quantity)와 자녀의 질적 수준(quality)을 동시에 고려한 의사 결정 과정을 제시하였다. 출산(또는 자녀 수)이 소득과 음의 관계라는 것은 자녀가 열등재이거나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는 자녀에 대해 높은 비용에 직면한다는 비현실적인 결과나 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부모가 자녀의 수뿐만 아니라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주어진 예산과 시간 제약 조건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녀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을 선택하게 된다면 자녀가 열등재가 아니라 정상 또는 우등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quality-quantity 모형이라 부르고 있다.

한편 소득과 출산의 음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자녀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의 상호 작용 이외에 높은 소득이 여성(출산의 주체)의 시간에 대한 높은 비용과 관련이 있다. 여성의 시간 비용이 높다는 것은 여성의 임금이 높거나 또는 소득이 높은 가구가 여성이 비시장재 생산 활동(가정)에 투입하는 여성의 시간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양육이 특히 엄마에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활동임을 인식할 때 여성의 시간 비용이 높을수록 자녀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자녀의 수가 감소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여성의 노동 공급이 출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며 출산과 여성의 노동시장 조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의 출발점이 되었고, Willis(1973)에 의해 시간 배분, 노동 공급,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이론적 틀이 제시되었으며, 이후 여성의 노동 공급과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분석 틀은 출산 또는 자녀 수와 아내의 노동 공급 시간 등에 대한 선택이 결혼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수정되지 않는다는 정태적 측면에서의 분석으로 각 자녀의 출산 시점, 출산 간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출산은 동태적(dynamic), 또는 생애 주기적(life cycle)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생애 주기 동안의 가격이나 소득 변화는 출산 수요의 시점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태적 분석은 생애 주기 동안 다양한 연령에서의 출산 간의 대체적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여성의 노동 공급,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출산 결정의 관계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출산에 대한 정태적, 동태적 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수요(출산)가 자녀의 가격(비용), 기타 소비재의 가격, 여성의 임금 수준과 같은 노동시장 조건, 가구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됨을 밝히고 있다.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결혼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보다 훨씬 더 방대하여 본 연구에서 이론적, 실증적 이슈들을 모두 다루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거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선행 연구를 정리하도록 한다.²⁷⁾

Simon and Tamura(2009)는 미국의 센서스 자료와 Annual Housing Surveys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 비용과 출산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 비용으로 이용한 지역별 방 1개당 평균 임대료(로그값)는 초혼 연령에 양(+)의 영향을, 총 자녀 수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당 임대료가 1 표준편차만큼 높아지면 초혼 연령은 0.2년 많아지고, 자녀 수는 0.036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지역별 방 1개당 평균 주택 가격을 주거 비용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Ström(2010)은 스웨덴의 종단자료인 Swedish Housing and Labor Market Career Cohort Study(HOLK)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 상태가 첫 출산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거 상태는 주택유형, 주택 점유 형태, 방 수 등을 고려하였으며 1972년에서 2005년까지의 기간을 이용하여 첫 출산 시점에 대한 위험률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방 수로 측정한 주거 면적이 첫 출산 위험률과 가장 높은 일관성을 보였으며, 주택 유형이나 주택 점유 형태 변수들은 코호트 집단별로 유의한 결

27)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해서는 Hotz 등(1997)과 김현숙 등(2006)을 참고할 것.

과와 유의하지 않은 결과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Öst(2012)는 자가 거주와 출산(첫째 아이)의 동시적 결정 과정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스웨덴의 종단 자료인 Swedish Housing and Labor Market Career Cohort Study(HOLK) 자료를 이용하여 자가 거주와 출산의 관계에 대한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자가 거주 방정식과 출산 방정식의 오차 항에 대한 상관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두 의사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64년생 코호트와 1974년 코호트 집단에서는 자가 거주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음(-)으로 추정되어 주거 비용이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4년 코호트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이 출산 확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는 젊은 가구는 미래의 경력을 위해 출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Yi and Zhang(2009)은 홍콩의 1971~2005년 기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 가격이 합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적분 검정 결과와 오차 수정 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주택 매매 가격은 장단기 모두 합계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 가격 1% 증가는 장기적으로 합계 출산율을 0.45%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etting and Kearney(2014)는 1997~2006년 기간 동안의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대도시 지역, 시간, 집단별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주택 매매 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 추정 결과 주택 매매 가격은 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가져오지만, 자가 거주 비율이 높을수록 주택 매매 가격의 부정적 영향(가격 효과)이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주택 자산 효과)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추정계수의 크기에 기초하여 주택 가격 1만 불 증가는 임차가구의

경우 2.4%의 출산율 감소를 가져오지만, 자가 거주 가구의 경우에는 5%의 출산율 증가를 가져오며, 미국의 평균 자가 거주 가구 비율을 감안하면 주택 매매 가격 1만 불 증가는 0.8%의 출산율 순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다른 효과를 보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실업률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서미숙(2013), 김민영, 황진영(2016)을 들 수 있다. 서미숙(2013)은 아파트 매매 가격 변화가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에 따라 출산 확률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와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매매 가격 변화가 전세 거주 가구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할수록 전세 거주 가구는 자가 거주 가구에 비해 출산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효과를 통해 계산된 영향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 10% 높을 때 전세 거주 가구는 자가 거주 가구에 비해 출산 확률이 약 1.06%~0.5%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김민영, 황진영(2016)은 2009~2013년 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16개 시도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 매매 가격과 주택 전세 가격이 합계출산율과 초산연령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주택 매매 가격 및 주택 전세 가격은 합계 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초산 연령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스템 GMM 모형 추정 결과에서 주택 매매 가격은 합계 출산율과 초산 연령에 유의한 추정계수를 보였으나 주택 전세 가격은 초산 연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실증분석모형

가. 결혼 결정 모형

결혼은 개인의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동태적 의사 결정이므로 실증 분석 모형도 이러한 동태적 측면을 반영하는 형태로 구축되어야 한다. 동태적 측면에서 결혼에 대한 실증 분석 모형 구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결혼은 양(quantity)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원적(binary) 선택이므로 종속 변수가 이원적 선택이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의 실증 분석 모형 구축이 요구된다. 분석 대상이 되는 개인(청년층에 속하는)은 매 시점마다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둘째, 동태적 의사 결정 과정을 연속적 시간(continuous time)으로 가정하여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비연속적 시간(discrete time)으로 가정하여 분석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연속적 시간 모형과 비연속적 시간 모형은 결과의 질적인 측면에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나 분석 자료의 처리와 효과 분석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가 대부분 연간 자료로 일정한 시간 간격(time interval)이 존재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연속적 시간을 가정한 동태적 실증 분석 모형을 구축하기로 한다.

비연속적 시간을 가정한 동태적 모형은 Allison(1982)의 모형을 활용한다. 청년가구원의 결혼은 미혼으로 생활할 때의 효용과 결혼하여 생활할 때의 효용을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만일 결혼하여 생활할 때의 효용이 결혼을 하지 않고 생활할 때의 효용보다 크면 청년가구원은 결혼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청년가구원의 결혼에 대한 의사 결정은 매 기간 이루어지며 자료의 기간(관찰 기간) 동안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

도 있는 특정한 사건(event)의 형태이다. 현실적으로 결혼이라는 사건은 연속적인 시간대의 특정 시점에서 일어나지만 실제 설문 조사와 같은 자료에서 결혼은 일정한 기간(interval)을 두고 측정될 것이다.

Allison(1982)은 이러한 시간의 비연속성(discrete time)을 고려하여 시간의 연속성을 가정한 Cox의 비례적 위험 모형과 유사한 추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위험률 모형 추정 시 이용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관찰 기간 동안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의 우측 절단(right censoring)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각 시점별 사건은 시간에 따라 값이 고정적인 변수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결혼이라는 사건과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는 결혼 여부와 결혼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위험률(hazard rate)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다. 결혼의 위험률을 $h_{it}(X_{it})$ 라 한다면 이는 벡터 X_{it} 라는 특성을 가진 어떤 청년가구원 i 가 t 시점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t 시점에 결혼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

T_i 를 임의의 청년가구원 i 가 결혼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확률 변수라 할 때 결혼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위험률은 다음과 같다.

$$h_{it} = P(T_i = t | T_i \geq t, X_{it}) \quad t = 1, 2, 3, \dots \quad (1)$$

결혼 위험률인 h_{it} 는 두 가지 요인들에 따라 변화된다. 첫째, 각 시점별 시간의 영향을 나타내는 기준 위험의 변동이며, 둘째는 기준 위험 이외에 결혼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동이다(Allison, 1982). 이를 로지스틱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_{it} = 1 / [1 + \exp(-\alpha' D_{it} - \beta' X_{it})] \quad (2)$$

여기서 D_{it} 는 시간 더미 변수 벡터로 청년가구원 i 가 j 시점에서 결혼을 하면($t = j$)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X_{it} 는 청년가구원 i 의 t 시점에서의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 벡터를 의미한다. 식 (2)에서 절편 항 벡터(α')는 각 시점에서의 기준 위험수준을 보여 주며, 기울기 추정계수 벡터(β')는 각 특성의 영향을 보여준다.

식 (2)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변환하면

$$\log\left(\frac{h_{it}}{1 - h_{it}}\right) = \alpha' D_{it} + \beta' X_{it} \quad (3)$$

식 (3)은 $t-1$ 시점까지 특정 청년가구원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시점 t 에 결혼할 오즈(odds)의 로그변환 값이 설명 변수와 선형함수 관계임을 보여준다.

식 (2)의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log L = \sum_{i=1}^n \sum_{j=1}^{t_i} y_{it} \log[h_{ij} / (1 - h_{ij})] + \sum_{i=1}^n \sum_{j=1}^{t_i} \log(1 - h_{ij}) \quad (4)$$

여기서 가구원 i 가 t 시점에서 결혼하였다면 해당 시점에서 $y_{it} = 1$, 그 이전 시점에서는 $y_{it} = 0$ 의 값을 갖고, 만일 모든 시점에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y_{it} = 0$ 의 값을 갖는다.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식 (4)을 극대화하는 α' 과 β' 을 구하게 된다. 28)

나. 출산 결정 모형

자녀의 출산 또한 이산적 형태의 사건이므로 결혼과 마찬가지로 위험률 모형을 통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험률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출발 시점에서 충분한 표본이 존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표본들의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한국노동패널자료의 경우 분석의 출발 시점(2004년)에서 청년층 가구의 출산 여부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대안적 추정 모형으로 인접한 두 시점(예를 들면 $t-1$ 년도와 t 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한 통합(pooled) 표본을 이용한 로짓 모형을 설정하기로 한다.²⁹⁾ 통합 표본을 통한 로짓 모형은 위험률 모형과 달리 사건(출산)의 발생 시점 또는 발생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나 사건 발생의 확률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다.

부부는 주어진 시간과 소득 제약 조건 및 여성 배우자의 노동 공급 조건에 기초하여 출산했을 때 얻게 되는 효용과 출산을 하지 않았을 때의 효용을 비교하여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부부 i 의 t 시점에서 출산에 따른 순이익(편익과 비용의 차이)을 잠재 변수 y_{it}^* 라 하고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변수 벡터를 Z_{it-1} 라 하면

$$y_{it}^* = \gamma' Z_{it-1} + \epsilon_{it} \quad (5)$$

여기서 γ 는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 벡터이며 ϵ_{it} 는 오차 항으로 분산이 $\pi^2/3$ 인 표준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한다.

28) 식 (4)의 도출과정은 Allison(1982)을 참고할 것.

29) 이러한 자료 구축 방법은 송헌재(2012)의 연구에서도 이용된 바 있다.

출산에 따른 순이득 y_{it}^* 는 자료를 통해 관찰되지 않으며 자료를 통해 관찰되는 것은 t 시점에서 출산을 하였는지 아닌지이다. 만일 $y_{it}^* > 0$ 이면 $y_{it} = 1$ (출산), $y_{it}^* \leq 0$ 이면 $y_{it} = 0$ (미출산)으로 관찰될 것이다. 출산 확률은 $\Lambda(\cdot)$ 을 로지스틱함수라 할 때

$$P(y_{it} = 1 | Z_{it-1}) = \text{prob}(\epsilon_{it} > -\gamma' Z_{it-1}) = \Lambda(\gamma' Z_{it-1}) \quad (6)$$

이고 이에 대한 로그우드함수는

$$\log L = \sum_{y_{it}=0} \ln[1 - \Lambda(\gamma' Z_{it-1})] + \sum_{y_{it}=1} \ln \Lambda(\gamma' Z_{it-1}) \quad (7)$$

이며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식 (7)를 극대화하는 추정계수 γ' 을 구하게 된다.

4. 자료 및 변수 측정

가. 자료

실증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7차 조사(2004년)에서 17차 조사(2014년)까지의 개인 및 가구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결혼 결정 요인 추정에 이용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구축하였다. 먼저 2004년 개인 자료를 이용하여 미혼 상태인 청년가구원 표본을 선정하였다. 청년가구원은 가구원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인 개인으로 정의하였으며 가구원의 혼인 상태는 개인용 조사 설문지의 응답 결과를 이

용하였다. 이 설문에서는 개인의 혼인 상태에 대해 ‘미혼’, ‘기혼이며 배우자 있음’, ‘별거’, ‘이혼’, ‘사별’ 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에 미혼 상태인 청년가구원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첫 결혼(초혼)시점을 추적하였다.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t-1$ 년에 ‘미혼’ 상태인 청년가구원이 t 년도에 ‘기혼이며 배우자 있음’의 상태로 전환되면 t 년도에 결혼한 것으로 보았다. 결혼 결정 요인은 위험률 모형으로 추정하므로 위험률 모형에 적절한 표본 구성에 맞도록 2004년에서 2014년 기간 동안 첫 결혼 시점까지(또는 계속 미혼 상태인 경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관찰되지 않은 청년가구원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첫 결혼 시점까지(또는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관찰된 청년가구원은 총 591명으로 각 청년가구원을 첫 결혼 시점까지(또는 2014년까지) 연도별로 누적하여 패널화하면 총 3,638개의 개인-연도별 관찰치가 생성된다.³⁰⁾

출산 결정 요인 추정에 이용되는 자료도 결혼 결정 요인 추정 자료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청년가구원의 결혼(초혼)과 다르게 출산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등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만일 첫째 아이의 출산만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결혼 결정 요인 추정 자료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첫째 아이 출산보다는 둘째 아이 이상의 출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첫 아이 출산에 대한 분석은 그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만일 첫째 아이 출산에 초점을 둔다 하더라도 분석의 출발 시점(본 연구에서는 2004년)

30) 추정에 이용되는 최종 표본(개인-연도별 관찰치)은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청년가구원뿐 아니라 분가하여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한 청년가구원도 포함하고 있으며, 결혼 결정 요인 추정에 이용되는 설명 변수가 누락되거나 측정이 불가능한 표본은 제외하였다.

에서 아이가 아직 없는 잠재적 출산 대상 가구가 충분하게 존재하여 이 잠재적 출산 대상 청년가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출산을 하였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2004년 아이가 없는 잠재적 출산 대상 가구는 매우 적게(162가구) 파악되어 현실적으로 결혼 결정 요인과 같은 위험률 모형을 사용하기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출산 결정 요인 추정에 이용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먼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인접 연도($t-1$ 년도와 t 년도) 간의 자료를 결합하여 $t-1$ 년도와 t 년도에 동일한 남성 배우자와 여성 배우자가 같이 존재하는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이고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40세 미만인 가구를 선정하였다. 또한 기타 가구원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배우자(남성, 여성)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주거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 점유 형태가 자가 거주와 임차 거주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임차가구의 경우 주거 비용(단위당 임대료) 증가는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자가 거주 가구의 경우 주거 비용(사용자 비용)은 단위당 주택 가격뿐 아니라 향후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본 이득이 높을수록 자산의 증가를 가져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가 청년 주거 빈곤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분석에서는 청년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출산과 관련하여 $t-1$ 년도와 t 년도 사이에 출산이 있었는지를 파악하였다. 출산 여부는 가구 자료 중 기존 가구원에 추가된 가구원의 추가 이유에 대한 설문을 이용하였다. 추가 가구원의 추가 이유는 ‘출생’, ‘입양’, ‘혼인’, ‘합가’,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구원이 추가되고 추가 이유가 ‘출생’인 경우 출산으로 정의하였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인

접 연도 간의 자료를 결합하여 구축한 통합 임차가구 표본은 4,081가구이다.

나. 종속 변수

결혼과 출산은 이원적(binary) 변수로서 해당 사건(결혼 또는 출산)이 발생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청년가구의 결혼 여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4년 미혼 상태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청년가구가 결혼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고 미혼으로 남아 있는 경우 0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가구의 출산 여부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출산이 있었으면 1, 그렇지 않았으면 0의 값을 갖는다.

다. 설명변수

1) 결혼 결정 관련 설명 변수

일반적으로 결혼에 대한 결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 배우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탐색, 결혼 행사 및 결혼 이후 생활에 대한 준비 등 여러 가지 사전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료에서 관측된 t 년도의 결혼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이 t 년도의 영향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다고 하기 보다는 그 이전의 영향 변수들의 값에 의해 설명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 년도의 결혼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이 직전 연도($t-1$ 년도)의 영향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청년가구원의 결혼 결정에 영향을 주는 설명 변수는 가구원 특성, 가구 특성, 주거 비용으로 구성된다. 가구원 특성으로는 가구원의 성별(여성 = 1), 연령 및 연령 제곱, 근로소득을 고려하였다.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한국노동패널의 개인 자료 중 주된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을 이용하였다.³¹⁾ 가구 특성 변수는 주로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였는데 가구소득과 가구의 순자산³²⁾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가구소득이란 청년가구원이 특정 가구의 가구원으로 속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에서 이 청년가구원의 근로소득을 뺀 값을 의미하며, 청년가구원이 독립된 가구로 파악된 경우에는 청년가구원의 원가구(부모가구)의 가구소득을 합하여 구하였다. 가구 순자산은 부동산 자산(거주 주택 시가 또는 임차 보증금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 시가 또는 임차 보증금의 합)과 금융 자산의 합에서 부채를 뺀 값으로 계산하였다.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청년가구원이 독립된 가구로 파악된 경우에는 원가구의 순자산을 합하였다.

주거 비용으로는 청년가구원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광역자치단체 기준)에서의 단위당 전환 임대료 또는 단위당 주택 매매 가격을 이용하였다. 먼저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2014년의 월별 단위당(m^2) 평균 주택 전세 가격과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을 통해 연평균 단위당 평균 주택 전세 가격과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을 구한 후 각 연도별 주택 전세 가격 지수 변화율과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변화율을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단위당 평균 주택 전세 가격과 주택 매매 가격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전환 임대료는 이렇게 구한 단위당 평균 주택 전세 가격에 각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지역별 전월

31) 한국노동패널의 개인 자료 중 소득에 대해서는 주된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 전년도 세 전 근로소득과 세후 근로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데 주된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표본이 가장 많았다. 이 세 가지 소득 값을 비교해 본 결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 전환율은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전월세 전환율(2010년까지)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전월세 전환율(2011년 이후)을 이용하였다.³²⁾

마지막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므로 위험률의 시간적 의존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연도별 시점 더미를 추가하였으며 소득, 순자산, 전환 임대료 및 주택 매매 가격은 각 지역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용하여 2005년 기준 실질 값으로 환산하여 추정에 이용하였다.

2) 출산 결정 관련 설명 변수

청년가구의 결혼 결정과 마찬가지로 청년 배우자들의 출산에 대한 결정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송헌재(2012)의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산 시점과 임신 시점에서는 약 1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 시점은 출산 시점이 아니라 임신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도 t 년도의 출산 결정 요인 추정에 이용되는 설명 변수들은 $t-1$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설명 변수로는 남성 배우자의 연령, 여성 배우자의 연령 및 연령 제곱, 여성 배우자의 건강 상태(나쁨=1), 기존 자녀 수 등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들과 소득 및 가구 순자산과 같은 경제적 요인, 그리고 주거 비용으로 전환 임대료를 이용하였다.

소득 변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소득을 가정하고 각 소득별로 별도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첫 번째 경우는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가구 소득(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합한 가구

32) 전월세 전환율은 두 기관에서 공표한 기간(2011년 1~5월) 동안 서로 다르므로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의철(2016)의 연구를 참조할 것.

총소득을 추정에 이용하였다. 이 경우는 여성 배우자 노동 공급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가구총소득과 순자산과 같은 가구 전체의 경제적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추정에 이용하였다. 이론적으로 가구균등화소득이 가구총소득에 비해 소득 빈곤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지표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 배우자의 출산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기존 자녀 수이므로 가구균등화소득은 기존 자녀 수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게 되며 따라서 기존 자녀 수와 가구균등화소득을 모두 설명 변수로 포함시키게 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총소득을 설명 변수로 이용하였다.³³⁾

한편 일련의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의 노동 공급과 출산은 동시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출산은 출산 자체뿐 아니라 신생아의 육아 등 일정 기간 동안의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 기간 동안 출산 대상자인 여성 배우자의 노동 공급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³⁴⁾ 출산과 근로의 동시성(simultaneity)을 고려한다면 출산의 기회비용은 자료를 통해서 관측되는 근로소득(보다 엄밀하게는 시간 단위당 임금)이 아니라 여성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근로 능력을 반영하는 잠재근로소득이 보다 적절한 변수일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경우는 여성 배우자 노동 공급의 내생성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여성 배우자의 잠재근로소득을 추정해 설명 변수로 이용하였으며,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남성 배우자

33) 가구균등화소득은 가구총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는데 추정에 이용된 표본 청년가구(4,081가구)의 경우 가구총소득과 가구균등화소득의 상관계수는 0.97로 계산되므로 가구총소득을 통해 소득 빈곤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4) 출산은 그 자체의 의미뿐 아니라 임신, 출산, 신생아 육아 등 출산과 관련하여 투입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여성 배우자는 주어진 시간을 출산과 관련된 시간과 근로시간으로 최적 배분해야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 여부 또는 근로소득은 출산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이를 가구총소득과 구별하기 위해 가구 소득으로 명명함)을 별도의 소득 변수로 추정에 이용하였다.

여성 배우자의 잠재근로소득은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여성 배우자의 근로 여부에 대한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 결과로 얻어지는 역밀스율을 추가 설명 변수로 사용하여 2단계에서 근로 상태에 있는 여성 배우자 표본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을 추정하였으며, 추정 결과로 얻어지는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모든 여성 배우자에 대한 잠재 근로소득을 계산하였다.³⁵⁾

주거 비용 변수로는 각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광역자치단체 기준)별 단위(m^2)당 전환 임대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표본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로 구성되므로 소득, 순자산, 전환 임대료는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를 이용하여 2005년 기준 실질 값으로 환산하여 추정에 이용하였고, 시점별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간 더미 변수를 설명 변수에 추가하였다.

라. 기초 통계량

1) 결혼 결정 요인

〈표 4-3-1〉은 표본으로 추출된 2004년 미혼 상태인 591명의 청년가구의 2014년까지의 결혼 추세를 보여 준다.

35) 여성 배우자의 잠재 근로소득에 대한 추정 결과는 부록에 설명되어 있다.

〈표 4-3-1〉 청년가구의 결혼 위험률과 생존율

연도	총관찰 가구원	결혼 가구원	미혼 가구원	위험률	생존율
2005	591	70	521	0.118	0.882
2006	521	65	456	0.125	0.772
2007	456	54	402	0.118	0.680
2008	402	31	371	0.077	0.628
2009	371	43	328	0.116	0.555
2010	328	49	279	0.149	0.472
2011	279	27	252	0.097	0.426
2012	252	25	227	0.099	0.384
2013	227	16	211	0.070	0.357
2014	211	7	204	0.033	0.345
합계	3,638	387	3,251		

시간이 지나면서 분석의 출발 시점에서 관찰된 청년가구원 중 일부가 미혼 상태에서 결혼 상태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험률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위험률은 2010년까지 2008년을 제외하면 10%를 넘고 있으나 2011년 이후 10% 이하로 감소하였다. 2014년까지 미혼 상태가 지속된 청년가구원은 204명으로 청년가구의 표본의 34.5%로 높게 나타나며 모형 추정 시 우측 절단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표 4-3-2〉는 결혼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 변수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 준다.

〈표 4-3-2〉 기초 통계량(결혼 결정 요인)

구분	결혼=0		결혼=1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가구원 성별(여성=1)	0.43	0.49	0.51	0.50	0.43
가구원 연령	30.38	5.66	29.63	3.69	30.30
가구원 근로소득(월, 백만 원)	1.06	0.88	1.39	0.97	1.09
가구소득(연, 천만 원)	2.97	2.45	3.41	3.16	3.01
가구 순자산(천만 원)	19.05	31.32	21.54	34.19	19.32
전환 임대료(연, 만 원)	11.61	3.00	11.60	3.13	11.61
주택 매매 가격(백만 원)	2.19	1.07	2.16	1.13	2.19
표본 수	3,251		387		3,638

주: 가구소득은 결혼 대상자 이외 가구원(원가구 포함)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 순자산은 결혼 대상자가 분가하지 않은 경우 결혼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의 순자산이며, 결혼 대상자가 분가 가구인 경우 해당 분가 가구의 순자산과 원가구 순자산의 합.

추정에 이용되는 모든 변수들의 측정이 가능한 청년가구원의 총관찰치는 3,638개로 이 중 10.6%인 387명이 2005년 이후 2014년까지 혼인상태를 미혼에서 결혼으로 전환하였다. 표본 가구원의 약 43%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 상태로 전환한 가구원 중 여성의 비율(51%)이 미혼 상태로 남아 있는 가구원 중 여성의 비율(43%)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의 연령은 결혼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가구원 근로소득의 평균은 결혼 상태로 전환한 가구원 소득의 평균(월 139만 원)이 계속 미혼 상태로 남아 있는 가구원 소득의 평균(월 106만 원)보다 약 31%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결혼 대상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결혼 대상 가구원이 분가한 경우 원가구소득 포함)으로 계산된 가구소득도 결혼 상태로 전환한 가구의 가구소득 평균(연 3,410만 원)이 미혼 상태로 남아 있는 가구원이 속해 있는 가구의 가구소

득 평균(연 2,970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 순자산의 평균은 결혼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가구원이 여성일수록,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 위험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환 임대료와 주택 매매 가격의 평균은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았다.

2) 출산 결정 요인

〈표 4-3-3〉은 출산 결정 요인 추정에 이용되는 배우자가 있는 청년가구 표본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 준다. 표본 가구의 남성 배우자와 여성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출산이 이루어진 가구가 출산이 없었던 가구보다 약간 낮았으며, 기존 자녀 수의 평균은 출산이 없었던 가구는 약 1.4명, 출산이 이루어진 가구는 약 0.6명으로 출산이 없었던 가구가 약 2.3배 많았다. 여성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나쁨으로 응답한 가구 비율은 그리 높지 않으나 출산이 없었던 가구 중 여성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비율(0.04)이 출산이 있었던 가구 중 여성 배우자 건강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비율(0.01)보다 높게 나타났다.³⁶⁾

한편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잠재근로소득, 그리고 가구소득(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총소득(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순자산 등과 같은 경제적 변수들의 평균은 출산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환 임대료의 평균 또한 출산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36) 여성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개인용 자료 중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였으며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와 '건강이 아주 안 좋다'로 응답한 경우,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측정하였다.

〈표 4-3-3〉 기초 통계량(출산 결정 요인)

구분	출산=0		출산=1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남성 배우자 연령	34.38	3.45	32.29	3.36	34.08
여성 배우자 연령	32.40	3.55	30.36	3.04	32.10
기존 자녀 수	1.43	0.79	0.63	0.66	1.31
여성 배우자 건강상태(나쁨=1)	0.04	0.20	0.01	0.12	0.04
여성 배우자 근로소득(월, 백만 원)	0.52	0.89	0.54	0.88	0.52
여성 배우자 잠재근로소득(월, 백만 원)	1.50	0.23	1.52	0.23	1.51
가구소득(연, 천만 원)	2.78	2.09	2.72	1.74	2.77
가구총소득(연, 천만 원)	3.41	2.36	3.37	2.15	3.40
가구 순자산(천만 원)	7.65	12.30	7.68	10.45	7.66
전환 임대료(연, 만 원)	11.84	3.07	11.83	3.07	11.84
주택 매매 가격(백만 원)	2.29	1.11	2.28	1.12	2.29
표본 수	3,487		594		4,081

5. 추정 결과

가. 결혼 결정 요인 추정 결과

〈표 4-3-4〉는 청년가구원의 결혼 결정 요인에 대한 위험률 모형 추정 결과이다. 모형 (A)에서는 주택시장 여건으로 실질 전환 임대료를 이용하였으며, 모형 (B)에서는 실질 주택 매매 가격을 이용하였다. 로그우도 검정 통계량($-2[\log L(\beta) - \log L(0)]$)의 값은 유의 수준 1%에서 χ^2 임계치 (37.57)를 초과하므로 모형 전체 설명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가구원의 성별(여성=1), 연령, 연령 제곱, 가구소득 변수는 유의 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가구 순자산 변수는 결혼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환 임대료와 전환 임대료 제곱은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하였으며, 주택 매매 가격과 주택 매매 가격 제곱은 유의 수준 1%에서 유의하였다.

청년가구원이 여성이면, 남성인 경우에 비해 결혼 위험률이 높으며, 가구원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위험률은 증가하나 가구원 연령 제곱 변수의 추정계수가 음(-)이므로 청년가구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이른 시점에서 결혼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에서는 결혼이 더 늦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보면 청년가구원의 연령이 31세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 위험률은 높으나 그 이후는 결혼 위험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⁷⁾

〈표 4-3-4〉 결혼 결정 요인 위험률 모형 추정 결과

구분	모형 (A)		모형 (B)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시간 더미(2004년=1)	-22.638 ***	-6.71	-24.303 ***	-7.49
시간 더미(2005년=1)	-22.652 ***	-6.70	-24.332 ***	-7.49
시간 더미(2006년=1)	-22.857 ***	-6.77	-24.531 ***	-7.54
시간 더미(2007년=1)	-23.428 ***	-6.92	-25.115 ***	-7.69
시간 더미(2008년=1)	-23.012 ***	-6.79	-24.700 ***	-7.54
시간 더미(2009년=1)	-22.726 ***	-6.70	-24.411 ***	-7.45
시간 더미(2010년=1)	-23.203 ***	-6.86	-24.890 ***	-7.62
시간 더미(2011년=1)	-23.103 ***	-6.80	-24.764 ***	-7.56
시간 더미(2012년=1)	-23.387 ***	-6.91	-25.025 ***	-7.67

37) 관련 변수의 추정계수가 양(+)이면 결혼 위험률이 높고, 음(-)이면 결혼 위험률이 낮다. 위험률은 $t-1$ 시점까지 사건(여기서는 결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t 시점에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하므로 결혼 위험률이 높다는 것은 보다 이른 시점에서 결혼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모형 (A)		모형 (B)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시간 더미(2013년=1)	-24.090 ***	-6.97	-25.713 ***	-7.69
성별(여성=1)	0.839 ***	3.96	0.856 ***	4.01
연령	1.487 ***	6.84	1.498 ***	6.84
연령 제곱	-0.024 ***	-6.64	-0.024 ***	-6.63
가구원 근로소득	0.477 ***	4.28	0.488 ***	4.35
여성×가구원 근로소득	-0.259 *	-1.85	-0.266 *	-1.89
가구소득	0.050 ***	2.56	0.051 ***	2.61
가구 순자산	0.002	0.00	0.100	-0.05
전환 임대료	-0.420 **	-2.13		
전환 임대료 제곱	0.016 **	2.03		
주택 매매 가격			-1.033 ***	-3.10
주택 매매 가격 제곱			0.182 ***	2.93
χ^2 검정 통계량(1% 임계치)	1,337.56(37.57)		1,327.27(37.57)	
표본 수	3,638		3,638	

주: 1. 순자산 추정계수는 원래 추정계수 × 1000

2. *** p < 0.01, ** p < 0.05, * p < 0.1.

한편 청년가구원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청년가구원의 근로활동 및 근로소득 수준이 결혼 결정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년가구원의 근로소득이 결혼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과 청년가구원 근로소득의 상호 작용 항의 추정계수가 음(-)으로 나타나 청년가구원의 근로소득이 결혼 위험률에 미치는 효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청년가구원이 속해 있는 가구(원가구 포함)의 소득 또한 결혼 위험률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

독도 청년 가구원의 결혼 가능성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주거 비용의 대리 변수로 사용한 전환 임대료와 주택 매매 가격은 결혼 위험률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환임대료 제공 변수와 주택 매매 가격 제공 변수의 추정계수는 양(+)으로 나타나 전환 임대료와 주택 매매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가구원의 결혼 위험률은 낮으나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비선형 관계가 존재하였다.³⁸⁾

〈표 4-3-5〉는 추정 결과에 기초하여 설명 변수들의 결혼 위험률에 대한 한계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한계효과는 설명 변수의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청년가구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성별이 남성인 경우에 비해 결혼 위험률은 약 6% 포인트 높으며, 청년가구원의 연령이 1세 많으면 결혼 위험률은 0.3%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청년가구원의 근로 소득이 월 백만 원 많으면 결혼 위험률은 약 4% 포인트, 원가구를 포함하여 청년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소득(청년가구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이 연 1천만 원을 많으면 결혼 위험률은 0.5% 포인트 증가한다.

38) 청년가구원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전환 임대료와 주택 매매 가격(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과 소득 대비 주택 매매 가격 비율)은 청년가구원이 속해 있는 가구의 주택 관련 의사 결정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되므로 설명 변수로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청년가구원 또는 청년가구원이 속해 있는 가구의 의사 결정 결과와 무관한 외생적 변수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별(광역자치단체) 단위당 전환 임대료와 주택 매매 가격을 이용하였다.

〈표 4-3-5〉 설명변수 변화에 따른 결혼 위험률 한계효과

구분		한계효과	
설명 변수	변화 단위	모형 (A)	모형 (B)
가구원 성별(여성=1)	남성 대비	0.0644	0.0621
가구원 연령	1세	0.0031	0.0032
가구원 근로소득	백만 원(월)	0.0408	0.0396
가구소득	천만 원(년)	0.0056	0.0054
단위당 전환 임대료	1만 원(연)	-0.0061	
단위당 주택 매매 가격	100만 원		-0.0252

주: 한계효과는 설명 변수의 평균에서 계산하였으며, 평균에서의 결혼 위험률은 모형 (A)의 경우 0.112, 모형 (B)의 경우 0.106임.

그러나 단위(m^2)당 전환 임대료가 월 1만 원 많으면 결혼 위험률은 0.6% 포인트 감소하고, 단위당 주택 매매 가격이 백만 원 높으면 결혼 위험률은 2.5% 포인트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단위당 월 임대료 1만 원의 변화가 결혼 위험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청년가구의 근로소득 월 10만 원, 청년가구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의 연 1천만 원 변화가 결혼 위험률에 미치는 한계효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나. 출산 결정 요인 추정 결과

〈표 4-3-6〉과 〈표 4-3-7〉은 청년가구의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짓 모형 추정 결과이다. 〈표 4-3-6〉은 가구총소득을 소득변수로 이용한 것이며 〈표 4-3-7〉은 여성 배우자의 잠재근로소득과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을 추정하여 이용한 결과이다.

〈표 4-3-6〉 출산 결정 요인 추정 결과 1

구분	추정계수	t-값
상수항	-11.651 ***	-3.05
시간 더미(2004년=1)	0.420 *	1.67
시간 더미(2005년=1)	0.408	1.62
시간 더미(2006년=1)	0.515 **	2.09
시간 더미(2007년=1)	0.885 ***	3.59
시간 더미(2008년=1)	0.348	1.29
시간 더미(2009년=1)	0.678 ***	2.72
시간 더미(2010년=1)	0.733 ***	2.91
시간 더미(2011년=1)	0.123	0.45
시간 더미(2012년=1)	0.693 ***	2.76
남성 배우자 연령	-0.034 *	-1.65
여성 배우자 연령	0.895 ***	3.65
여성 배우자 연령 제곱	-0.015 ***	-3.86
기존 자녀 수	-1.189 ***	-16.15
여성 배우자 건강상태(나쁨=1)	-1.128 ***	-3.06
가구총소득	-0.311 ***	-3.06
가구 순자산	0.005	0.68
전환 임대료	-0.083 ***	-2.77
가구총소득×전환 임대료	0.021 ***	2.97
χ^2 검정 통계량(1% 임계치)	414.80(34.81)	
표본 수	4,081	

주: 1. *** $p < 0.01$, ** $p < 0.05$, * $p < 0.1$.

2. t-값은 가구 번호로 군집한(clustering)한 robust standard error를 통해 계산함.

〈표 4-3-6〉과 〈표 4-3-7〉의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χ^2 검정 통계량의 값이 유의 수준 1%에서의 임계치를 초과하여 모형 전체의 적합성은 양호하였다. 청년가구 여성 배우자의 출산 확률은 남성 배우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며,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나 29세~30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청년가구의 기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출산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총소득은 출산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출산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출산(또는 자녀 수)의 관계는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quality-quantity 모형과 같이 부모가 자녀의 수뿐만 아니라 자녀의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면 소득 변화가 자녀의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데 자녀의 수에 대한 잠재 가격은 자녀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잠재 가격은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소득 증가의 효과는 자녀의 수에 대한 잠재 가격과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잠재 가격의 비율(상대 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득 효과와 상대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발된(induced) 대체 효과로 나눌 수 있다. 만일 유발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가구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요인은 여성 배우자의 노동과 임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여성 배우자의 노동 공급과 이에 따른 근로소득은 출산에 완전히 외생적인 변수가 아니라 출산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여성 배우자의 근로와 출산 사이에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높다는 것은 출산의 (기회)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가구총소득(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포함한)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요인들의 종합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환 임대료로 측정한 주거 비용은 출산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환 임대료가 높을수록 주거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출산과 관련된 제반 비용들을 주어진 소득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출산을 기피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구총소득과 전환 임대료의 교차 항에 대한 추정계수는 양(+)으로 나타나 주어진 전환 임대료에서 가구총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주거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가구총소득이 낮은 청년가구일수록 주거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3-7〉은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소득 변수를 여성 배우자의 잠재근로소득과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남성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가구의 비근로소득의 합)으로 나누어 각각을 추정에 이용한 결과이다.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들은 〈표 4-3-6〉과 유사한 추정 결과를 보였다.

여성 배우자의 잠재근로소득과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환 임대료 변수는 유의 수준 10%에서, 전환 임대료와 가구소득의 상호 작용 항의 추정계수는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과 〈표 4-3-7〉에서 보여 준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전환 임대료로 측정한 주거 비용은 청년가구의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3-7〉 출산 결정 요인 추정 결과 2

구분	추정계수	t-값
상수항	-12.139 ***	-3.15
시간 더미(2004년=1)	0.452 *	1.77
시간 더미(2005년=1)	0.439 *	1.74
시간 더미(2006년=1)	0.556 **	2.25
시간 더미(2007년=1)	0.907 ***	3.68
시간 더미(2008년=1)	0.376	1.40
시간 더미(2009년=1)	0.695 ***	2.76
시간 더미(2010년=1)	0.733 ***	2.89
시간 더미(2011년=1)	0.136	0.50
시간 더미(2012년=1)	0.703 ***	2.81
남성 배우자 연령	-0.036 *	-1.70
여성 배우자 연령	0.896 ***	3.54
여성 배우자 연령 제곱	-0.015 ***	-3.75
기존 자녀 수	-1.176 ***	-15.94
여성 배우자 건강상태(나쁨=1)	-1.117 ***	-3.04
여성 배우자 잠재근로소득	-0.134	-0.52
가구소득	-0.130	-1.60
가구 순자산	0.003	0.50
전환 임대료	-0.041 *	-1.70
가구소득×전환 임대료	0.011 **	1.97
χ^2 검정 통계량(1% 임계치)	422.64(36.19)	
표본 수	4,081	

주: 1. 가구소득은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남성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임.

2. *** $p < 0.01$, ** $p < 0.05$, * $p < 0.1$.

3. t-값은 가구 번호로 군집한(clustering)한 robust standard error를 통해 계산함.

〈표 4-3-8〉은 〈표 4-3-6〉과 〈표 4-3-7〉의 추정 결과에 기초하여 계산한 각 설명 변수의 한계효과이다. 한계효과는 표본의 평균에서 계산하였다. 남성 배우자 연령이 1세 높아지면 출산 확률은 약 0.3% 포인트 감소하며, 여성 배우자 연령이 1세 높아지면 출산 확률은 약 0.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자녀 수의 한계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기존 자녀 수가 1명 더 많으면 출산 확률은 약 12% 포인트 감소한다. 한편 가구총소득이 연 1천만 원 많으면 출산확률은 0.6% 포인트 감소하며, 단위당 전환 임대료가 월 1만 원 높아지면 출산 확률은 0.1%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표 4-3-8〉 설명 변수 변화에 따른 출산 확률 한계효과

구분		한계효과	
설명 변수	변화 단위	추정 결과 1	추정 결과 2
남성 배우자 연령	세	-0.0033	-0.0035
여성 배우자 연령	세	-0.0084	-0.0085
기존 자녀 수	명	-0.1159	-0.1166
여성 배우자 건강 상태(나쁨=1)	나쁘지 않음 대비	-0.1099	-0.1108
가구총소득	천만 원(연)	-0.0057	
단위당 전환 임대료	만 원(월)	-0.0010	-0.0010

한편 저출산의 문제는 1명의 자녀보다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가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 및 주거 비용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기 위해 표본을 1명의 자녀를 둔 청년 임차가구로 한정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표 4-3-9〉는 소득과 주거 비용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를 보여 준다.

가구총소득을 설명 변수로 이용한 경우에는 전환 임대료와 가구총소득

과 전환 임대료의 상호 작용 항에 대한 추정계수는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구소득을 설명 변수로 이용한 경우에는 전환 임대료의 추정계수는 유의 수준 10%에서, 가구소득과 전환 임대료의 상호 작용 항에 대한 추정계수는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환 임대료가 출산 확률에 미치는 방향은 기존 자녀 수를 제한하지 않은 추정 결과와 동일하였다.

〈표 4-3-9〉 출산 결정 요인 추정 결과(기존 자녀 수가 1명 이상인 가구 표본)

	추정계수	t-값	χ^2 검정 통계량
가구총소득	-0.199 *	-1.89	198.07
전환 임대료	-0.067 **	-1.97	
가구총소득×전환 임대료	0.016 **	2.01	
가구소득	-0.134	-1.55	195.28
전환 임대료	-0.048 *	-1.68	
가구소득×전환 임대료	0.013 **	2.03	

주: 1. 총표본 수 3,316 가구

2. 상수항, 연도 더미,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순자산 변수들을 추정에 포함하였으나 표에서는 생략함.

3. *** $p < 0.01$, ** $p < 0.05$, * $p < 0.1$.

4. t-값은 가구번호로 군집한(clustering)한 robust standard error를 통해 계산함.

6. 함의

본 절에서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과 주거비용에 초점을 두어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7차 연도(2004년)에서 17차 연도(2014년) 개인 및 가구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주거 비용 측정을 위해 KB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부수적으로 활용하였다. 개인의 결혼 결정 요인은 2004년 미혼 상태인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인 개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결혼 여부를 2014년까지 추적하여 비연속적 시간을 가정한 비례적 위험 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출산 결정 요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인접 연도($t-1$ 년도와 t 년도)동안 남성 배우자와 여성 배우자가 혼인 상태인 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이고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임차가구를 선정하여 로짓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개인의 결혼 결정 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결혼 위험률은 약 31세까지 높아지다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이른 시점에 결혼할 가능성이 높았다. 개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결혼 위험률이 높으며, 그 효과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결혼 대상자 이외의 기타 가구원의 실질 소득이 많을수록 결혼 위험률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대상자의 소득뿐 아니라 결혼 대상자의 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위험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환 임대료로 측정한 실질 주거 비용과 실질 주택 매매 가격이 높을수록 결혼 위험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 배우자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 확률은 감소하며, 여성 배우자 연령이 약 29세까지는 출산 확률이 높아지다 그 이후 연령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출산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 전체의 실질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결과에는 자녀의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여성 배우자의 시간 비용의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여성 배우자의 잠

재근로소득과 기타 가구소득으로 구분한 추정 결과에서 소득 변수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질 주거 비용과 실질 주택 매매 가격은 출산 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크게 측정되어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주거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둘째 아이 이상의 출산 확률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실증 분석 결과 소득과 주거 비용은 청년 개인의 결혼 및 청년 부부 임차가구의 출산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 비용이 높을수록 결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거 비용이 높을수록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경제적 여건과 주거 상태에 특화된 다양한 소득 및 주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과제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청년층의 빈곤 규모의 추이와 양상을 살펴보고 청년가구 유형별로 주거 문제 실태를 진단하였으며, 이러한 빈곤과 주거 문제가 미치는 영향을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인 청년층의 주거 문제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먼저 현세대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 및 주거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태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보면,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 및 주거 빈곤 현상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청년 빈곤율의 경우 노인 빈곤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상대 빈곤율이 2006년 7.3%에서 2015년에는 5.8%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층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19세~24세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 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빈곤의 특성을 좀 더 세분하여 보면 미혼이면서 여성보다는 남성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았으며, 노동시장 조건에서도 상용직 보다는 임시·일용,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의 빈곤율이 높았다. 특히 실업에 놓인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았으며, 가구 형태로는 혼자 사는 청년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1인가구의 경우 상용직 56.76%, 자영자 12.56%로 다른 청년가구 유형에 비해 상용직의 비율은 낮고, 자영자의 비율은 높다는 점에서 빈곤화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 볼

수 있다. 빈곤 지속성에서도 한 번 빈곤을 경험한 청년의 장기빈곤을 경험하는 비중이 18.0%로 높았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가 청년층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여 부채 규모가 2006년 3000여만 원에서 2014년에는 5500여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청년층의 주거 상황과 주거 빈곤을 보면 청년가구주가가구는 월세 비중이 높았다. 무엇보다 청년1인가구(보증부 월세 58.32%, 월세 3.97%)의 보증부 월세 및 월세 거주 비율이 높게 분석되었는데, 청년층에게는 월세 즉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분석에서도 빈곤한 청년가구주가가구와 빈곤하지 않은 청년가구주가가구의 임대료 비율이 약 2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빈곤한 청년가구주가가구의 RIR 20% 이상은 73.33%, RIR 30% 이상은 60.22%로 청년가구주가가구의 주거비 과부담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청년층 내에서 가구유형별로 최저주거기준미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있는 청년가구와 청년 1인가구가 청년부부가구 등 다른 청년가구 유형들에 비하여 미달가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념할 점은 이들 청년1인가구와 자녀를 둔 청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미달인 주택에 생활하면서 임대료도 가처분소득 20%를 넘는 주거빈곤 상황에 처한 가구의 비중도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제도는 청년가구 유형 중 대학생 및 신혼부부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미혼 1인가구와 자녀양육 중인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가구유형별로 당면하고 있는 주거문제의 양상을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소득과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의 관련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개인의 결혼 결정 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 개인의 결혼 위험률은 약 31세까지 높아지다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

에 비해 보다 이른 시점에 결혼할 가능성이 높았다. 개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결혼 위험률이 높으며, 그 효과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결혼 대상자 이외의 기타 가구원의 실질 소득이 많을수록 결혼 위험률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전환 임대료로 측정한 실질 주거 비용과 실질 주택 매매 가격이 높을수록 결혼 위험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어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 가구 전체의 실질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여성 배우자의 잠재근로소득과 기타 가구소득으로 구분한 추정 결과에서 소득 변수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 주거 비용과 실질 주택 매매 가격은 출산 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크게 측정되어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주거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과제

본 연구에서 청년층의 빈곤 및 주거 문제의 실태 분석과 함께 빈곤 청년층의 주거 지원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의 관련성도 함께 분석해 보았다. 청년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안선영 등, 2010). 첫째, 청년가구의 과중한 주거비 부담은 결혼준비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만혼(晩婚) 혹은 비혼(非婚)을 야기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

운 청년가구일수록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리적 이동이 제약될 수 있어 미래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셋째, 주거비 부담 과중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경우 가족내 갈등 또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향후 예견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그동안 사회에서 깊이 살펴보지 못했던 청년층이 빈곤과 주거 문제에 깊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청년가구 유형에 따라서 그 정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들어 국내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구조적 측면에 불과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타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소득 및 주거 빈곤은 생존과 연계된 것이며, 무엇보다 청년층의 소득 및 주거 빈곤 문제는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한 번 빈곤 경험 시 장기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탈빈곤을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청년은 사회복지와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정책에서조차 가장 소외되어있는 집단이었다. 따라서 청년에 표적화된 복지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층의 주거 문제에 대응하여 주거 복지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여유진, 2015).

무엇보다 청년층의 빈곤 문제는 노동시장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빈곤 경험 청년층에 실업, 임시·일용, 자영업 등 불안정 노동시장 참여자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 노동시장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 등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층은 공공

부조 제도를 통한 긴급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지원 시 과도한 선정 및 급여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진입을 위해 구직이나 교육 중에 있는 청년가구는 최근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는 새로운 주거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거 지원 관련해서도 최저주거기준 이하, 과도한 임대료 등으로 인한 부담이 저소득 청년층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년층 주거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청년층이 일을 하는 직장 혹은 공단 등과 인접한 지역에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도록 하고 입주 조건을 완화하여 빈곤 및 취약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안정적 주거 지원은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탈빈곤을 촉진하게 되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청년층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 및 주거 실태의 양상을 고려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문제에 대응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때 현행 지원 정책의 부분적 제도 보완 및 개선으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과 중장기적으로 청년 주거 안정화를 위한 법 개편 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과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금 및 현물 지원의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 수단들이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저소득 가구의 초기 청년층, 청년남성1인가구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장기빈곤화 예방 측면에서도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제도들은 대부분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을 받기 용이하고 지원 수준도 높게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 정책

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의 경우가 그러하다. 일례로 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산점이 주어지고 있고, 기존 임대주택이 2인 이상의 가구 지원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1인가구의 주거 생활에는 비효율적이다. 또한 주거급여의 경우 1인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월 67만원으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어 지원 자격을 얻는 것이 2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저소득 청년가구와 저소득 청년미혼가구가 제도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먼저 현금 지원 방식의 주거 복지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공공 부조성 주거급여 제도이다. 현재 정부는 맞춤형 급여로 전환을 통해 주거급여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주거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복잡한 선정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는 점에서 일하는 청년, 주거 빈곤 청년이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정 기간 적어도 4~6년간 한시적 임대료 보조 지원을 하도록 한다. 생애 첫출발의 시기에 소득 리스크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다소 덜 엄격하지만 주거 보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취업 지원 등 고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소득 증가분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액을 일정 기간 지급하여 자산 형성(예, 가족자립금) 축진을 통한 사전적 빈곤 정책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과도기 과정을 지나 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확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임대료 보조가 오히려 시장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료 상승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료를 규제하고, 규제된 임대료 속에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에서 주거비 과부담 완화와 함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보편적 수당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청년 소득 및 주거 지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가족 수당 또는 주택 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거 복지는 가구 단위 지원 방안으로 청년 빈곤화 및 저출산 문제의 사전적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 지원 제도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주택 수당 제도가 전무하며, 대출이라는 점이다(이철선, 2016).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족 수당을 지원하거나 공공 부조성 제도 이외에 주택 수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문제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35세 미만 청년의 주택 수당 금액 산정 시 ‘공유주택의 단칸방(싱글 룸)으로 제한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이 다른 연령대와 동등한 주택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청년 주거 정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영국 정부가 청년이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라 주택 수당 금액을 축소하였지만 가족의 지원이 부족한 청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영국의 시행착오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저소득층 청년과 부모가구, 청년1인가구,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가구주 가구인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여 주택 수당을 도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셋째, 현금 지원의 또 다른 수단으로 대출 지원의 확대이다. 청년층의 지불 능력을 감안한 현재 대출 제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예컨대 이미 학자금 대출 상황이 있는 청년층은 금융지원 제도 이용에 걸림돌이 된다. 지금의 고용시장 상황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담보로 하는 금융 지원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안정된 직장이 없는 청년도 저금리로 장기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저축 상품과 연계한 청년 주거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학자금 대출 등의 유예를 두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금융 기관과 연계하여 보증금

또는 이자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청년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를 우선 고려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물 지원 방식의 주거 복지 정책 수단이다. 주택 공급 정책이며,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이다. 현재와 같은 양적 확충은 지양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성격 변화를 전제로 개편해야 한다. 공공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신규 택지의 부족과 높은 주거비 책정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 단독 세대의 비율은 2005년 40%를 넘었으며, 소형 주택이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공급자 지원 방식 중심의 중형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저소득 청년1인가구와 부모 부양청년가구, 청년부부가구 등을 표적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대상에서 청년층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 일본에서 청년 주거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인 공영주택의 자격 완화 및 지자체에 대한 그 대상자 자격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한 것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지역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계층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권을 일부 부여하여,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자율권이 적절히 결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청년과 같이 그동안 공공주택 정책에서 제외되어온 계층을 제도 내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다양성 측면에서 서울시의 1인가구 공공 원룸 사업, 협동조합형 주택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주택 형태와 공급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의 35%에 이르며,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경

우 공공임대주택이 도시 전체 주택의 61%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공공임대를 관리하는 주체는 사회주택회사이다. 이는 공급 주체로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한국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의 주체이다. 공급 주체는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참여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비영리 사업 주체들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도록 제도의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비영리단체의 사업 주체들에게도 적극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일정 기간 이내 분양하는 전제로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기금 활용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활용하여 공동체 조합 등에 의한 주택 공급과 관리를 명문화하고 청년층 거주 공동주택의 수리 및 관리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기존 주택 임차 후 재임대(리모델링형 임대주택), 임대 보증금을 제공하거나 공공 소유의 주택을 장기 임대하는 것 등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이 소형의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참여 유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민간 임대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민간 임대 부문을 주거 안전망으로서 주거 복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주거 내지는 주택 사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의 셰어 하우스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셰어 하우스는 어떤 대안이 있는 주택 정책이라기 보다는, 심각한 주거비 문제로 인한 수요에 대응한 ‘주택시장의 반응’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공공의 셰어 하우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셰어 하우스를 주택, 즉 주거 공간으로 볼 것인지, 다수 사람들이 거주는 하지만 주거가 아닌 특별한 ‘시설’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논점으로 남아

있다. 한국의 다양한 주거 형태들, 예를 들면 고시원, 기숙사 등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도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의 현금 지원 방식과 현물 지원 방식의 정책 수단을 결합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소득 지원 즉 임대료 지원, 일자리 정책, 그리고 주택 정책을 연계하여 정책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이는 경제적 자립 및 일자리 지원, 금융 제도 등과의 연계를 뜻하는 것으로 청년 스스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주거 안정성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주거급여 즉, 임대료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일자리 지원 정책이 각각 있고,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는데, 각 프로그램을 결합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영국에서는 포이어(Foryer)프로그램, 미국에서는 가족자립프로그램(FSS) 및 개인발전계좌(IDA)³⁹⁾가 주택 바우처와 결합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근로연계프로그램(Moving to Work Program, MTW)도 주택 바우처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으면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에게 사례관리 지원과 더불어 임대료 및 연금 재정 보조 패키지를 제공한다. 근로·구직 중이거나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직업훈련, 교육 혹은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저소득 청년가

39) 가족자립프로그램(Family Self-Sufficiency, FSS)은 주택 바우처를 받는 주민들이 근로 소득을 올려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도록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임. 주택 바우처 대상자는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임대료가 올라가지만, 가족자립프로그램 참여자는 소득 상승분만큼을 계자에 적립하게 되어 자립이 촉진되는 것이다. 개인발전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는 자산 형성을 통해 자립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대상자가 저축을 하면 정부는 match rate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자립을 촉진한다. 저축한 돈은 자가 구입이나 교육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제한다(이태진, 2009).

구의 주택 선택 기회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가 오늘날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과 주거 문제에 있어 다양한 청년가구의 욕구에 부합한 지원 정책 방안 마련에 유용하기를 조금이나마 기대하며, 시간과 가용한 자료의 제약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현행 청년층의 주거 지원 수혜 실태와 사각지대의 규모 및 양상 등을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특정 집단에 대한 분석 자료의 한계로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따라 상이한 원자료를 분석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저소득 미혼 청년가구원의 특성, 부모 등으로 부터의 자산 이전 실태, 이들의 다양한 욕구 등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청년층의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있기를 바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 정책 추진에 유용하기 위한 청년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청년의 노동시장, 복지, 빈곤, 교육,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청년층의 가족 환경, 교육, 가구 경제, 생활 실태, 근로, 주거, 성인기로의 이행과 관련한 인식 및 욕구 등을 포함하는 전국 단위의 청년 생활 욕구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국가 발전을 선도하게 될 세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안정적 사회 정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 우리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청년을 위한 복지 투자는 복지 병을 유발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사회 투자적 측면이 확대되고 새로운 복지적 접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 경기도청. (2016. 1. 8.). 파주시에 청년근로자용 따복하우스가 뜬다. 경기도청 웹 뉴스(<http://www.gg.go.kr/archives/3465395>)
- 경기도청. (2016. 10. 19.). 따복하우스, 자녀 둘 이상이면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전액 지원. 보도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2016 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8호.
- 국토교통부. (2015). 행복주택 브로슈어.
- 국토교통부. (2016. 1. 20.).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8. 17.). 주택도시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보도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9. 5.). 주택도시시기금 대출금리 0.2%p 인하. 보도 자료
- 권지용, 이은진. (2013). 청년 주거빈곤 보고서. 제3회 주거복지컨퍼런스 자료집.
- 기획재정부. (2016. 4. 27.).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가칭)청년내일공제 관련 보도 참고 자료.
- 김문길, 김미곤, 김태완, 최민정, 이세미(2015). 청년근로빈곤층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청년위원회. p.136.
- 김미경(2016). 청년가구의 주거소비 특성. 주택산업연구원(2016.09.27.)
- 김민영, 황진영. (2016).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36(1).
- 김민영, 황진영. (2016).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36(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18-142.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pp.49-72.
- 김수정, 김영. (2013).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빈곤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20(1). pp.223-247.
- 김태완, 등. (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윤상용. (2015). 빈곤과 우울감간의 관계: 노동비교를 중심으로, 농촌경제,

38(2), pp.5-51.

- 김현숙, 류덕현, 민희철. (2006).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자세·재정정책: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김혜승. (2007).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국토연구원.
- 노대명, 등. (2014).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일본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 (2002). 외환위기 이후 신빈곤 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제58호.
- 머니투데이 (2016.02.25.). 청년 주거불안→일자리 불안→결혼 포기 악순환.
- 민병희. (2010). 세계화 시대의 청년빈곤계층: 한국의 니트족·프리터족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1209-1221.
- 박준오. (2014). 주거실태와 출산·혼인력 관계분석: 결혼 차수를 중심으로. 통계 개발원.
- 반정호. (2010). “청년층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의 변화: 가구단위의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2010(3), pp3~15
- 변창흠. (2014). 청년주거를 위한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도시와빈곤, 제 107호
- 서미숙. (2013).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여성 출산율에 관한 연구. 여성경제연구, 10(1), pp.63-79.
- 서울시청. (2016). 2016 청년정책 추진계획. 서울혁신기획관.
- 성남시청. (2016a). 청년수당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 성남시청. (2016b). 2016년 성남시 주요업무계획.
- 송헌재. (2012).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구의 출산결정요인 분석. 응용경제, 14(3), 한국응용경제학회. pp.51-78.
- 여유진, 등. (2015). 한국형복지모형구축: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소비 연계형 복지 모형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합뉴스 (2015.4.21.). 서울 청년 23% ‘주거 빈곤’ 옥탑, 고시원 등서 생활.
- 우석훈, 박권일. (2006).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88만원 세대. 레디앙.
- 윤주현, 등. (2005).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Ⅰ): 주거서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 국토연구원.

- 이병희. (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호, 이상현. (2010).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경제분석, 17(3),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pp.131-166.
- 이수옥, 등. (2015).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이태진, 등. (2009).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 지원의 연계를 통한 주거정책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등. (2010).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미옥, 백지선, 김현식, 최은영. (2016), 사회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연계자료 분석 및 활용. 통계개발원 연구 보고서.
- 정민우. (2011). 자기만의 방: 고시원으로 보는 청년세대와 주거의 사회학. 이매진.
- 정의철. (2012). 주거비용이 청년층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동산학연구. 18(2). pp.19-31.
- 정의철. (2016). 고연령 자가거주 가구의 주거소비 조정 결정요인 분석. 주택연구, 24(2), 한국주택학회, pp.129-154.
- 조명래. (1997). 신빈곤에 관한 시론. 경제와 사회. 제34호.
- 주택산업연구원. (2014).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주택산업연구원 보도 자료(2014. 3. 6.)
- 주택산업연구원(2016). 「앞으로 10년, 미래주거 트렌드」는 수요자는 에코세대를 중심으로, 주거특성은 실속형과 사용가치 중심형으로 변화. 보도자료 (2016.05.17.)
- 중소기업청. (2016. 8. 22.). 내일채움공제 2년간 15,000명, 650억 돌파. 보도 자료
- 최연실. (2014).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황 및 분석틀의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 최은영, 등. (2014).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 연구. 민주정책연구원.
- 최은영. (2014). 서울의 청년 주거문제와 주거복지 소요. 도시와 빈곤. 제106호.
- 최은영, 박신영, 진남영, 강세진, 이봉조, 김기태, 등. (2014). 사회적 경제 주체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개선 방안. 서울특별시의회.

- 최은영, 박영실. (2010).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 출산력 분석. 통계개발원 연구 보고서.
- 최은영, 김갑영, 정진선, 김기태, 임정순, 최영은. (2016b). 박근혜 정부 4년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보고서. 안호영 의원실 국정감사 보고서.
- 최은영 박신영, 강세진, 진남영, 문소현, 김기태, 등. (2016a). 전국 대학생 주거빈곤 실태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장학재단 연구 보고서.
- 통계청. (2015). 2015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 통계청. (2016a).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 통계청.
- 통계청. (2016b). 2015년 출생·사망통계(잠정). 보도 자료(2016. 2. 24.)
- 통계청. (2016c). 2015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 헤럴드경제. (2016.6.13.) 취업 못한 30대, 1인 자영업 뛰어들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5).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이슈리포트. 현안과 과제 15-40호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016. 6. 10.).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문.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016. 06. 23.). 청년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문.
- 岩上真珠. (1999a). 「20代, 30代未婚者の親との同別居構造」. 『人口問題研究』. 55巻4号.
- _____. (1999b). 「成人未婚者の離家と親子関係」. 『ライフデザインレポート』. 七月号.
- 宮本みちこ. (2004). 『ポスト 青年期と親子戦略』. 勁草書房.
- 厚生省. (1951). 「生活保護法による保護の実施要領について」.
- 厚生労働省. (2012). 「ホームレスの実態に関する全国調査の結果」.
- 厚生労働省社会, 援護局保護課. (2011). 「生活保護制度における地域差等について」.
- _____. (2014). 「住宅扶助について」.
- _____. (2015). 「新たな生活困窮者自立支援制度について」.
- _____. (2016). 「生活保護制度について」.
- 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 (2007). 『住居喪失不安定就労者等の実態に関する調査報

- 告書』.
- 高橋千枝子, 石浦大毅, 黒柳美帆, (2015). 『賃貸住宅における新たな価値提案 : シェアハウスの可能性』コンサルティングレポート.
- 国土交通省. (2006). 『住生活基本計画(全国計画)』.
- _____. (2014). 「寄宿舎等における間仕切壁の防火対策の規制の合理化」.
- _____. (2016). 『住生活基本計画(全国計画)』.
- 国土交通省住宅局 (2014). 『シェアハウス等における契約実態等に関する調査報告書』.
- 国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2015). 「違法貸しルームの是正指導等の状況について」.
- 国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市街地建設課. (2013). 「違法貸しルーム対策に関する通知について」. 国土交通省PressRelease.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1). 『世帯内単身者に関する実態調査』
- 山田昌弘. (1999). 『パラサイト・シングルの時代』.(ちくま新書, 1999) .
- 山本耕平. (2016). 「日本の青年期発達を支える住宅政策と実践に関する検討」.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세미나 발표 자료.
- 住宅政策提案, 検討委員会. (2014). 『若者の住宅問題』. 認定NPO法人ビックイシュー基金.
- 水島宏明. (2007). 『ネットカフェ難民と貧困ニッポン』. 日テレBOOKS.
- 川崎昌平. (2007). 『ネットカフェ難民ドキュメント「最底辺生活」』. 幻冬舎.
- 総務省統計局. (各年度). 「労働力調査」.
- 大石亜希子. (2004). 「若年就業と親との同別居」. 『人口問題研究』, 60巻2号.
- 中央法規出版編集部. (2015). 『改正生活保護法・生活困窮者自立支援法のポイント』.
- 丁志映. (2009). 「第2章様々な人々が混ざり住む『シェア居住』」. 日本住宅会議編 『若者たちに住まいを!』.
- 渡辺泰進. (2011). 「公営住宅の今後のあり方について」. 『貧困社会における自治体の役割とは』. 第34回兵庫自治研集会.
- 渡邊詞男. (2015). 『格差社会の住宅政策』. 早稲田大学出版部.

- 内閣府. (2012). 『こども・若者白書』.
- 日本シェアハウス・ゲスト連盟. (2013a). 「シェアハウス運営ガイドライン」.
- _____. (2013b). 『シェアハウス市場調査』.
- 平山洋介. (2008). 「若年層の居住実態に関する個人単位分析」.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632号.
- _____. (2009a). 「住宅・土地資産形成の変容に関する実態分析」.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635号.
- _____. (2009b). 『住宅性差のどこが問題か』. 光文社新書.
- 木下秀雄. (2008). 「若者と生活保護」. 『若者の雇用・社会保障』. 日本評論社:146-166.
- Allison, P. D. (1982). Discrete-time methods for the analysis of event historie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pp.61-98.
- André, C. (2011). *Improving the functioning of the housing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OECD.
- Aquilino, W. (1999). Two views of relationship: Comparing parents' young adult children's reports of the quality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4), pp.858-870.
- Baldock, J., Mitton, L., Manning, N., & Vickerstaff, S. (2011). *Social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Beatty, C., Cole, I., Kemp, P., Marshall, B., Powell, R., & Wilson, I. (2012). *Monitoring the Impact of Changes to the Local Housing Allowance System of housing benefit: Summary of early findings*. London: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Becker, G.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p.209-231.

- Becker, G. (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4), pp.813-46.
- Becker, G. (1974). A theory of marriage: Part I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pp.S11-S26.
- Becker, G. and Lewis, H.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pp.S279-S288.
- Becker, G. and Tomes, N. (1976). Child endowments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pp.S143-S162.
- Bergstrom, T. and Bagnoli, M. (1993). Courtship as a waiting ga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1), pp.185-202.
- Berrington, A., & Stone, J. (2014). Young Adults' Transitions to Residential Independence in the UK: The Role of Social and Housing Policy. In *Young people and social policy in Europe* (pp. 210-235): Springer.
- Bowmaker, S. and Emerson, P. (2015). Bricks, mortar, and wedding bells: Does the cost of housing affect the marriage rate in the US? *Eastern Economic Journal*, 41, pp.411-429.
- Bramley, G., Pawson, H., White, M., Watkins, D., & Pleace, N. (2010). *Estimating housing need*. London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Clarke, A., Burgess, G., Morris, S., & Udagawa, C. (2015). *Estimating the scale of youth homelessness in the UK*. Cambridge: Cambridge Centre for Housing and Planning Research.
- Council of Mortgage Lenders(CML). (2011). *First time buyers: Are they really getting older?*, News Briefing. 2011. 6. 20.
- Crowley, L., & Cominetti, N. (2014). *The geography of youth*

- unemployment: a route map for change*. The Work Foundation: University of Lancaster.
- Crowley, L., Jones, K., Cominetti, N., & Gulliford, J. (2013). *International Lessons: Youth unemployment in the global context*. Lancaster University.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6). Starter Homes Regulations: Technical consultation London: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Detting, L. and Kearney, M. (2014). House prices and birth rates: The impact of real estate market on the decision to have a bab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10, pp.82-100.
- Doosan Encyclopedia. (2012). *The Kangaroo Family*.
- Dugan, E.(2014). *The boomerang generation : Forced back to the nest by lack of jobs and high cost of living*, *The Independent*.
- Ermisch John. (1999). Prices, Parents, and Young People's Household Form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 45.
- Gibb, K., MacLennan, D., & Stephens, M. (2013). *Innovative financing of affordable housing*. Joseph Rowntree Foundation. Retrieved from www.jrf.org.uk/sites/files/jrf/affordable-housing-finance-full.pdf [accessed 3 May 2013], pp.50-53.
- Heath, S. (2008). *Housing choices and issues for young people in the UK*. Joseph Rowntree Foundation, York.
- Hilber, C. A. (2015). *UK Housing and Planning Policies: the evidence from economic research*.
- Hillman, S. (2010). The Foyer Federation: aiming to transform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currently help young people: Steve Hillman discusses the wrap around support offered by the 'Foyer' movement. *Criminal Justice Matters*, 80(1), pp.40-41.

- HM Treasury. (2010). *Spending Review 2010*. HM Treasury
- HM Treasury. (2015). *Help to Buy ISA London*. HM Treasury.
- Hotz, V., Klerman, J., and Willis, R. (1997). *The economics of fertility in developed countries*. Chapter 7, Handbook of Population Economics. Edited by M. R. Rosenzweig and O. Stark, pp.275-347.
- Hughes, M. E. (2004). *What money can buy: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home ownership in the United States*. Network on Transitions to Adulthood Research Network Working Paper.
- Jemin Daily. (2012). *The Kangaroo Family*. 2012.08.30. Retrieved from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691>
- Keeley, M. (1977). The economics of family formation. *Economic Inquiry*, 15(2), pp.238-250.
- Keeley, M. (1979). An analysis of the age pattern of first marriage.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0(2), pp.527-544.
- Kohout, F. J., Berkman L. F., Evans, D. A. & Cornoni-Huntley J.,(1993).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Health*, 5(2), pp.179-93.
- Lee, Y. B., Lee, Y. W., Choi, H. J., & Lee, H. Y.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coresident adult childr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31, pp.5-30.
- Litcher, D., McLaughlin D., Kephart, G., and Landry, D. (1992). Race and the retreat marriage: A shortage of marriageable 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6), pp.781-799.
- Matsushita, K. (1989). Economic analysis of age at first marriag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 pp.103-119.
- Mckee, K., 2012, Young people, home ownership and future welfare,

Housing Studies, 27(6), 853-862.

New Policy Institute. (2015). *Poverty among young people in the UK*.
London: New Policy Institute

ONS (2012).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Households and familie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www.ons.gov.uk/ons/rel/well-being/measuring-national-well-being/households-and-families/index.html>.

ONS (2016). UK Perspectives 2016: Housing and home ownership in the UK. <http://visual.ons.gov.uk/uk-perspectives-2016-housing-and-home-ownership-in-the-uk/>.

Oppenheimer, V. K. (1997). Women's employment and the gain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pp.431-453.

Öst, C.E. (2012). Housing and children: simultaneous decisions? - a cohort study of young adults' housing and family formation decis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5, pp.349-366.

Pennington, J., Ben-Galim, D., & Cooke, G. (2012). *No place to call home: The social impacts of housing undersupply on young people*.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Quilgars, & Anderson, I. (1995). Foyers for young People: evaluation of a Pilot Initiative (summary). *Housing research*, 142.

Quilgars, Johnsen, S., & Pleace, N. (2008). *Youth homelessness in the UK*. York, UK: Joseph Rowntree Foundation.

Radloff, L. S.(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pp.385-401.

Rugg, J. (2010). *Young people and housing: the need for a new policy agenda*.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Schnaiberg, A., & Goldenberg, S. (1989). From empty nest to crowded nest: The dynamics of incompletely launched young adults. *Social Problems*, 36, pp.251-269.
- Shah, N., Growing divide between young people able to go it alone and those who live at home, *Wall Street Journal*, 2013. 10. 9일자
- Shelter. (2012a). *The affordability of private renting for families claiming local housing allowance*. Shelter.
- Shelter. (2012b). *Homes fit for families? The case for stable private renting London*: Shelter.
- Simon, C., and Tamura, R. (2009). Do higher rents discourage fertility? Evidence from U.S. cities, 1940-2000.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9, pp.33-42.
- Smith, J., Browne, O., Newton, V., & O'Sullivan, A. (2006). *What happened next? A report on ex-residents of foyers*. London, UK: Centre for Housing and Community Research, Cities Institute,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 Staneva, A., Murphy, P., Jones, M., & Blackaby, D. (2015). *The effect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on Youth Unemployment - Literature Review*. WISERD, Swansea University.
- Statistics Sweden. (2005). *Housing Statistics in the European Union 2004*. Karlskrona: Boverket: Boverket, Publikationsservice.
- Ström, S. (2010). Housing and first births in Sweden. *Housing Studies*, 25(4), pp.509-526.
- Susilawati, C., & Wong, L. R. (2014). *Barriers to entering affordable home ownership for young people: A preliminary study from university students' perspectives*.
- Thompson, D., The end of ownership: Why aren't young people buying more houses? *The Atlantic*, 2012. 2. 19일자.

- Tunstall, R., Bevan, M., Bradshaw, J., Croucher, K., Duffy, S., Hunter, C., et al. (2013). *The links between housing and poverty: an evidence review*. JRF Report,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 (2015). *Cath 16-24*. 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 (UKCES).
- Vobecká, J., Kostecký, T., and Lux, M.,(2014), Rental Housing for Young Households in the Czech Republic : Perceptions, Priorities, and Possible Solutions, *Czech Sociological Review*, 50(3), forthcoming.
- Weiss, Yoram. (1997). *The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families: Why marry? Who marries whom? and What happens upon divorce*. Chapter 3, Handbook of Population Economics. Edited by M. R. Rosenzweig and O. Stark, pp.81-123.
- Willis, R. (1973).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pp.S14-S64.
- Wood, R. (1995). Marriage rates and marriageable Men: A test of the Wilson hypothesis.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1), pp.163-193.
- Yamada, M. (2004). Parasite Single No Ji.(translation by Kim, J. H.) Seoul: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ess(The original version was published in 1999).
- Yi, J. and Zhang, J. (2009). The effect of house price on fertility: Evidence from Hong Kong. *Economic Inquiry*, 48(3), pp.635-650.
- Zhang, J. (1995). Do men with higher wages marry earlier or later? *Economic Letters*, 49, pp.193-196.

홈페이지 자료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

도쿄도 홈페이지: <http://www.metro.tokyo.jp/>

산잔카 연합회(山茶花連合会) 홈페이지: <http://sazanka-rengokai.blog.jp/>

오사카시 홈페이지: <http://www.city.osaka.lg.jp/>

일본 세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 연맹 홈페이지:

<http://japansharehouseorganization.com/>

총무성 통계국 홈페이지 : <http://www.stat.go.jp/>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

히츠지 부동산 홈페이지: <https://www.hituji.jp/>

UR 홈페이지: <http://www.ur-net.go.jp/>

<http://www.abs.gov.au>

OECD 홈페이지(<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부표 1〉 여성 배우자 잠재근로소득 추정 결과

구분	근로 여부(근로=1)		log(근로소득)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시간 더미(2004년=1)	-1.180 ***	-7.69	-1.279 *	-1.74
시간 더미(2005년=1)	-0.115 *	-1.74	-0.034	-0.70
시간 더미(2006년=1)	-0.062	-0.95	0.019	0.39
시간 더미(2007년=1)	-0.102	-1.55	0.055	1.14
시간 더미(2008년=1)	-0.107	-1.62	0.019	0.40
시간 더미(2009년=1)	-0.080	-1.20	0.032	0.65
시간 더미(2010년=1)	-0.052	-0.80	-0.022	-0.48
시간 더미(2011년=1)	0.004	0.07	-0.017	-0.37
시간 더미(2012년=1)	0.033	0.52	0.011	0.23
시간 더미(2013년=1)	0.017	0.26	-0.004	-0.10
여성 배우자 연령	0.036 ***	7.87	0.087 **	1.93
여성 배우자 연령 제곱			-0.001 *	-1.81
기존 자녀 수	-0.237 ***	-12.27		
여성 배우자 교육 수준(전문대 이상=1)	0.357 ***	11.69	0.306 ***	10.23
여성 배우자 건강 상태(나쁨=1)	-0.238 ***	-2.80		
가구소득(여성 배우자 근로소득 제외)	-0.054 ***	-6.62		
λ			-0.178 **	-2.43
표본 수	8,276		3,035	

주: *** p < 0.01, ** p < 0.05, * p < 0.1.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